



2022.8.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최성민 예산분석관
김윤성 예산분석관
김용오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강지혜 예산분석관

지 원 |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장유진 행정실무원
최보경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2022.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8.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570.5조원, 총지출은 601.0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개선되어 90.6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이 증가한 967.2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활성화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주거안정지원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I. 결산 개요

- 1. 현 황 3
-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

II. 주요 현안 분석

- 1.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재검토 및 소상공인기금 지원 필요성 검토 필요 · 11
- 2. 정부출자수입 증대방안 강구 및 배당성향 협의 자료 국회 제출 필요 ··· 20
- 3.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 29
- 4. 결산 심사 내실화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조기 제출 필요 34
- 5.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결과 비공개 관행 개선 필요 37
- 6. 국가결산보고서 오류 증가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47
- 7. 국유재산 현물출자 국회 사전동의 등 도입 검토 필요 52
- 8.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국가채무상환비율 상향 등 검토 필요 58
- 9.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관리 강화 및 예산 미편성사업 증액변경 지양 필요 ··· 63
- 10. 국민주택채권 발행 한도액 초과 문제 개선 필요 74

11. 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 기금 예수금 관리 강화 필요	79
12.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평채 발행 계획 중장기적 검토 필요 등 분석 ...	86
12-1. 외평채 발행 시 시장 상황 적극적 반영 필요	88
12-2. 중장기적으로 외국환평형 기금 규모 적정 수준 유지 필요	94
13.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사업 운영 개선 필요	101

Ⅲ. 개별 사업 분석

1. 유휴 행정재산 조사 관련 정기감사 실시 등 검토 필요	110
2. 재정사업 심층평가 조기 착수 및 결과 공개 활성화 필요	117
3. 상생소비지원금 효과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분석 필요	125
4. 인쇄용역 계약 및 인쇄대금 집행방식 개선 필요	131

[국세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139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3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4

II. 주요 현안 분석

1.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일원화 방안 마련 필요 등 145
 - 1-1.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일원화 방안 마련 필요 147
 - 1-2.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의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53
2. 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59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세 체납액 징수위탁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69
2.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의 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 175

[관세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183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7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88

II. 주요 현안 분석

1. 컨테이너검색기 교체 방식 재검토 필요 등 189

III. 개별 사업 분석

- 1.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실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94
- 2. X-Ray 검색기 장비 도입 및 성능개선 지연 문제 198
- 3.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 및 유지 지원 필요 205

[조달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213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8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9

II. 주요 현안 분석

- 1.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신속한 이관 필요 220

III. 개별 사업 분석

- 1.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 관리 강화 등 228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 문제 234
- 3. 안전재고 목표량을 고려한 비철금속 방출 필요 241

[통계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249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53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53

II. 주요 현안 분석

- 1. 통계조사 인력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비대면조사 활용 증대 필요 ... 254

III. 개별 사업 분석

- 1.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보완 필요 263



기획재정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26조 3,596억 6,700만원이며, 495조 1,385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8.8%인 439조 6,557억 9,700만원을 수납하고 51조 1,132억 9,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조 3,694억 3,7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2,869,460	416,459,850	416,459,850	485,552,978	430,070,250	51,113,291	4,369,437	88.6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9,869,817	9,899,817	9,899,817	9,585,547	9,585,547	0	0	100.0
합계	382,739,277	426,359,667	426,359,667	495,138,525	439,655,797	51,113,291	4,369,437	88.8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0조 796억 1,600만원이며, 이 중 90.2%인 18조 1,085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9,665억 5,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25)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5,165,416	28,848,151	19,782,244	17,811,140	4,547	1,966,557	89.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97,372	297,372	297,372	297,372	0	0	100.0
합계	25,462,788	29,145,523	20,079,616	18,108,512	4,547	1,966,557	90.2

자료: 기획재정부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392조 464억 7,100만원이며, 370조 6,018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70조 5,878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140억 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263,332,406	276,092,821	276,092,821	268,255,257	268,255,257	0	0	100.0
국유재산관리기금	1,666,423	1,667,323	1,667,323	1,659,711	1,659,711	0	0	100.0
대외경제협력기금	1,366,821	1,366,821	1,366,821	1,325,119	1,312,603	12,516	0	99.1
복권기금	6,476,015	7,076,263	7,076,263	7,195,631	7,194,146	1,486	0	1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46,435	646,435	646,435	744,348	744,348	0	0	100.0
외국환평형기금	105,403,908	105,196,808	105,196,808	91,421,817	91,421,817	0	0	100.0
합계	378,892,008	392,046,471	392,046,471	370,601,884	370,587,882	14,002	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92조 1,616억 5,100만원이며, 이 중 94.5%인 370조 5,878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755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조 1,750억 6,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263,332,406	276,092,821	276,092,821	268,255,257	-	13,120,254	97.2
국유재산관리기금	1,666,423	1,667,323	1,772,105	1,659,711	161,942	44,102	93.7
대외경제협력기금	1,366,821	1,366,821	1,377,218	1,312,603	13,574	50,160	95.3
복권기금	6,476,015	7,076,263	7,076,263	7,194,146	-	79,056	10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46,435	646,435	646,435	744,348	-	15,219	115.1
외국환평형기금	105,403,908	105,196,808	105,196,808	91,421,817	-	866,270	86.9
합계	378,892,008	392,046,471	392,161,651	370,587,882	175,516	14,175,061	94.5

자료: 기획재정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조 105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0조 3,579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9조 1,604억 3,100만원(20.3%)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83,633,263	282,452,003	313,887,390	341,299,835	27,412,445	57,666,572
기금	7,564,297	7,859,786	8,460,034	9,058,156	598,122	1,493,859
합계	291,197,560	290,311,789	322,347,424	350,357,991	28,010,567	59,160,431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9조 6,555억 2,400만원(△28.6%)이 감소한 24조 836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조 2,100억 2,700만원(15.3%)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589,685	9,593,331	11,393,331	2,153,770	△9,239,561	564,085
기금	19,283,891	23,250,161	22,345,796	21,929,833	△415,963	2,645,942
합계	20,873,576	32,843,492	33,739,127	24,083,603	△9,655,524	3,210,027

자료: 기획재정부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기획재정부의 자산은 498조 1,840억 700만원, 부채는 895조 2,025억 8,900만원으로 순자산은 △397조 185억 8,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14조 4,149억 1,600만원, 투자자산 348조 7,402억 5,800만원, 일반유형자산 34조 5,560억 6,700만원, 무형자산 1,187억 3,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3,540억 3,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0조 6,160억 6,200만원(13.9%)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부채는 유동부채 86조 7,410억 3,800만원, 장기차입부채 807조 53억 5,100만원, 장기충당부채 671억 7,1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조 3,890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5조 4,407억 1,400만원(13.4%)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국채 및 장기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02조 1,380억 3,3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98,184,007	437,567,945	60,616,062	13.9
Ⅰ. 유동자산	114,414,916	112,306,656	2,108,260	1.9
Ⅱ. 투자자산	348,740,258	298,242,384	50,497,874	16.9
Ⅲ. 일반유형자산	34,556,067	26,575,728	7,980,339	30.0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118,733	23,593	95,140	403.3
Ⅵ. 기타비유동자산	354,034	419,584	△65,550	△15.6
부 채	895,202,589	789,761,875	105,440,714	13.4
Ⅰ. 유동부채	86,741,038	83,741,361	2,999,677	3.6
Ⅱ. 장기차입부채	807,005,351	704,867,318	102,138,033	14.5
Ⅲ. 장기충당부채	67,171	62,603	4,568	7.3
Ⅳ. 기타비유동부채	1,389,029	1,090,593	298,436	27.4
순 자 산	△397,018,582	△352,193,930	△44,824,652	△12.7
Ⅰ. 기본순자산	△962,532	△962,532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453,029,278	△385,898,237	△67,131,041	17.4
Ⅲ. 순자산 조정	56,973,228	34,666,839	22,306,389	64.3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수익이 재정비용을 초과하여 순수익이 4조 9,994억 2,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6조 2,986억 9,200만원, 관리운영비 1,985억 5,300만원, 비배분비용 1조 7,649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0조 2,982억 2,100만원, 비배분수익 5조 3,691억 8,1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조 4,057억 8,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8조 1,520억 5,200만원(△168.9%) 감소한 △7조 4,052억 1,1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6조 1,009억 6,8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총 2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17조 6,724억 4,400만원)과 차입금 등 원금상환 프로그램(7,656억 8,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13억 3,300만원과 경비 972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5,238억 8,100만원과 기타비용 8,664억 5,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999,529	12,101,439	△16,100,968	△133.1
가. 프로그램 총원가	26,298,692	29,378,307	△3,079,615	△10.5
나. 프로그램 수익	△30,298,221	△17,276,868	△13,021,353	75.4
II. 관리운영비	198,553	194,422	4,131	2.1
III. 비배분비용	1,764,946	2,248,937	△483,991	△21.5
IV. 비배분수익	5,369,181	3,797,956	1,571,225	41.4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7,405,211	10,746,842	△18,152,053	△168.9
VI. 비교환수익 등	△2,405,783	△2,320,738	△85,045	△3.7
VII. 재정운영결과(V-VI)	△4,999,428	13,067,580	△18,067,008	△138.3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352조 1,939억 3,0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397조 185억 8,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4조 8,246억 5,200만원(△12.7%)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4조 9,994억 2,800만원 감소,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22조 3,063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72조 1,304억 6,9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가산항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3조 3,043억원 2,3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05조 4,347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기타 순자산의 증감 14조 8,027억 1,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52,193,930	△253,180,460	△99,013,470	△39.1
II. 재정운영결과	△4,999,428	13,067,580	△18,067,008	△138.3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2,130,469	△87,944,727	15,814,258	18.0
IV. 조정항목	22,306,388	1,998,837	20,307,551	1,016.0
V. 기말순자산(I-II+III+IV)	△397,018,582	△352,193,930	△44,824,652	△12.7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② **국고채이자상환**, ③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등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지원 여력이 양호하다고 보아 출자예산이 900억원(2,500억원→1,600억원) 감액되었고, 국고채이자상환은 저금리 기조 등을 고려하여 9,000억원(21조 1,101억원→20조 2,101억원) 감액되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 예산이 374억원(7,903억원→7,529억원) 감액되었다.¹⁾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예비비**, ②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등이 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적 자원 증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조 2,000억원(5조 4,000억원→8조 6,000억원) 증액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사업은 예수금 이자상환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산 695억원이 증액(10조 8,279억원→10조 7,584억원)되었다.²⁾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사업 집행기간을 단축하여 4,000억원(1조 1,000억원→7,000억원)이 감액되었다.³⁾

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2)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7.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수입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자 수입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협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지표, 배당기관별 배당성향 결정 근거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결과,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 유무를 철저하게 확인·점검하는 한편, 오류사례 배포 및 정부회계 관련 교육 강화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은 수의계약 체결 및 결과보고서 비공개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일반경쟁입찰 원칙, 국민의 알 권리 제고 및 국회의 예·결산 심의 내실화 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는 한편, 결과보고서 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보고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재검토 및 소상공인기금 지원 필요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3항²⁾에서는 복권수익금 중 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액과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사행심 억제와 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배분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에서 전출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법정배분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법정배분 관련 사업의 2021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전체 지출계획액 8,324억 5,300만원 중 8,103억 1,400만원을 집행(교부)하여 집행률은 97.3%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과 지방자치단체지원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은 집행률 100%를 기록하였다.

[2021년도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관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2021회계연도		
		계획액(A)	집행(B)	집행률(B/A)
법정 배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16,159	94,176	81.1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88,565	88,565	100.0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53,227	53,227	10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63,711	63,711	100.0
	문화재보호기금 전출	92,947	92,947	100.0
	지방자치단체지원	141,664	141,508	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128,817	128,817	1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51,466	51,466	1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38,420	38,420	100.0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57,477	57,477	100.0
	합 계	832,453	810,314	97.3

주: 계획액은 수정계획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한편, 복권기금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크게 주택도시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과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나뉘며, 2021년도 기준 타 기금 전출은 주택도시기금 전출 등 5개 단위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등 8개 단위사업이 있다.

2021년도 복권기금 공익사업 예산은 1조 7,986억 2,800만원으로 이 중 1조 7,971억 6,300만원을 집행(교부)하여 집행률은 99.9%로 나타났다.

[2021년도 복권기금 공익사업 관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2021회계연도		
		계획액(A)	집행(B)	집행률(B/A)
타 기금 전출	주택도시기금 전출	550,361	550,361	100.0
	보훈기금 전출	38,456	38,447	99.9
	양성평등기금 전출	467,671	467,339	99.9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64,154	164,154	100.0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128,749	127,857	99.3
복권 기금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267,000	267,000	100.0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1,878	1,878	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	25,216	25,216	100.0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	28,906	28,874	99.9
	입양아동 가족지원	19,360	19,360	100.0
보조 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300	5,100	96.2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2,054	2,054	100.0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99,523	99,523	100.0
	합 계	1,798,628	1,797,163	99.9

주: 계획액은 수정계획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은 2004년 이후 2010년에 문화재보호기금 추가에 따른 변경 외에 동일한 상황이나, 기금별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소상

공인시장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대상 기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권의 통합적 관리 및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 등을 위해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복권 발행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각 기관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제도가 도입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전체 복권수익금의 30%에서 35%로 상향하면서 문화재보호기금을 법정배분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정배분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법정 배분비율이 동일한 상황이다.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 추이]

구 분	2004년		2010년 이후
총 법정배분비율	30%		35%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0%		12.583%
국민체육진흥기금	12.100%		10.371%
근로복지진흥기금	6.195%		5.31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15%	⇒	6.356%
문화재보호기금	-		14.286%
지방자치단체	20.145%		17.26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145%		17.2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		4.28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6.820%		5.8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00%		6.428%

주: 각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정배분비율은 총 법정배분비율 내에서의 비율을 의미
 자료: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후 17년 이상이 경과하여 각 기금의 재정 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을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복권수익금 배분의 합리성 및 복권기금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³⁾는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법정배분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각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분비율을 20% 범위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복권위원회의 가감조정 조치만으로는 각 기금 등의 재정여건 및 지출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제3항⁴⁾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감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금은 기금의 재정여건이 양호하거나 지출소요가 적음에도 실제 배분비율이 법정배분비율보다 상승하고, 반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금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지출소요가 많음에도 법정배분비율보다 실제 배분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진흥기금⁵⁾은 법정배분비율이 12.583%이나 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실제 배분비율이 2020년에 12.956%, 2021년에 13.746%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에는 주요 사업비 지출소요가 많지 않아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 예산 1,161억 5,900만원 중 기금 여유자금 운용 명목으로 219억 8,300만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결과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5)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이 기금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출연·투자, 국공립 과학관 건립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복권수익금을 기금 여유자금 운용 명목으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하여 복권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에 해당하는 219억 8,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였다.

[2020년과 2021년 과학기술진흥기금 법정배분비율과 실제 배분비율 비교]

(단위: %, %p)

연도	법정배분비율(A)	실제 배분비율(B)	증감(B-A)	증감률 {(B-A)/A}
2020	12.583	12.956	0.373	29.6
2021	12.583	13.746	1.163	9.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도 복권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계획액	2021년도 집행액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16,159	94,17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	12,695	12,695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	3,835	3,835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4,523	4,523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지원	1,485	1,485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5,361	5,361
과학영재양성	14,568	14,568
과학문화 확산	17,085	17,085
공공기술사업화기업투자지원	10,000	10,000
연구개발서비스기반조성	1,180	1,180
과학문화산업육성	2,221	2,221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1,998	1,998
국립법인과 학관 운영	19,225	19,225
여유자금 운용	21,983	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보호기금법」⁶⁾에 따라 문화재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1회계연도 기준 수입규모 1,549억 9,200만원 중 929억 4,700만원(60.0%)이 복권기금 전입금에 해당하고 자체수입이 54억 8,700만원(3.5%)에 불과할 정도로 기금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에 2020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및 2021년 5월 감사원 분야별 감사결과에서도 문화재보호기금의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수입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

수입(A)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복권기금전입금		공자기금예수금	
		금액(B)	비율(B/A)		
154,992	5,487	92,947	60.0	40,992	15,566

자료: 문화재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재보호기금의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은 14.286%이나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실제 배분비율은 2020년에 13.574%, 2021년에 12.079%로 법정배분비율보다 낮았다.

[2020년과 2021년 문화재보호기금 법정배분비율과 실제 배분비율 비교]

(단위: %, %p)

연도	법정배분비율(A)	실제 배분비율(B)	증감(B-A)	증감률 {(B-A)/A}
2020	14.286	13.574	△0.712	△5.0
2021	14.286	12.079	△2.207	△15.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⁷⁾에 따라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에 관한 법률」상 복권수익금의 배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⁸⁾ 미만인 기업'으로서,⁹⁾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¹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舊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¹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¹²⁾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대상 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출소요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8)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은 5명 미만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1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11) 舊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4년 기준)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의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9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서,¹³⁾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구조: 2015~2021년]

(단위: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22,290	24,702	29,133	29,878	33,533	99,516	240,256
정부내부수입	21,999	23,337	23,875	19,876	18,509	79,109	215,487
-일반회계전입금	5,639	6,373	5,937	6,072	8,249	50,997	155,177
-공자기금예수금	16,000	16,964	17,938	13,804	10,260	28,112	60,310
자체수입	291	1,344	4,208	10,001	14,909	20,407	21,314
-용자원금회수	164	893	3,333	8,685	13,653	19,147	19,364

주: 여유자금회수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상태: 2015~2021년]

(단위: 조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산(A)	1.55	3.20	5.07	6.51	7.44	10.12	13.31
부채(B)	1.61	3.31	5.11	6.49	7.52	10.34	15.79
순자산(A-B)	△0.06	△0.11	△0.04	0.02	△0.08	△0.23	△2.4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하면,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은 2004년 이후 2010년에 문화재보호기금 추가에 따른 변경 외에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이후 17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기금별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대상 기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2021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은 △2조 4,700억원이며, 전체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비중이 89.7%이다.

가. 현황

정부출자수입¹⁾은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과목이다. 2021회계연도 기준 정부출자기관은 총 39개이며, 이 중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출자기관(총 30개)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자기관(1개)²⁾을 소관한다.

2021년도 기획재정부 정부출자수입은 예산현액 8,474억 9,900만원의 114.9%인 9,737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정부출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22,239	822,239	0	822,239	915,711	915,711	0	0	100.0
외국환평형기금	25,260	25,260	0	25,260	57,990	57,990	0	0	100.0
계	847,499	847,499	0	847,499	973,701	973,701	0	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다른 부처 소관 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전체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52-521

2) 한국투자공사

[2021회계연도 전체 정부출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추경 예산(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 납액	예산 대비 수납액비율(B/A)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822,239	822,239	915,711	915,711	0	111.4
	외국환평형기금	25,260	25,260	57,990	57,990	0	229.6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0	0	18	18	0	순증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6,796	6,796	4,904	4,904	0	72.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0	0	2,019	2,019	0	순증
	국도교통부						
국도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39,405	39,405	25,727	25,727	0	65.3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416,751	416,751	428,654	428,654	0	102.9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650	650	1,786	1,786	0	274.8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2,419	2,419	7,258	7,258	0	300.0

주: 대상 출자공공기관 중 여러 회계 기금에 걸쳐 있는 기관이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2021년 연도별 전체 정부출자수입 실적을 보면, 2018년 1조 7,995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조 4,448억원, 2020년 1조 4,040억원으로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21년에 1조 4,35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3)

[정부출자수입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일반회계	8,567	6,751	6,069	9,157
특별회계·기금	9,427	7,696	7,971	5,198
합 계	17,995	14,448	14,040	14,356

자료: 기획재정부

3) 2022년 정부출자수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일부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2021년보다 1조 145억원 늘어난 2조 4,541억원으로 예상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수입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배당한도 상향 등 정부출자수입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 해외 주요국 공기업 배당수준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실적을 산술평균 기준⁴⁾으로 보면, 2018년 34.98%, 2019년 32.48%, 2020년 32.58%, 2021년 36.92%, 2022년 40.38%로 2019년에 전년 대비 하락한 이후⁵⁾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6%p 상승하였다.⁶⁾

[연도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목표 및 실적 현황]

(단위: %, %p)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A)	2022년(B)	증감(B-A)
배당성향 목표(A)		34.00	37.00	40.00	40.00	40.00	0.0
배당성향 실적	산술평균(B)	34.98	32.48	32.58	36.92	40.38	3.46
	가중평균(C)	29.48	20.14	27.32	29.68	28.61	△1.07
목표대비 실적 차이	B-A	0.98	△4.52	△7.42	△3.08	0.38	△2.70
	C-A	△4.52	△16.86	△12.68	△10.32	△11.39	△1.0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연도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연도별 각 정부배당기업의 배당성향을 모두 더한 후 배당기업수로 나눈 값

5) 2019년에 배당성향이 하락한 이유는 출자공공기관의 경제활력 투자(기업구조조정, 혁신성장투자, 환경안전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10개 기관에 1.5조원의 배당금을 축소 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 '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4,382억원 수납 확정」(2019.5)을 통해 정부출자기관의 투자확대를 위해 1.5조원을 감액조정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6) 다만, 2022년 정부배당기업별 배당성향을 보면 대한송유관공사의 배당성향이 90.11%로 2021년 34.99%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 대한송유관공사를 제외한 평균 배당성향은 37.6% 수준이다.

다만, 같은 기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실적을 가중평균 기준⁷⁾으로 살펴보면, 2018년 29.48%, 2019년 20.14%, 2020년 27.32%, 2021년 29.68%, 2022년 28.61%로 2019년 이후 배당성향이 상승하는 추이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배당성향이 1.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와 같이 산술평균 기준 배당성향과 가중평균 기준 배당성향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이익과 배당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하 “상위 3개 정부배당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이 그 외 기관의 평균 배당성향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상위 3개 정부배당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은 30.84%로 그 외 정부배당기관 평균 배당성향 37.88%보다 7.04%p 작았고, 2022년에는 상위 3개 정부배당기관 평균 배당성향이 28.19%, 그 외 정부배당기관 평균 배당성향이 42.67%로 그 차이가 14.48%p에 이르렀으며, 특히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이익과 배당금 규모가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정 배당한도가 20%로 명시되어 있어 가중평균 기준 배당성향 상승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최근 2년 상위 3개 정부배당기관 및 그 외 기관 평균 배당성향 비교]

(단위: 억원, %, %p)

구분	상위 3개 정부배당기관		그 외 정부배당기관		배당성향 차이(B-A)
	당기순이익 합계	평균 배당성향(A)	당기순이익 합계	평균 배당성향(B)	
2021	50,835	30.84	29,859	37.88	7.04
2022	86,749	28.19	21,575	42.67	14.48

주: 상위 3개 정부배당기관은 배당금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연도별 전체 정부배당기업 배당금액을 전체 정부배당기업 당기순이익(지분율 반영)으로 나눈 값

8) 최근 정부는 배당성향 실적을 산술평균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고 2022년 배당성향도 40.38%인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2014년 12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 2020년 중기목표로 제시한 배당성향 40%는 가중평균 기준 배당성향으로서 이 기준에 따르면 2022년 배당성향 목표 대비 실적은 △11.39%p 미달하게 된다.

2014년 당시 보도자료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2014.12.19.)을 보면, 2014년 21.54% 수준인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4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2014년 배당성향 21.54%는 가중평균 기준으로서 산술평균 기준 배당성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최근 2년 간 정부배당기업별 배당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21년			2022년		
	당기순이익	배당액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배당액	배당성향
한국토지주택공사	33,328	5,845	20.00	41,890	7,441	20.00
중소기업은행	12,632	2,208	29.52	20,241	3,701	30.73
한국산업은행	4,875	2,096	43.00	24,618	8,331	33.84
한국주택금융공사	1,871	425	33.46	1,995	451	32.90
한국수출입은행	1,024	277	39.80	5,475	1,315	34.93
한국가스공사	적자	0	0.0	5,945	659	39.38
한국도로공사	305	120	44.47	305	134	50.06
부산항만공사	457	238	59.80	427	183	48.90
한국자산관리공사	585	142	39.97	496	159	41.57
울산항만공사	147	77	59.90	279	119	48.90
인천항만공사	879	213	30.00	적자	0	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3	25	40.00	37	15	39.4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2	40.00	10	4	40.00
한국부동산원	53	10	40.02	88	16	37.71
한국방송공사	327	33	10.10	393	32	8.10
한국농어촌공사	92	9	10.30	345	130	37.60
한국전력공사	19,515	1,421	40.00	적자	0	0.0
한국교육방송공사	64	8	12.20	적자	0	0.0
주택도시보증공사	2,918	616	24.99	3,620	621	20.03
한국투자공사	967	580	60.00	1,680	1,176	70.00
대한송유관공사	306	10	34.99	264	23	90.11
88관광개발(주)	0.3	0.2	59.65	적자	0	0.0
한국지역난방공사	279	39	40.00	215	32	43.00

주: 1. 최근 2년 연속으로 배당실적이 없는 출자기관은 제외

2. 배당성향 = 배당금액 ÷ 당기순이익 × 정부지분율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⁹⁾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익금은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 20% 이상), 사업확장적립금 적립(이익금 20% 이상), 토지은행적립금 적립(이익금 40% 이상), 국고 납입 순서로 처리하며, 이에 따라 법정 국고 납입 한도는 이익금의 20%로, 일반적으로 법정 배당한도가 60% 이상인 다른 정부출자기관과 비교할 때 낮은 상황이다.

[주요 정부출자기관 이익금 처리 순서 및 법정 배당상한 비교]

구 분	이익금처리 순서					배당 상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20%이상)	사업확장 적립금 (20%이상)	토지은행 적립금 (40%이상)	배당	20%
한국석유 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20%이상)	사업확장 적립금 (20%이상)	국고		60%
한국투자 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10%이상)	배당	이익준비금 외 준비금		90%
한국가스 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10%이상)	사고보상 적립금 (10%이상)	배당	사업확장 적립금 등	80%
한국전력 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20%이상)	배당	사업확장 적립금	배당평균 적립금	80%
한국수자원 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20%이상)	사업확장 적립금 (20%이상)	배당		60%
한국도로 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20%이상)	배당	사업확장 적립금		80%
한국철도 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20%이상)	사업확장 적립금 (20%이상)	배당		60%
지역난방 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10% 이상)	사업확장 적립금	배당		90%
새만금개발 공사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20%이상)	사업확장 적립금 (20%이상)	배당		6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정부출자기관 근거 법률의 내용을 정리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 납입

이에 따라 최근 3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당성향은 법정 한도인 20.0%로 결정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정부배당기관들의 평균 배당성향 41.5%보다 21.5%p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당성향이 20.0%임에도 정부배당금이 2021년 5,845억원으로 전체 정부배당금 규모의 40.6%, 2022년 7,441억원으로 전체 정부배당금 규모의 30.3%를 차지할 정도로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규모가 큰 공공기관으로서, 법정 배당성향을 상향조정을 통해 추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당성향을 20% 이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전체 정부출자수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⁰⁾

[최근 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당기순이익 및 배당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전년도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배당금	전체 정부배당금 중 비중
2021	33,328	20.0	5,845	40.6
2022	41,890	20.0	7,441	30.3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보강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지출로 말미암아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¹¹⁾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수입 확충의 필요성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출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배당한도 상향¹²⁾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다만, 실제 배당성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 투자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11) 2019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723.2조원(GDP 대비 37.7%)이었으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067.3조원(GDP 대비 49.6%)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채무가 약 340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정 배당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공공토지비축 등 토지은행사업과 임대주택공급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법정 배당한도를 상향하는 경우에도 매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면서 재무건전성, 투자소요 등을 고려하여 실제 배당성향을 결정하게 되므로 법정 배당한도 상향조정이 실제 배당성향의 급격한 상승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과 같은 법정 배당한도 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고 투자소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익금의 20%만을 국고에 납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국회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협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지표, 배당기관별 배당성향 결정 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3(13)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은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동일·유사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부채비율,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배당결정 절차를 보면,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재무제표 등 정부배당수입 결정 기초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당협의체(14)에서 정부 재정여건, 민간배당수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과 배당수준을 협의·조정하며,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주주총회, 주무부처 승인 등을 통해 정부배당을 확정한다. 다만, 정부와 출자기관은 각 출자기관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성향이 세부적으로 어떠

13)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14)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배당협의체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배당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배당협의체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와 특별회계·기금소관 중앙관서의 소속 고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은 제2차관, 간사는 국고국장으로 한다.
- ③ 배당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중앙관서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
- ④ 배당협의체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한 기준·지표·산식 등에 따라 협의·결정하고, 개별 기업의 배당성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6(15)에 따라 정부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에는 정부배당 협의·조정 내역이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출자기관 배당성향 협의 세부기준이나 배당기관별 배당성향 결정 사유 및 근거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이 없어 어떠한 사유 및 근거로 배당기관별 배당성향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특정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연도별로 왜 다른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2회계연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에 기술된 정부배당 협의·조정내역

구분	내 용
협의 원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배당 결정 전 기재부 장관 등과 협의 - 정부는 국유재산법상 배당 고려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당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배당 확정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되,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등 안정적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자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배당 추진 *배당금 = '21년 당기순이익 - 이월결손금 - 법정적립금·충당금 -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필요금액 등 - 계량지표 반영(우수배당기관, 사회적책임 등) **'21년은 코로나로 인한 배당수입 결손 및 재정 수요 확대 추세 등에 따라 출자기관별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배당성향 협의(최고 60% 수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 2022.5.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성향은 국고수입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로서는 매년 배당기관별 배당성향 및 배당금 결정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협의 세부 기준, 정부출자기관 중 공공기관별 배당성향 결정 사유 및 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15) 「국유재산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6조 4,598억 5,000만원이며, 485조 5,529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30조 702억 5,000만원을 수납, 51조 1,132억 9,100만원을 미수납하고, 4조 3,694억 3,7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2,869,460	416,459,850	416,459,850	485,552,978	430,070,250	51,113,291	4,369,437	88.6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수납액 중 국세수입의 규모가 가장 크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세수입 수납액은 332조 5,047억 9,7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국세수입 외에도 세외수입이 있으며, 세외수입에는 기타재산수입과 정부출자수입, 기금예수금 등이 있고, 기타재산수입에는 한국은행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 국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경정을 하였음에도 추경 예산 대비 29.8조원(9.5%)의 세수오차가 발생하였고 2022년에도 예산액 대비 세수 실적 호조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세입경정을 하였던 만큼, 정부는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58.5조원(20.5%) 증가하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8조원(9.5%) 초과수납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32.5조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56.2조원(20.3%) 초과수납되었다. 정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국세수입 예산을 31.5조원 증액경정 하였음에도 추경예산 대비 초과수납 규모가 총 29.8조원(일반회계는 27.9조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1년도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 예산 282.7조원을 61.4조원(21.7%)을 초과한 규모이다.

이와 같이 국세수입 초과수납 규모가 크게 발생한 주요 원인은 당초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어 법인세 수입이 증가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증가로 볼 수 있다.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0 실적 (A)	2021					
		예산 (B)	실적 (C)	전년 대비		예산 대비	
				증감액 (C-A)	증감률 (C-A)/A	증감액 (C-B)	증감률 (C-B)/B
국세수입 합계	285.5	314.3	344.1	58.5	20.5	29.8	9.5
일반회계	276.3	304.6	332.5	56.2	20.3	27.9	9.2
소득세	93.1	99.5	114.1	21.0	22.6	14.6	14.7
법인세	55.5	65.5	70.4	14.9	26.8	4.8	7.4
상속·증여세	10.4	11.9	15.0	4.6	44.6	3.1	25.8
부가가치세	64.9	69.3	71.2	6.3	9.7	1.9	2.7
개별소비세	9.2	10.1	9.4	0.1	1.6	△0.7	△7.0
증권거래세	8.8	8.3	10.3	1.5	17.1	2.0	23.8
교통·에너지·환경세	13.9	15.7	16.6	2.7	19.1	0.9	5.8
교육세	4.7	5.3	5.1	0.4	8.7	△0.2	△3.8
종합부동산세	3.6	5.1	6.1	2.5	70.3	1.0	19.9
과년도수입	4.2	4.6	5.1	1.0	23.6	0.6	12.1
인지세	1.0	0.9	1.0	0.0	△0.6	0.0	1.4
관세	7.1	8.3	8.2	1.2	16.6	△0.1	△1.4
특별회계	9.3	9.6	11.6	2.3	24.7	1.9	19.8
주세	3.0	3.2	2.7	△0.3	△11.1	△0.6	△17.7
농어촌특별세	6.3	6.4	8.9	2.6	42.2	2.5	39.3

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회계연도(2017~2021년도) 간 국세수입 세수오차 현황을 보면, 오차금액은 2017년 14.3조원 2018년 25.5조원, 2019년 △1.3조원, 2020년 5.8조원, 2021년 29.8조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 오차율 역시 2019년 5.7%, 2018년 9.5%, 2019년 0.4%, 2020년 2.1%, 2021년 9.5%로 2019년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오차금액이 가장 크고 오차율도 높았다.

[최근 5회계연도 국세수입 오차율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세수입 예산(A)	251.1	268.1	294.8	279.7	314.3
국세수입 결산(B)	265.4	293.6	293.5	285.5	344.1
차이(B-A)	14.3	25.5	△1.3	5.8	29.8
오차율{(B-A)/A}	5.7	9.5	0.4	2.1	9.5

주: 1. 예산은 각 연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오차율은 절댓값으로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에도 정부는 당초 추계한 규모보다 실제 국세수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세수입 예산을 53.3조원 증액경정하였을 만큼, 세수오차 문제는 2022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세수모형 고도화 등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행 잉여금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향후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제99조¹⁾는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나머지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후 잔액을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규

1) 「한국은행법」

-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는데, 이 납부금을 실무상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지칭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당시 한국은행의 2021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5조 7,586억원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였고, 부문별로는 외환부문 순이익이 9조 5,718억원 발생하는 반면, 통화관리부문 순이익이 △1조 786억원, 기타 부문 순이익이 △6,088억원, 법인세 등 납부액이 2조 1,258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²⁾

[한국은행의 연도별·부문별 손익]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측치(A)	실제(B)	B-A
당기순이익(세후)	53,131	73,659	57,586	78,638	21,052
〈외환부문〉	108,741	126,902	95,718	124,239	28,521
수익	158,186	192,160	148,368	183,700	35,332
(외화자산운용이자)	(82,208)	(68,140)	(59,049)	(61,557)	(2,508)
(외화증권매매익)	(58,274)	(98,978)	(74,294)	(102,567)	(28,273)
(외환매매익)	(1,933)	(3,425)	(△500)	(144)	(644)
비용	49,445	65,258	52,650	59,460	6,810
〈통화관리부문〉	△29,557	△18,967	△10,786	△10,096	690
수익	5,647	6,191	6,703	6,716	13
비용	35,204	25,158	17,489	16,812	△677
(통안증권이자)	(31,372)	(22,451)	(15,590)	(14,635)	△955
〈기타 부문〉	△5,612	△6,045	△6,088	△6,729	△641
〈법인세 등〉	20,441	28,231	21,258	28,776	7,51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실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등 운용 결과, 외화증권매매이익 및 외화자산운용이자 수익이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외환부문 순이익이 예측치 보다 2조 8,521억원 증가한 12조 4,239억원을 기록하였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감소하면서 통화관리부문 적자규모도 690억원 줄어 한국은행의 2021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예상치 대비 2조 1,052억원 초과한 7조 8,638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정부에 납입하는 한국은행 잉여금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0회계연도부터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정부납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 2022년 수납액은 2021년도 결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2022년 한국은행 잉여금이 2022년 7월 현재 시점에서 이미 국고수입으로 처리된 만큼 2022년 최신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처리 현황]

(단위: 억원)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¹⁾	정부납입금
2017	39,640	11,892	415	27,333
2018	32,137	9,641	354	22,142
2019	53,131	15,939	339	36,853
2020	73,659	22,098	341	51,220
2021	78,638	23,592	266	54,781

주: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등 목적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 연차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은행 잉여금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초과 수납액은 2019년 3,013억원, 2020년 7,111억원, 2021년 8,159억원, 2022년 1조 4,466억원을 기록하였다.

[2018~2022회계연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A)	수납액(B)	초과수납액 (B-A)	초과수납률 (B-A)/A	추경재원 활용
2018년 (2017년도 발생분)	2,177,000	2,733,367	556,367	25.6	556,367
2019년 (2018년도 발생분)	1,912,854	2,214,200	301,346	15.8	301,346
2020년 (2019년도 발생분)	2,974,200	3,685,334	711,134	23.9	711,134
2021년 (2020년도 발생분)	4,306,100	5,121,987	815,887	19.0	815,887
2022년 (2021년도 발생분)	4,031,469	5,478,077	1,446,608	35.9	1,446,60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한국은행 잉여금의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외화자산 운용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에 따른 수입·비용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고업무관리 사업¹⁾은 공공기관 결산 지원, 출자·배당정책 지원 및 정부 소유 주식 관리, 수입인지제도 및 국가계약제도 운영 등 국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국고업무관리 사업의 예산액 3억 9,300만원 중 3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고업무관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고업무관리	393	393	-	-	393	317	0	76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현행 공공기관 결산서 법정 제출기한이 8월 20일이나, 「국회법」에 따른 결산 심의·의결기한이 8월 말인 점을 감안할 때, 국회 결산심사 내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법정 국회제출 기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는 초안이 4월 10일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²⁾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최종본이 국회에 제출된다. 반면, 공공기관결산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³⁾에 따라 3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확정된 후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감사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233-302

2) 2021년도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5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원 회계검사를 거쳐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공공기관 결산보고서 초안이 정부에서 확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 국가결산보고서와 유사하나, 감사원 제출은 5월 10일까지로 국가결산보고서 보다 30일이 늦고 감사원 회신은 7월 31일까지로 국가결산 대비 72일이 늦으며 국회제출은 국가결산 보다 81일 늦다.

[국가결산 및 공공기관결산 기간 비교]

구분	결산서 초안 확정	감사원 제출	감사원 회신	국회제출
국가결산(A)	4월초	4. 10.	5. 20.	5. 31.
공공기관결산(B)	3. 31.	5. 10.	7. 31.	8. 20.
차이(B-A)	유사	30일	72일	81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처럼 공공기관 결산서의 감사원 제출 및 회신, 국회제출 시기가 국가결산 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① 매년 4~5월은 정부결산 회계검사와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공공기관결산의 감사원 제출기한은 5월 초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② 충실한 회계검사를 위해서 회신기한도 현재와 같이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제128조의2⁴⁾는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국회가 결산 심

②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의·의결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결산서를 국회 결산 심의 완료일의 11일 전(8월 20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여 일 내에 정부 총지출의 18.0%)를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원예산에 대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2019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감사원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결산기간의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 2020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제출 일정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각각 채택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공기관 결산기간 단축을 위한 감사원 검사기간 단축 관련 감사원과 협의 중”이라고만 답변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 및 소관 부처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를 내실화하고 반복되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결산서 조기 제출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

5)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총지출 604.4조원 중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108.8조원(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중점분석, 국회예산정책처)이다.

6) 기획재정부는 감사원과 두 차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기한 단축 제시안에 대해 감사원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 마무리 단계이며, 감사원 회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안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가. 현황

정책연구비 예산(260-02목)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집행하는 예산이다.

2021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연구비 예산현액은 80억 6,6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이 중 60억 8,300만원(75.4%)를 집행하고 5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정책연구용역 합계	6,032	6,040	404	8,066	6,083	574	1,409
일반회계	5,807	5,807	379	7,808	5,837	562	1,409
국유재산관리기금	0	8	0	8	8	0	0
대외경제협력기금	135	135	25	160	148	12	0
복권기금	90	90	0	90	90	0	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에 전체 정책연구용역 건 중 1건만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할 뿐 아니라,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명시된 경쟁입찰원칙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경쟁입찰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0년과 2021년 기획재정부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총 96건 중 93건(96.9%)이 수의계약, 3건(3.1%)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었고 2021년에는 전체 125건 중 수의계약이 124건(99.2%), 경쟁입찰이 1건(0.8%)에 불과할 정도로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건, %)

구 분	전체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경쟁입찰
2020	96(100.0)	93(96.9)	3(3.1)
2021	125(100.0)	124(99.2)	1(0.8)

주: 각 연도에 정책연구비(260-02목)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1)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계약 건 총 80건 중 78건을 수의계약으로, 2021년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02건 중 10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건)

구 분	전체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계	경쟁입찰	수의계약
2020	96	93	80	2	78
2021	125	124	102	1	101

주: 각 연도에 정책연구비(260-02목)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가 23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2) 또는 '학술연구·원가계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³⁾이 97건, 입찰(재)공고 후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건 또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정책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 또는 특수 지식·기술·자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사유별 건수]

(단위: 건)	
수의계약 사유	건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가목2))	23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	97
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또는 제26조제6항제3호)	
입찰(재)공고 후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	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법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특정인 또는 특수 지식·기술·자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 계약을 체결한 연구용역 과제를 보면,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향’, ‘장기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 상당수 과제가 해당 분야의 연구성과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는 왜 해당 과제를 반드시 특정 상대방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정책연구용역 중 특정인 또는 특수지식·기술 필요에 의한 수의계약 예시]

세부사업명	연구용역 과제명	계약상대방
정책연구개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향	서울대 산학협력단
	장기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동국대 산학협력단
	연기금투자플 성과기반 경쟁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기후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 선행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논의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연구용역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	조세재정연구원
	다부처 연계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방안 연구	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외환 관련 법제 비교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용역	한국개발정책학회
경제정책조정 활성화사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채 총량관리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가회계제도운영	국민중심 국가결산제도 개선방안	조세재정연구원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타당성 검토	국토연구원
국제금융외교및G20협력	G20 인프라 및 디지털플랫폼 논의동향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금융협력강화사업	개도국 민간협력사업 확대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기구 공동 연구자문사업	사회적 재난에 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연구	한국재정학회
녹색기후기획사업	GCF·AF 이사회 논의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민간투자사업활성화지원	임대형민자사업(BTL) 효율화 및 활성화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재정건전화추진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부사업명	연구용역 과제명	계약상대방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민간 지원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연구	조세재정연구원
	재난관리재정지원체계연구	한국재정학회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연구	한국재무행정학회
	균형발전 지원체계 연구	조세재정연구원
	향후 재정운용 방향 분석 연구	재정정책연구원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	조세재정연구원
	공공민간의료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집행관리	정부 재정집행의 전달체계 분석 및 시사점	고려대 산학협력단
중장기경제전략수립	기후대응기금 설치방안 연구	조세재정연구원
	21년 미래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연구	한국고원대 산학협력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7조제1항4)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특정 다수의 경쟁을 통해 계약이행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정부와 특정 업체·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정책연구용역도 여러 연구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정 연구기관의 편중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가 계약제도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다른 정부기관보다 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할 뿐 아니라, 수의계약 사유도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관행에서 벗어나 경쟁입찰 원칙을 더욱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5)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가 정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연구용역비(260목) 집행기준에도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2021년 실시한 전체 정책연구용역의 80% 이상을 비공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원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원칙, 국회의 정책연구용역 예·결산 심의기능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

기획재정부가 최근 2년 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공개 현황을 보면, 2020년 정책연구용역 96건 중 2022년 5월 기준 41건을 공개하고 55건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 정책연구용역 중 계약기간 미도래 5건을 제외한 120건 가운데 19건을 공개하고 101건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비공개 현황]

(단위: 건, %)

구 분	전체 정책연구용역	공개(일부공개 포함)	비공개	계약기간 미도래
2020	96(100.0)	41(42.7)	55(57.3)	-
2021	125(100.0)	19(15.2)	101(80.8)	5(4.0)

주: 2022년 5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17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68건,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3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1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6조7)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비대상이 12건이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 사유별 건수]

(단위: 건)

비공개 사유	건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17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8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3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1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록 비대상	12

주: 2022년 5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특히 기획재정부는 ‘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건 내외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아 과제명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⁸⁾ 그러나 국회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기획재정부는 통일기반조성 연구용역의 과제명과 연구자명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제명과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회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한 연구용역 과제현황을 보면, ‘기후대응기금 설치방안 연구’와 같이 2022년도부터 기후대응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회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는 과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국가결산체계에서의 재정정책 효과분석 강화방안’, ‘해외 주요국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현황 및 대응사례’, ‘국민중심 국가결산제도 개선방안’, ‘21년 미래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될 경우 정쟁이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과제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⁹⁾

[2021년 정책연구용역 중 의사결정과정에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한 용역 예시]

세부사업명	연구용역 과제명	계약상대방
정책연구개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향	서울대 산학협력단
	장기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동국대 산학협력단
	기후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 선행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결산체계에서의 재정정책 효과분석 강화방안	조세재정연구원
	탄소가격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	조세재정연구원
일자리 창출 및 구조적 과제 대응	해외 주요국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현황 및 대응사례	한국노동연구원

8) 구체적으로는 북한경제 관련 연구용역은 내용의 민감성으로 인해 ① 공개시 불필요한 혼란 초래, ②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상대측의 비공개 요구, ③ 현재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개시 국익 침해 및 불필요한 논란 야기 등의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연구를 대비비 이상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비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9)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회에 있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현재까지 비공개하고 있다.

세부사업명	연구용역 과제명	계약상대방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체계 및 결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채총량 관리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금융기술발전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동국대 산학협력단
	국민중심 국가결산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재난관리재정지원체계연구	한국재정학회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연구	한국재무행정학회
	균형발전 지원체계 연구	조세재정연구원
	향후 재정운용 방향 분석 연구	재정정책연구원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	조세재정연구원
	공공민간의료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집행관리	정부 재정집행의 전달체계 분석 및 시사점	고려대 산학협력단
중장기경제전략수립	기후대응기금 설치방안 연구	조세재정연구원
	21년 미래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장기전략수립을 위한 경제사회 전망 및 미래비전 설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연구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해외주요국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격차 해소 해외사례 및 시사점	서울교육대 산학협력단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에너지·녹색금융 이슈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경희대 산학협력단
혁신조달지원	한국형 전략조달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조달종합계획 기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지정 제도 운영 및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적정성 검토 및 정부정책 연계기준 설정 방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
	혁신구매 목표제도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개발 및 적용	한국조달연구원
	공공조달시장 성과관리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2022년 5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¹⁰⁾는 정보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¹¹⁾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4조도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연구 시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정책연구용역 예·결산 심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국회는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필요성 및 성과, 부처별 정책연구용역 사업 및 과제의 중복가능성,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충실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사회현안과 재정제도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러 분야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의정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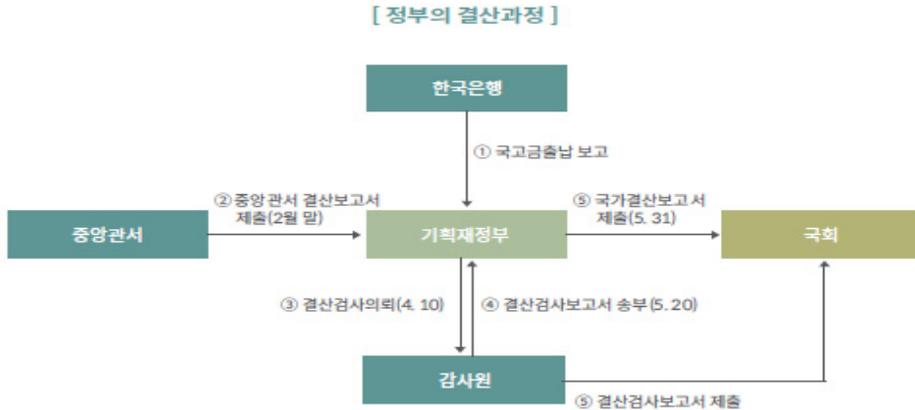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 원칙과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원칙, 국회의 정책연구용역 예·결산 심의기능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현 황

정부의 결산과정은 「국가재정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¹⁾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결산과정은 ①(중앙관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매년 2월 말까지), ②(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 후 감사원 제출(매년 4월 10일까지), ③(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매년 5월 20일까지), ④(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매년 5월 31일까지)의 절차로 진행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재정」, 2022.4.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에 따라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과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의 첨부서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작성되고 있고,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별도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결산명세서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이월명세서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예비금 사용명세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수입지출결산(기금)	재원조성실적표 성인지 기금결산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국가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	통합재정수지표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재무제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자료: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나. 분석의견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결과,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 유무를 철저하게 확인·점검하는 한편, 오류사례 배포 및 정부회계 관련 교육 강화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취합하고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 국회에도 제출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는 동안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재무제표 관련 오류금액은 자산 30.9조원(과소계상 28.5조원, 과대계상 2.4조원), 부채 1.1조원(과대계상), 재정운영결과²⁾ 30.8조원(과소계상 1.2조원, 과대계상 29.6조원)이고, 재무제표 부속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에 따른 국유재산의 오류금액은 26.4조원(과소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유형을 보면, 재무제표에서 i) 자산 누락 및 중복계상 등 오류, ii) 자산 재평가, 대손 등 평가 관련 오류, iii)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iv) 부채 누락 및 중복계상 등 오류, v)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vi) 수익, 비용 인식 오류 등, vii) 내부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 오류가 있었으며,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에서는 취득완료 국유재산 미등재, 평가손익 계상 오류, 국유재산의 비용 계상 오류, 기타 오류가 발견되었다.

2)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등)에서 '비교환수익 등'(국세수익 등)을 차감한 값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국유재산 관련 오류 유형]

구분	오류 세부유형
재무 제표	자산 누락 및 중복계상 등 오류 ① 일반유형자산 취득 회계처리 누락 등 ②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③ 일반유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자산재평가, 대손 등 평가 관련 오류 ① 구축물(고속도로)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② 일반유형자산 재평가 금액 오류, ③ 건물재평가 오류
	건설증인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① 건설증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②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③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등
	부채 누락 및 중복계상 등 오류 ① 매각대금 관련 선수금 미제거 오류, ② 소송충당부채 미인식 오류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① 건설증인자산 과소 계상 오류, ② 취득 중인 내부개발시스템 계정분류 오류 ③ 미수채권의 유동성 대체
	수익, 비용 인식 오류 등 ① 비용 관련 선급금의 미정산, ② 비용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③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누락
	내부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 오류 ① 순자산 변동 항목인 재원의 조달과 이전거래의 조정 ② 개별 중앙관서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내부거래 추가 제거 ③ 재정증권이자상환액 회계처리 누락
국유 재산	취득완료 국유재산 미등재, 평가손익 계상 오류, 국유재산의 비용 계상 오류, 기타 오류

자료: 감사원,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최근 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서류 오류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2020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오류금액이 자산에서 17.6조원, 재정운영결과에서 19.1조원, 국유재산에서 25.2조원 각각 증가하였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최근 3회계연도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결과 재무제표 등 오류 현황]

(단위: 조원)

연도	재무제표 오류금액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부속서류 오류
	자산(a)	부채(b)	소계(c=a+b)	재정운영결과	국유재산
2019	16.1	0.3	16.4	5.5	0.5
2020(A)	13.3	4.4	17.7	11.7	1.2
2021(B)	30.9	1.1	32.0	30.8	26.4
증감(B-A)	17.6	△3.3	14.3	19.1	25.2

주: 오류금액은 과소계상 금액의 절댓값과 과대계상 금액을 합한 금액

자료: 각 연도의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정리

이와 같은 오류는 각 중앙관서에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등 오류를 상당수 확인 및 수정하지 못한 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가 결산 심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정부가 작성한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과정에서 오류의 일부를 확인·수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결산 심의가 정부의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 유무를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오류사례 배포, 각 중앙관서의 결산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정부회계 관련 교육 강화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사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유재산법」 제60조¹⁾에 근거하여 정부는 ①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②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현물 출자할 수 있다.

2021회계연도에 정부는 총 8,70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현물 출자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출자대상기관별 현물 출자규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6,500억원, 한국철도공사 1,804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403억원이고, 재산유형별 현물 출자규모는 토지 1,623억원, 건물 584억원, 유가증권 6,500억원이다.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현물출자가액			
	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합 계	8,707	1,623	584	6,500
한국자산관리공사	6,500	-	-	6,500
한국철도공사	1,804	1,623	181	-
인천국제공항공사	403	-	403	-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61조2)에 따른 현물출자 절차를 보면, 정부출자기업체가 주무기관의 장에게 현물출자를 신청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현물출자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나. 분석의견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국회 심의나 사전 보고 등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나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3)에 따르면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고, 이에 정부는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9호4)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전에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규모 및 방식의

2) 「국유재산법」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4)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고 국회 결산보고서 제출 이후에 현물출자 규모와 방식을 사후 확인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을 전제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특정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정부출자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출자대상이 현물인 점 외에 현금출자와 자본확충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회의 사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을 보면, 2016년, 2019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현물출자가 이뤄졌으며, 연간 출자가액이 적게는 907억원(2010년)에서 많게는 3조 4,969억원(2015년)일 정도로 현물출자 규모가 큰 상황이다.

[2010년 이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내역	
		출자재산	출자가액
2010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시설관리권	907
2011	한국전력공사	군 배전선로 및 전신주 등	106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생활공업용수 댐사용권	121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설관리권, 건물, 공작물	15,523
	울산항만공사	시설관리권, 건물, 공작물	2,860
	부산항만공사	토지, 건물, 공작물	1,743
	소 계		20,353
2012	한국수출입은행	도로공사 주식, 자산관리공사 주식	8,793
2013	한국공항공사	토지	2,606
	한국수자원공사	댐사용권	167
	소 계		2,773
2014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3,800
2015	한국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한국전력공사 주식	2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도로공사 주식	1,500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차량(22편성)	3,469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0,000
	소 계		34,969

(단위: 억원)

연도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내역	
		출자재산	출자가액
2017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자증권	5,000
2018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자증권	13,500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970
	소 계		24,470
2021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공사 주식, 한국공항공사 주식	6,500
	한국철도공사	토지, 건물, 차량정비기구 등	1,804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403
	소 계		8,707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정부가 현물출자를 실행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특정 정부출자기관의 지분취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국유재산 처분업무보다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와 유사한 교환·양여·매각 등 국유재산의 처분은 정부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⁵⁾

5)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일본은 총무대신이 현물출자를 승인하고, 독일은 현물출자 후 국회에 사후보고를 하고 있어 현물출자 제도가 있는 세계 주요국가에서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현물출자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고, 독일과 폴란드 등 예외적으로 정부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경우에 개별법을 근거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일본 등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과 관련된 현물재산을 출자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법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한 현물출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 2021.6.).

그러나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한번 출자한 이후에는 정부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 자는 동일한 지위를 가짐에도 국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국회 예산안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 규모는 현금출자 필요성 및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⁶⁾ 현물출자여부 및 규모는 국회의 출자금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현물출자는 정부가 출자대상기관의 지분획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점에서 교환·양여·매각 등 국유재산의 처분과 차이가 있으며, 정부는 매년 「국유재산법」 제9조7)에 따라 국유재산의 처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반면, 현물출자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국회가 사전에 현물출자 계획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물출자의 필요성, 출자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2021년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 증대를 위해 유가증권을 출자하였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건물 등의 현물을 출자하였으나, 국회는 사전에 현물출자 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해당 기관들에 토지나 건물 또는 유가증권을 출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물출자 외에 다른 합리적 지원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제시의 기회가 없었다.

6)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출자대상기관의 자본 확충에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출자대상기관 입장에서 볼 때, 현물출자를 받으면 해당 출자가액 만큼 현금출자를 덜 받아도 된다.

7)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021년 정부출자기관별 현물출자 사유]

(단위: 억원)

출자대상기관	출자가액	현물출자 사유
한국자산관리공사	6,500	자본 확충을 통한 공사의 금융지원 규모 증대
한국철도공사	1,804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손실 일부 보전
인천국제공항공사	403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손실 일부 보전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현행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명시된 현물출자 요건이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물출자 시행에 관한 정부의 재량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거나,⁸⁾ 적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⁹⁾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629호)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9)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사전동의나 사전보고 보다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사후보고 방식으로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 현황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세입예산 수납액 - 세출예산 집행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¹⁾에는 연도 말 결산 후 발생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 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활용할 수 있고, ② ①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10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③ ①과 ②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100 이상을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④ ①부터 ③까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고, 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 ⑧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방법 및 절차]

순서	처 리 방 법
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활용 (재량)
②	①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30/10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의무)
③	①과 ②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100 이상을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채무, 국가배상금 등의 상환에 사용 (의무)
④	①부터 ③까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 (재량)
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의무)

자료: 「국가재정법」 제90조 정리

나. 분석의견

최근 국가채무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법정 비율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관행적인 추경재원 활용을 지양하고 법정 최소비율 이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회계연도(2012~2021)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는 2012년도(2013년 사용) 8,533억원, 2013년도 812억원, 2014년도 964억원, 2015년도 2조 5,277억원, 2016년도 6조 920억원, 2017년도 10조 422억원, 2018년도 10조 6,575억원, 2019년도 619억원, 2020년도 5조 7,193억원, 2021년도(2022년 사용) 17조 9,949억원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최근 10년 간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 7,193억원 중 2조 2,653억원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1조 7,615억원이 국가채무 상환(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채 원리금 등 상환)에, 나머지 1조 6,924억원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되었다.

[최근 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 현황]

(단위: 억원)

회계연도	세계 잉여금	사용내역			
		지방교부세등 정산	국가채무 상환 ¹⁾	추경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12(2013년 사용)	8,533	1,886	3,390	3,257	-
2013(2014년 사용)	812	-	414	-	398
2014(2015년 사용)	964	-	491	472	-
2015(2016년 사용)	25,277	-	12,891	12,386	-
2016(2017년 사용)	60,920	38,091	11,644	11,186	-
2017(2018년 사용)	100,422	59,762	20,736	19,923	-
2018(2019년 사용)	106,575	105,292	654	629	-
2019(2020년 사용)	619	619	-	-	-
2020(2021년 사용)	57,193	22,653	17,615	16,924	-
2021(2022년 사용)	179,949	113,382	33,949	32,618 ²⁾	-

주: 1)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을 포함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7조 9,949억원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11조 3,382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3조 3,949억원이 각각 사용되고, 잔액 3조 2,618억원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가 크지 않아 전액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사용한 2019년도(2020년 사용) 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최근 10회계연도 동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된 사례는 2013년도(2014년 사용)가 유일하다.

특히, ‘국가채무 상환’의 용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채 원리금 등 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세계잉여금(2020년 사용)을 제외한 모든 연도(2017년도 이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액은 지방교부세 등 정산 후 잔액의 30.0%, 국채 원리금 등 상환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후 잔액의 30.0%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 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세계 잉여금(A)	지방교부세 등 정산(B)	정산 후 잔액 (C=A-B)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D)	출연 후 잔액 (E=C-D)	국채 원리금 상환(F)
2017년도 (2018년 사용)	100,422	59,762	40,660	12,198 (30.0)¹⁾	28,462	8,539 (30.0)²⁾
2018년도 (2019년 사용)	106,575	105,292	1,283	385 (30.0)¹⁾	898	269 (30.0)²⁾
2019년도 (2020년 사용)	619	619	0	-	-	-
2020년도 (2021년 사용)	57,193	22,653	34,540	10,362 (30.0)¹⁾	24,178	7,253 (30.0)²⁾
2021년도 (2022년 사용)	179,949	113,382	66,567	19,970 (30.0)¹⁾	46,597	13,979 (30.0)²⁾

주: 1)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D) ÷ 정산잔액(C)

2) 국채 원리금 상환(F) ÷ 출연 후 잔액(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3항·제4항에서 정한 법정 최소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국가채무 상환의 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금액은 재정지출 규모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최근 10회계연도(2013~2022) 사이 국가채무(D1 기준) 증가 추이를 보면, 2013년 489.8조원에서 2021년 967.2조원,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국가채무가 1,068.8조원으로 지난 10년 간 579.0조원(118.2%)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2.6%에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49.7%로 17.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최근 10회계연도(2013~2022) 간 국가채무 증가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채무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67.2	1,068.8
(GDP 대비)	(32.6)	(34.1)	(35.7)	(36.0)	(36.0)	(35.9)	(37.7)	(43.8)	(47.0)	(49.7)

주: 2013~2021년도는 결산 기준, 2022년도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최근 국가채무 규모 증가 속도 및 추이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법정 상환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관행적인 추경재원 투입을 지양하는 한편, 법정 최소비율 이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2년 6월 말 기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확대 관련 법률안 5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확대 관련 법률안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법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
재정건전화법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의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후 잔액의) 30%에서 50%로 상향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 정리

가. 현 황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¹⁾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영하고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²⁾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운용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이고, 주요 용도는 국유재산의 취득이나 개발이다.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현황을 보면, 계획현액 1조 7,721억 500만원 중 1조 6,597억 1,100만원을 집행(93.7%)하였고, 1,619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1억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최근 4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2018	1,111,812	1,111,812	250,737	1,362,549	1,361,896	302,246	86,131	100.0
2019	1,511,083	1,511,083	302,246	1,813,329	1,977,236	192,955	36,697	109.0
2020	1,609,525	1,611,264	192,955	1,804,219	1,608,155	104,782	13,299	89.1
2021	1,666,423	1,667,323	104,782	1,772,105	1,659,711	161,942	44,102	93.7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 「국유재산법」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영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1년도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를 상회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부지확보 등 사전 절차이행 상황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사업지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소관 세부사업 중 당초계획액 대비 집행액 비율 또는 계획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70% 미만인 사업이 총 68개로, 이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전체 세부사업 131개³⁾의 51.9%에 해당하며, 집행률 구간별로 보면, 50%이상 70% 미만인 사업이 17개, 30%이상 50% 미만인 사업이 13개, 10%이상 30% 미만인 사업이 14개, 10% 미만인 사업이 24개로 나타났다.

[집행률 구간별 사업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세부사업	집행률 70% 미만 세부사업				
		소계	50~70% 미만	30~50% 미만	10~30% 미만	10% 미만
사업수	131	68	17	13	14	24
비율	100.0	51.9	13.0	9.9	10.7	18.3

주: 당초계획 대비 집행액 비율 또는 계획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 중 낮은 숫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대법원 소관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법무부 소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 서울검찰청사 증축, 전주 로파크 신축,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국세청 소관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기획재정부 소관 관악복합관사 신축 등 8개 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집행액이 전혀 없었다.

3) 기금운영비와 정부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 관련 사업 제외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집행부진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당초 계획액 (A)	계획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 액	집행률	
							C/A	C/B
청사시설 취득	대법원	15,055	11,990	9,709	2,039	242	64.5	81.0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대법원	11,050	0	0	0	0	0.0	0.0
서울법원제2청사 신축	대법원	1,823	1,854	1,023	831	0	56.1	55.2
제1별관 재건축	감사원	11,853	13,103	4,073	9,028	2	34.4	31.1
업무시설 취득	경호처	3,989	4,045	2,012	2,016	17	50.4	49.7
주그리스대사관 청사 신축	외교부	4,781	364	6	0	358	0.1	1.7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외교부	1,518	1,560	434	1,125	0	28.6	27.8
기타 청사시설 취득	법무부	9,193	13,713	7,998	5,396	320	87.0	58.3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법무부	3,733	8,038	5,551	2,479	8	148.7	69.1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법무부	11,150	2,090	1,590	456	45	14.3	76.1
전주지검남원지청신축	법무부	1,431	149	149	0	0	10.4	100.0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법무부	9,713	10,024	6,779	2,931	315	69.8	67.6
대구고지검 이전신축	법무부	7,030	0	0	0	0	0.0	0.0
경기북부소년분류 심사원 신축	법무부	1,417	402	0	116	286	0.0	0.0
서울검찰청사 증축	법무부	1,946	0	0	0	0	0.0	0.0
전주 로파크 신축	법무부	263	263	0	0	263	0.0	0.0
기록관 신축	법무부	13,364	8,238	4,969	3,268	1	37.2	60.3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	법무부	3,533	2,133	770	1,157	206	21.8	36.1
기타 교정시설 취득	법무부	9,881	10,026	1,735	7,651	640	17.6	17.3
거창교정시설 신축	법무부	20,595	24,305	16,700	7,507	98	81.1	68.7
원주교도소 이전	법무부	5,667	1,327	1,324	3	0	23.4	99.8
창원교도소 이전신축	법무부	5,292	309	145	64	100	2.7	47.0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법무부	1,146	121	85	0	36	7.4	70.0
춘천소년원 재건축	법무부	982	305	141	1	163	14.4	46.3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법무부	6,121	1,351	514	403	434	8.4	38.0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행안부 인혁처	1,230	30	0	0	30	0.0	0.0
대전청사민원동 신축	행안부 인혁처	1,945	2,107	186	1,915	6	9.6	8.8

세부사업명	소관 부처	당초 계획액 (A)	계획 현액 (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 액	집행률	
							C/A	C/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취득	농림부	8,101	6,563	5,495	476	592	67.8	83.7
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취득	고용부	8,351	8,651	5,640	1,793	1,218	67.5	65.2
무안공항 상주기관 통합관사 신축	국토부	947	972	25	0.0	947	2.7	2.6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국세청	262	262	0	63	199	0.0	0.0
기타시설 취득	통계청	509	770	235	0	535	46.2	30.5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신축	병무청	1,146	1,146	11	0	1,135	1.0	1.0
용산경찰서 신축	경찰청	947	1,793	888	905	0	93.8	49.5
방배경찰서 신축	경찰청	6,072	413	285	0	128	4.7	69.1
부산중부경찰서 신축	경찰청	5,100	6,917	1,801	4,855	261	35.3	26.0
부산해운대경찰서 신축	경찰청	778	778	69	709	0	8.8	8.8
인천검단경찰서 신축	경찰청	2,675	480	100	375	5	3.7	20.8
광명경찰서 신축	경찰청	440	442	300	143	0	68.1	67.7
혜화경찰서 신축	경찰청	732	864	195	585	86	26.6	22.5
정읍경찰서 신축	경찰청	2,655	3,202	1,962	658	582	73.9	61.3
경주경찰서 신축	경찰청	720	720	1	0	719	0.1	0.1
대구달성경찰서 신축	경찰청	659	1,251	823	413	15	124.9	65.8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별관동 증축	경찰청	11,588	13,577	9,153	4,421	3	79.0	67.4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경찰청	717	756	217	538	1	30.2	28.7
서대문경찰서 신축	경찰청	698	381	0	378	3	0.0	0.0
여주경찰서 신축	경찰청	1,214	1,537	534	1,000	3	44.0	34.8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경찰청	514	514	38	477	0	7.3	7.3
경기평택경찰서 신축	경찰청	647	1,259	784	412	63	121.1	62.3
부산금정경찰서 신축	경찰청	953	953	383	569	1	40.2	40.2
서울서초경찰서 신축	경찰청	1,134	1,134	405	728	1	35.7	35.7
서울양천경찰서 신축	경찰청	1,138	1,138	406	731	1	35.7	35.7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경찰청	9,625	4,815	4,714	100.0	0	49.0	97.9
기타시설 취득	경찰청	3,494	3,205	1,494	653	1,058	42.8	46.6
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경찰청	1,108	1,108	44	1,064	0	4.0	4.0
청사시설 취득	기상청	6,979	11,073	6,773	132	4,169	97.0	61.2
훈련시설 취득	해경청	15,296	10,449	10,132	33	284	66.2	97.0

세부사업명	소관 부처	당초 계획액 (A)	계획 현액 (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C/B
청사점유 토지 취득	해경청	2,425	525	480	0	45	19.8	91.5
관사시설 취득	해경청	5,335	1,315	45	877	393	0.8	3.4
기타시설 취득	해경청	9,132	7,951	5,799	1,789	363	63.5	72.9
수원 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10,438	7,225	2,312	4,810	104	22.1	32.0
천안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718	718	313	405	0	43.6	43.6
대전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7,849	4,027	801	530	2,695	10.2	19.9
익산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9,539	10,832	7,086	3,431	315	74.3	65.4
의정부 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843	843	211	50	582	25.1	25.1
관악복합관사 신축	기재부	192	192	0	0	192	0.0	0.0
부산통합관사 신축	기재부	1,608	1,654	42	231	1,381	2.6	2.5
정책연수원 신축	기재부	20,180	11,841	1,225	10,419	197	6.1	10.3

주: 당초계획액 대비 집행률 또는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은 국가기관이 사용하기 위한 청사 등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서 건설사업의 특성상 부지확보나 관계기관 간 협의 또는 총사업비 조정 지연, 문화재 발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에 따른 설계·공사 지연이 주요 집행부진 사유이며, 사업별 구체적인 집행부진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세부사업명	부처	집행부진 사유
청사시설 취득	대법원	상주감리 변경으로 착공지연 공사비 등 집행부진,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설계비 집행부진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대법원	부지매매계약 지연으로 건설보상비 등 집행부진
서울법원제2청사 신축	대법원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설계비 집행부진
제1별관 재건축	감사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공사비 집행 부진
업무시설 취득	경호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
주그리스대사관청사 신축	외교부	당초매입부지 미확보로 다른매입부지 물색 중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외교부	설계비 전액 이월(2022년 집행예정)

세부사업명	부처	집행부진 사유
기타 청사시설 취득	법무부	사업 부지변경으로 설계 중단, 수직증축불가사유로 사업규모 축소되어 총사업비 조정 필요 등으로 사업 지연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법무부	부지내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 일시 중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법무부	2021년 건설보상비 집행소요 감소
전주지검남원지청 신축	법무부	부지 내 문화재 발견으로 설계 중지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법무부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파일공법변경으로 공사 지연
대구고·지검 02관촉	법무부	부지조성지연으로 부지 매입 불가
경기북부소년분류 심사원 신축	법무부	GB변경 시일소요로 집행불가
서울검찰청사 증축	법무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11월 완료로 예산 집행불가
전주 로파크 신축	법무부	신축부지가 LH 위탁개발사업 추진 지역이며 전주시 실시계획 인가 진행 중으로 집행 불가
기록관 신축	법무부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 및 사토장 확보 등으로 공정지연
검찰청 기차시설 취득	법무부	서울서부지검 설계지연 및 공정지연
기타 교정시설 취득	법무부	지자체와 업무협의 지연
거창교정시설 신축	법무부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 및 성토재 확보 등으로 공정지연
원주교도소 이전	법무부	부지관련 민원 해결 후 연말 공사 발주로 계약 체결 지연
창원교도소 이전신축	법무부	부지 관련 민원 발생으로 중간설계적정성검토 순연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법무부	GB변경 시일소요로 집행불가
춘천소년원 재건축	법무부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시일소요로 사업 지연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법무부	GB변경 용역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지자체 업무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지연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행안부 인혁처	입주기관 추가로 인한 KDI적정성 재검토 등 행정소요로 사업 중지('21.12.)
대전청사민원동 신축	행안부 인혁처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0.10.~'21.6.7.)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21.7.~9.)에 따라 사업기간 순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취득	농림부	설계비 및 공사 진행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이월, 토지 매입 및 공사 진행에 따른 집행 잔액 불용
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취득	고용부	발주지연, 부지선정 문제에 따른 설계공모 지연 및 유찰 등
무안공항 상주기관 통합관사 신축	국토부	설계결과, 공사비 증액소요 발생하여 총사업비조정협의요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국세청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로 인해 설계용역 중지

세부사업명	부처	집행부진 사유
기타시설 취득	통계청	행정절차(건축허가) 처리 지연으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음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신축	병무청	영등포구 메나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
용산경찰서 신축	경찰청	정밀안전진단(기존 용벽 구조진단 등) 용역 추가 진행 및 보강 의견 등에 따른 설계지연 등으로 집행률 부진
별관동 증축	경찰청	사업부지 변경 등에 따른 일정지연으로 집행률 부진
방배경찰서 신축	경찰청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소요 등에 따른 일정 지연
부산중부경찰서 신축	경찰청	공사 중 사정변경 사항 발생 등에 따른 일정 지연
부산해운대경찰서 신축	경찰청	신축계획 변경으로 계획설계 재검토 기간 소요, 설계도면 수정 보완에 따른 기본설계 지연
인천검단경찰서 신축	경찰청	토지조성 및 원가시기 공개 지연 사유 등으로 집행 부진
광명경찰서 신축	경찰청	설계공모 유찰 등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집행률 부진
해화경찰서 신축	경찰청	사업적정성 재검토 등 후속일정 지연
정읍경찰서 신축	경찰청	부지 확보 위한 용도변경 절차 지연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
경주경찰서 신축	경찰청	부지교환 협의 등으로 기본설계 중지 등 일정 지연
대구달성경찰서 신축	경찰청	사업부지 경계 불명확, 토지교환 협의 등에 따른 일정 지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별관동 증축	경찰청	공사 착공 초기 미군부대 사용부지로서 오염도 발생에 따른 오염도 조사, 철근 등 관급자재 품귀에 따른 공정지연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경찰청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중
서대문경찰서 신축	경찰청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중
여주경찰서 신축	경찰청	교통영향평가, 지출 전 사전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경찰청	기본설계 완료 후 설계 적정성 검토 지연
경기평택경찰서 신축	경찰청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지연에 따른 집행률 부진
부산금정경찰서 신축	경찰청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공모 추진에 따른 일정 지연
서울서초경찰서 신축	경찰청	조달청 설계공모 협의 지연 등으로 계약체결 지연
서울양천경찰서 신축	경찰청	조달청 설계공모 협의 지연 등으로 계약체결 지연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경찰청	총사업비 조정,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으로 일정지연
기타시설 취득	경찰청	사업부지 변경, 도시계획 변경 및 설계 적정성 검토 등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집행 부진
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경찰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및 설계 공모 등 관련절차에 따른 서류보완 및 협의 지연
청사시설 취득	기상청	기상청 대전 이전 결정에 따라 국가기상통합운영센터 및 직장 어린이집 구축사업 중단
훈련시설 취득	해경청	신축현장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및 교환 진행으로 착공지연
청사점유 토지 취득	해경청	사유지 매입지연

세부사업명	부처	집행부진 사유
관사시설 취득	해경청	사업비 증가에 따른 KDI적정성 재검토로 착공지연
기타시설 취득	해경청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설계지연 및 착공지연
수원 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착공 지연
천안 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원인행위(설계용역 등) 후 집행잔액 이월
대전 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으로 착공일정 지연
익산 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지장물 및 연약지반처리 공사 추가로 공사지연
중앙전파관리소 신축	기재부	설계용역 등 용역계약 체결 후 선금집행 잔액 이월
의정부 통합청사 신축	기재부	설계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
관악복합관사 신축	기재부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
부산통합관사 신축	기재부	설계용역 지연
정책연수원 신축	기재부	가설공사 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주: 당초계획액 대비 집행률 또는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부지확보 지연이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 국가기관이 사용해야 할 청사나 기타시설 등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별 부지확보 등 사전 절차이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기획재정부가 관여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사업지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국회 예산안 심의관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미편성 사업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202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사업⁴⁾과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⁵⁾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4) 코드: 국유재산관리기금 4531-546

5) 코드: 국유재산관리기금 2434-408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한 예산 미반영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	-	3,251	2,889	6,140	6,129	-	11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	33,278	-	33,278	33,278	-	-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32억 5,100만원을 조달하여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사업의 잔여 공사비에 지출하였고, 2021년 12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32억 7,800만원을 마련하여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토지보상비로 전액 집행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 및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시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금액	증액재원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	2021년 1월	3,251	타 사업 예상불용액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2021년 12월	33,278	타 사업 예상불용액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각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사업은 2020년 5월에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잔여 공사비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였고,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전주시의 이주단지 및 작지저수지 이전 관련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21년도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나, 2021년 12월에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고 지역주민의 토지보상 민원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사업과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예산 미편성 사유 등]

구분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기간	2016 ~ 2021년	2012 ~ 2024년
총사업비	75,235백만원	182,080백만원
2021년도 예산 미편성 사유	2020년 5월에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어 2021년도 예산 미반영	전주시에서 이주단지 및 작지저수지 이전 관련 연구용역 실시, 총사업비 조정협의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21년도 예산 미반영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	총사업비가 조정(71,984백만원 → 75,235백만원)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이 미반영되어 계획변경을 통해 잔여 공사비 재원 조달(2021년 2월 준공)	2021년 12월에 감정평가분이 반영된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었고, 조속한 보상을 원하는 지역주민 민원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비 집행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사업은 총사업비 조정협약이 2020년 3월에 완료되어 2021년도 예산안에 잔여 공사비 소요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하였으며,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기본설계용역 재개시점이 2023년 2월, 착공 예정시기가 2024년 하반기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2021년 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333억원 규모의 토지보상비를 지출하였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향후 계획]

('21. 12.) 총사업비 변경(건설보상비 증액, 감정평가반영) ('21. 12.) 전주시, 작지저수지 이전 용역 완료 ('23. 02.) 기본설계용역 재개 ('23. 06.) 기본설계용역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24. 04.) 실시설계 완료 ('24. 하반기) 착공 예정(공사기간 36개월) ('27. 하반기) 준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⁶⁾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소요 또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거나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 기금은 30%)의 범위에서 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나,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국회가 해당 사업 예산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지 못한 사업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미편성 사업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6)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가. 현 황

국채는 정부의 부족한 조세수입을 보전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권'), 재정증권 등 네 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국채 종류별 개요]

구 분	발행 목적	발행 방법	만기	표면 이자
국고채권	재원 조달	경쟁입찰	2,3,5,10,20,30,50 년	입찰시 결정
재정증권	일시 부족 자금 조달	경쟁입찰	1년 이내	0%
외국환평형 기금채권	민간의 원활한 외화채권 발행 여건 조성	경쟁입찰	발행시 결정	발행시 결정
(제1종)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 재원조달	첨가소화	5년	1.00%

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2013년 5월에 폐지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2.5.

국고채권은 각 회계 및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고,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채권으로서 국민주택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과거에는 의무취득자, 취득사유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발행되었으나, 현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하고 있다.

외평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외국인 투자자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¹⁾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일시적 자금 불일치로 발생하는 국고 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²⁾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외평채권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민간기업의 채권에 대한 기준금리 역할도 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국채 잔액은 총 937.0조원이며, 국고채권이 843.7조원(90.0%), 국민주택채권이 82.2조원(8.8%), 외평채권이 11.2조원(1.2%)을 차지하고 있고, 2020년 대비 국고채권은 116.9조원, 국민주택채권은 3.3조원, 외평채권은 1.7조원이 각각 증가하였다.

[2021년 말 기준 국채 유형별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국 채	815.2	100.0	937.0	100.0	121.8
○ 국고채권	726.8	89.2	843.7	90.0	116.9
일반회계	437.5	53.7	523.1	55.8	85.6
외국환평형기금	246.8	30.3	252.6	27.0	5.8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42.4	5.2	67.9	7.2	25.5
○ 외평채권	9.5	1.2	11.2	1.2	1.7
외화표시	9.5	1.2	11.2	1.2	1.7
○ 국민주택채권	78.9	9.7	82.2	8.8	3.3
제1종 국민주택채권	78.9	9.7	82.1	8.8	3.3
제2종 국민주택채권	0.03	0.0	0.02	0.0	△0.01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2.5.

나. 분석의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총칙에 국민주택채권 발행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최근 2 회계연도 연속으로 국회가 의결한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민주택채권이 발행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국민주택채권 발행 한도액 초과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20조제1항제1호3)에 따르면 예산총칙에는 국채와 차입금의 한

2) 재정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로 당해 연도에 모두 상환하므로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도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예산총칙 제9조에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권 발행 한도액(1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권 발행 한도액(187.5조원), 외 국환평형기금의 외평채권 발행 한도액(15억 달러)이 책정되어 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예산총칙에 명시된 차입금 및 국채발행 한도액]

제9조 2021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87,5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 중 연도별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한도액과 실제 발행액을 보면, 발행 한도액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6.0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 발행액은 2018년 15.1조원, 2019년 15.4조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8.7조원, 2021년에는 18.8조원으로 각각 발행 한도액을 2.7조원, 2.8조원 초과하였다.

[연도별 국민주택채권 발행 한도액과 실제 발행액 비교]

(단위: 조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발행 한도액(A)	16.0	16.0	16.0	16.0
실제 발행액(B)	15.1	15.4	18.7	18.8
차이(B-A)	△0.9	△0.6	2.7	2.8

자료: 연도별 예산총칙 및 통계청 「e-나라지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정부가 발행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국고채권이나 외평채권과 달리 국민주택채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권은 주택거래량과 금액에 비례하여 발행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법」 제8조제1항⁴⁾에 따르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책정되므로⁵⁾ 주택 거래량이 많고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국민주택채권 발행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총칙에 명시된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칙에 국채 발행 한도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부로 하여금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국채 발행 한도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채 발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채 중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 규모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8조⁶⁾에 따르면 정부는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세출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4) 「주택도시보증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에 따르면 부동산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책정된다.

6)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예산총칙에 명시한 국채 발행 한도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총칙에 따른 국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채 발행 한도 상향을 위한 국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에 총 4회, 2021년에 총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총칙의 국민주택채권 발행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결국 2020년과 2021년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국민주택채권이 발행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가 예산총칙에 따른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은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계·기금 등에 자금 예탁, 재정용자 및 공공차관 상환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자기금의 총괄계정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회계와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하여 타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등 공공목적에 따라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총괄 계정은 2021년 회계연도 기준 공자기금 268조 2,552억 5,700만원 중 99.7%에 해당하는 267조 4,659억 6,600만원 규모로 운영되었다.

총괄 계정의 수입항목은 국고채 발행 및 회계·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공자기금이 회계·기금에 예탁한 금액의 원리금 회수 등이며, 지출 항목은 국고채 원리금 상환, 회계·기금으로의 예탁금, 공자기금이 회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등이다.

[2021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 계정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계정	수입				지출			
	주요항목	'20	'21	증감	주요항목	'20	'21	증감
총괄	국고채 발행	173.7	174.7	1	국고채 원리금상환	77.2	82.5	5.3
	예수금	25.7	26.2	0.5	예탁금	166.1	145.6	△20.5
	예탁원리금 회수 등	68.7	66.6	△2.1	예수원리금 상환 등	24.8	39.4	14.6
	계	268.1	267.5	△0.6		268.1	267.5	△0.6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공자기금에서 회계·기금으로의 예수 원금 상환액이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공자기금으로의 신규예수금을 초과하여 공자기금 가용재원이 감소하는바, 이로 인한 공자기금 자원 재배분 기능 약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 6.2조원 수준의 기금 예수금 규모가 2021회계연도 기준 19.2조원으로 급증하였다. 2015~2016년 2조원대의 타 회계 예수금은 2021년 7.1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전체차원에서 기금이 보유한 여유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단기간 내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 규모 및 공자기금이 기타 회계 및 기금에 상환해야 할 원금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¹⁾ 기금 예수금은 2016년부터 10조원 규모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기금예수원금상환(공자기금지출)도 21.2조원 규모로 증가되었다. 기타 회계 예수금 또한 기타회계 예수원금상환(공자기금지출)액이 증가하여 10.4조원에 이른다.

2021회계연도에는 각 기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는 신규 예수금 보다 공자기금에서 기금으로 예수상환하는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공자기금의 가용재원이 감소하였고, 가용자원 감소폭은 2022년 예산안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공자기금 신규 예수금 보다 예수원금상환액이 더 커지게 되면 예수원금 상환 자원 마련을 위해 국고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기타 여유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자기금이 재배분할 자원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공자기금이 담당하는 자원 재배분 기능 약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각 기타 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은 공자기금에 예주시 지정한 만기일(10년 이내)에 공자기금이 예수원금을 기타회계 및 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연도별 기타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수원금상환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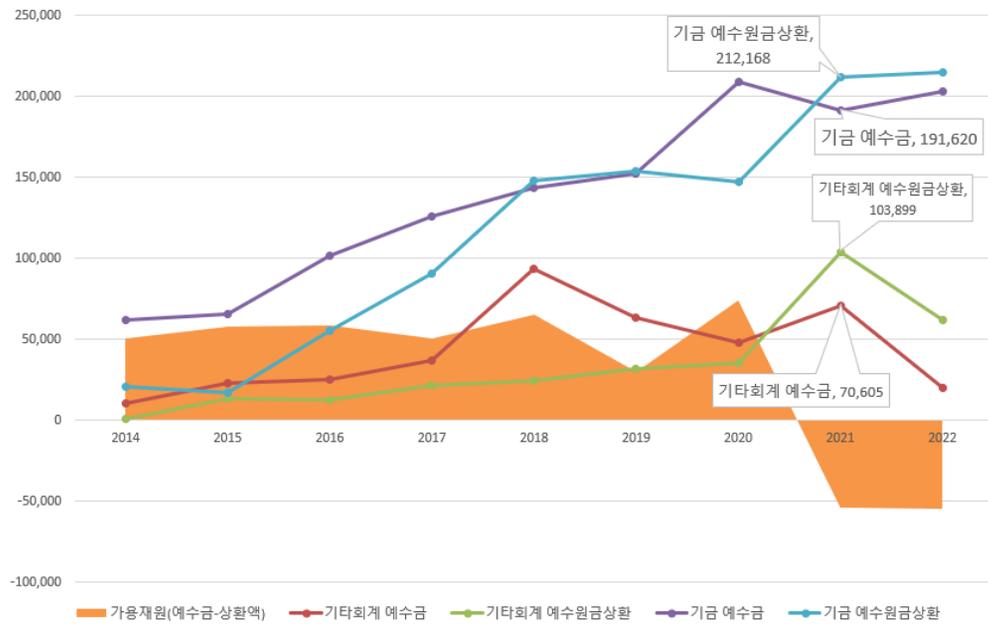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타회계 예수금(A)	10,652	22,708	25,069	37,059	93,751	63,191	47,709	70,605	19,819
기타회계 예수원금상환(B)	1,000	13,370	12,379	21,489	24,246	31,664	35,274	103,899	62,314
기금 예수금(C)	61,969	65,870	101,347	125,760	143,470	152,039	208,875	191,620	203,123
기금 예수원금 상환(D)	21,020	16,965	55,369	90,969	148,070	153,832	147,445	212,168	215,185
가용재원 (예수금-상환) (=(A+C)-(B+D))	50,601	58,243	58,668	50,361	64,905	29,734	73,865	△53,842	△54,557

주: 2017~2021년은 결산, 2022년은 예산 기준 규모임.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기타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수원금상환 현황]

(단위: 억원)



주: 2017~2021년은 결산, 2022년은 예산 기준 규모임.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공자기금을 활용한 정부내부거래로 인해 국채 발행 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정부내부거래 규모가 증가함에도 이에 따른 국가채무 변동분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자기금을 활용한 재정운용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의 공자기금 운영에 따른 변동분을 별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은 공자기금에서 예수되어 자금을 수요하는 회계 및 기금에 활용된다.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지 않고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재원 재배분 역할은 공자기금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공자기금을 활용한 정부내부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최근 3년간 공자기금 총괄계정의 예수금 및 예탁금 잔액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잔액은 2019년 36조 9,316억원, 2020년 44조 3,181억원, 2021년 38조 9,340억원 규모를 유지하였다. 예탁금의 경우 2019년 644조 1,489억원, 2020년 762조 7,255억원, 2021년 863조 583억원으로 급증하였다.

[2019~2021회계연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예수·예탁 잔액]
(단위: 억원)

구분	예수금			예탁금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9	369,316	162,571	206,745	6,441,489	3,347,177	48,314	3,045,998
2020	443,181	175,007	268,175	7,627,255	4,375,177	43,168	3,208,910
2021	389,340	141,713	247,628	8,630,583	5,231,445	42,248	3,356,89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감사원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9년 기금 수입 중 자체 수입 비중은 30%에서 26.5%로 △4.3%p 감소한 반면, 정부내부수입은 18.3%에서 26.2%로 7.9%p 증가하여 회계·기금 간 수입 지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내부거래를 통해 해소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정부내부거래 중에서는 다른 회계나 기금에 재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전입금·전출금과 유상으로 하는 예수금·예탁금 중 전입금(정부내부거래 비중 '07년 20.9% → '19년

11.1%) 전출금('07년 6.9% → '19년 2.2%)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공자기금 등을 활용한 예수금('07년 39.2% → '19년 50.3%) 및 예탁금('07년 56.8% → '19년 60.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한 바 있다.

공자기금 운용 결과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채무의 성질별 구분 항목 중에서 기타 금융성 채무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을 위한 자금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이나 회계에서 공자기금에 예수한 자금을 활용하여 재원이 마련된다. 이러한 채무 중 전자는 적자성 채무로, 후자는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구분은 대응 자산 보유 여부로 구분되는데, 이 중 공자기금 조정분의 경우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금융성 채무에 포함되며, 금융성 채무 분류 시 외환시장 안정용 및 서민 주거 안정용 외의 세부 항목으로써 '기타 금융성 채무'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를 2021회계연도의 경우로 살펴보면 금융성 채무의 총계 373.2조원 중에서 외환시장 안정용 263.8조원과 서민주거안정 등으로 발표되는 금융성 채무 중에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82.2조원을 제하면 기타 금융성 채무는 27.2조원 규모로 계산된다. 기타 금융성 채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양의 값을 기록한 이후 2016년 이후로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가 2021년 다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음의 값을 나타내는 기타 금융성 채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거래를 통하여 일반회계 및 타 기금에 예탁한 부분을 음수로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자기금의 재원 재배분 기능에도 불구하고 2021회계연도에 다시 양의 기타 금융성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계산한 결과 27.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2021년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국가 채무 (GDP대비,%)	적자성채무 ¹⁾				금융성채무			
		총계	일반회 계적자 보전	공적 자금 국채 전환 등	지방 정부 순채무 ¹⁾	총계	외환시 장안정	서민 주거 안정 등	
								국민주 택채권	기타 금융성
2013	489.8 (32.6)	253.1	172.9	80.2	25.7	236.7	171.0	51.3	14.4
2014	533.2 (34.1)	286.4	200.6	85.9	30.1	246.7	185.2	52.8	8.8
2015	591.5 (35.7)	330.8	240.1	90.7	34.9	260.6	198.3	59.3	3.1
2016	626.9 (36.0)	359.9	271.3	88.6	35.0	267.0	209.8	64.0	△6.8
2017	660.2 (36.0)	374.8	289.6	85.1	32.8	285.4	222.3	69.4	△6.3
2018	680.5 (35.9)	379.2	300.4	78.8	28.7	301.3	234.9	73.3	△6.9
2019	723.2 (37.6)	407.6	334.7	72.9	24.2	315.6	247.2	76.4	△8.0
2020 (A)	846.6 (43.8)	512.7	437.5	75.2	27.5	333.9	256.4	78.9	△1.4
2021 (B)	967.2 (47.0)	594.1	523.1	70.9	28.1	373.2	263.8	82.2	27.2
B-A	120.6 (3.2%p)	81.3	85.6	△4.3	0.6	39.3	7.4	3.3	28.5

주: 1) 적자성 채무의 경우 2013~2019년까지 지방정부 순채무 금액이 포함된 수치로 발표되었으나 2020년 이후 적자성 채무 총액에서 지방정부 총액이 제외된 수치로 발표됨. 본 수치는 일관성을 위해 적자성 채무 총액에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수치임.

1. 2021년 지방정부 순채무는 잠정치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기타 금융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에서 외환시장 안정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을 뺀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상 기금의 목적은 여유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 보험, 보증, 융자 사업 등 국가 재정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다. 기타회계뿐만 아니라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중장기 재정사업운용이 목적인 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에 비해,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원금상환액이 증가하여 공자기금의 가용재원이 감소한 것은 기금의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는 공자기금의 예수금 상환계획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²⁾ 앞서 언급한 공자기금의 예탁금 증가 및 국회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서 고용보험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일부 기금의 순자산 감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부분 등을 감안하면, 공자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하는 기타회계 및 기금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신규 예수금이 부족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내부거래의 증가가 갖는 국가채무관리 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부터 공자기금 조정분이 포함된 기타 금융성채무를 서민주거안정채무와 합쳐 ‘서민주거안정 등’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공자기금 조정분에서 외평채 및 국민주택채 규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금융성 채무를 산출하게 되어 외화자산 및 융자금 등 대응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공자기금 운영에 따른 국가채무 변동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³⁾

2) 이런 경우에도 공자기금의 예수원금 상환 스케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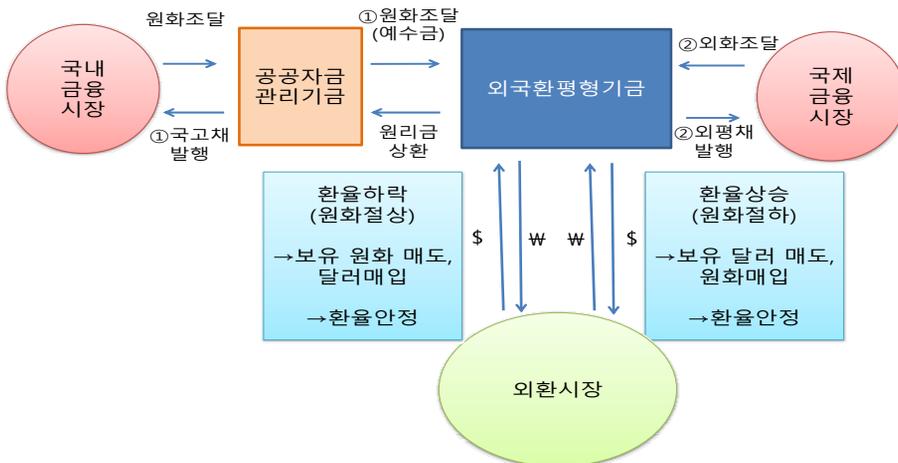
3) 해당 부분 개선 시 공자기금 조정분을 기타 금융성채무로 분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성 채무로 분류된 공자기금의 여유자금, 즉 회계 및 기금의 대응자산이 기금의 재정운용결과 실제 상환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하여 채무대비 대응자산의 부족분은 적자성 채무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기획재정부가 기금의 채무를 일률적으로 기타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고 대응자산의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 구분 시 상환재원보유 여부를 파악하여 분류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타 금융성 채무로 분류된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10개 기금의 채무(2019년 기준 17조 942억원)을 대상으로 대응자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과학기술증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소관 채무 10조 4,564억원의 상환재원에 대한 대응자산 7조 8,217억원이 부족하여 채무로 계상된 금액 모두를 금융성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대비 대응자산의 부족분은 적자성 채무로 집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기금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평채 발행 계획 중장기적 검토 필요 등 분석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1)에 따라 설치되었다.

외평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평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외화를 조달하여 자금을 확보한다. 확보한 외화자금은 한국은행 예치 또는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에 위탁하여 관리한다.2)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 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며, 외환보유액 운용을 포함한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사무처리는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급격한 환율 변동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상승(원화 절하)하여 정부가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개입을 하는 경우 정부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여 환율 하락을 유도한다. 이러한 경우 외평채의 신규 발행을 통한 외화자금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율 하락(원화 절상)시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한다. 이러한 경우 외환보유액이 운용 수익을 초과하여 증가하게 된다.

외환시장의 안정 및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유지 등을 고려하여 발행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로 이루어지며 2025년 기준 26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1~2025년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263.5	270.6	277.2	273.3	269.6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1.8	1.1	1.7	1.7	1.7
	상환	0.5	-	1.1	1.5	1.3
	잔액	10.9	12	12.5	12.7	13
국고채	발행	39.7	32.7	55.8	44.1	31.9
	상환	33.9	26.7	49.8	48.1	35.9
	잔액	252.6	258.6	264.6	260.6	256.6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이 중 외평기금의 국공채 수입³⁾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외평채 발행규모를 2020년과 동일한 15억 달러로 계획하고 이를 1,217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계산하여 1조 8,255억원으로 계획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 집행 결과 약 13억불의 외평채 발행을 통한 국공채 수입은 원화 환산액으로 1조 5,558억 8,300만원(집행률 85.4%)으로 계상되었다.⁴⁾

3)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81-811

4) 국고채 발행 및 상환액은 각각 39조 6,859억원 2,600만원 및 33조 8,930억원 2,600만원으로 집행률 100%를 달성하였다.

[2021회계연도 외평기금 국공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불납 결손액	집행률	
	당초	수정(A)					(D/A)	(D/C)
국공채수입	1,825,500	1,825,500	1,825,500	1,558,883	1,558,883	-	85.4	100.0

자료: 기획재정부

12-1. 외평채 발행 시 시장 상황 적극적 반영 필요

가. 현 황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7일 약 13억불 규모인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5억불과 5년만기 유로화 표시채권 7억유로의 외평채를 신규 발행하였다. 달러 표시 10년물 채권은 미국 국채(10년물) 금리에 25bp의 가산금리를 더한 발행금리로 발행되었으며, 채권 소지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리인 표면금리는 1.75%이다. 유로표시 5년물 채권은 유로화 채권의 지표금리인 유로 미드 스왑(5년물) 금리 대비 13bp의 가산금리로 발행되었으며, 유로화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 이유로 표면금리 0%인 이자지급이 없는 형태로 발행되었다. 마이너스 금리 수준의 외평채 발행으로 액면가액보다 많은 유로(7억 190만유로)를 수취하여 만기시 액면가액(7억 유로)만 상환하게 된다.

또한 2021년 만기 도래한 유로화 표시 채권 3.75억 유로의 원금상환으로 인하여 5,008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다.

[2021년 외평채 발행 규모 및 금리]

구분	달러화 10년물	유로화 5년물
발행규모	5억불	7억 유로
만기	2031. 10. 15.	2026. 10. 15.
발행금리 ¹⁾	미국 국채금리(10년) + 25bp = 1.769%	유로 미드 스왑(5년) ³⁾ + 13bp = Δ0.053%
표면금리 ²⁾ (coupon rate)	1.75%	0%

주: 1) 해당통화 동일만기 지표금리 + 가산금리

2) 채권 소지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리

3) 유로화 채권의 지표금리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정부가 외환보유액 확충 등의 이유로 신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 채무 및 발행 한도 등을 감안하되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고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이 낮은 시점에 외평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발행 비용 절감을 위해 시장의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이루어진 외평채 발행에 대하여 ① 외평채 가산금리⁵⁾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하였으며 10년물 미 국채 금리 상승 등 지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발행금리를 기록하였고 ②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임에도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발행(최종 유효 주문이 발행액의 4배(달러채권) 및 6배(유로채권))되었으며, ③ 아시아정부 최초로 유로화 녹색채권(Green Bond)⁶⁾을 발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기획재정부의 외평채 발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외환시장의 여건 변화 등으로 외환보유액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외평채 발행 비용 구성 요소 등을 고려하여 외평기금의 수지에 대한 전망을 수립하고 중기적 시각에서 발행 규모 및 운영 방식을 검토하여 외평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채무 수준 및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여건이 되는 한 외평채 발행 시 시장의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유지된 저금리 기조가 마무리되고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두드러지는 등 향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 대해 해당 기간의 외평채 발행액을 늘리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가 2021~2025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외평채 발행 계획을 각각 1.7조원으로 2020~2024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 대비 5천억원씩 증가시켰고 상환 계획도 1천억원씩 감소시켰다.⁷⁾ 이는 향후 외환보유액 확충 및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발생 수요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외평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외평채 가산금리는 미 국채 등 지표금리에 추가적으로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리이며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6) 발행 자금이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7) 기획재정부는 해당 상환액 감소는 원화 가치 환산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의한 것으로 실제 상환액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계획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발행	1.8	1.8	1.2	1.2	1.2	X
	상환	-	0.5	-	1.2	1.6	
	잔액	10.1	11.4	12.6	12.6	12.1	
'21~'25	발행	X	1.8	1.1	1.7	1.7	1.7
	상환		0.5	-	1.1	1.5	1.3
	잔액		10.9	12	12.5	12.7	13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금리 비용이 낮았던 2021년도 외평채 발행액은 동일한 규모의 외평채 발행을 계획했던 2020년에 비해 약 1.5억불 감소된 규모로 발행하는 등 시장 상황에 비해 다소 경직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과 동일한 1.8조원(15억불)의 외평채 발행 규모를 계획했던 2020년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10일 약 14.5억불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집행률 96.2%)⁸⁾하였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13억불에 달하는 외평채를 발행하였고, 이는 수납액 기준 1조 5,588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5.4%의 집행률을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환산 환율(=1조 5,588억 8,300만원/13억불)을 계산해보면 당초 계획한 1,217원/달러보다 낮은 1,199원/달러인 것으로 보인다. 즉 발행한도나 환율 등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2021년에 추가적으로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⁹⁾

8) 이중 달러화 10년물의 경우 2021년보다 1.25억불 더 많은 6.25억불(표면금리 1%, 가산금리 미 국채 10년물 대비 50bp), 유로화는 2021년과 동일하게 5년물 7억유로를 발행했고 당시 외평채 상환액은 없었다.

9)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외평채 발행후 수납액 기준 환율(발행연도말)이 외평채 한도 설정시 환율(예산편성시 환율)과 비교해 높아질지 낮아질지 여부를 외평채 발행 당시에 예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외평채 발행에 따른 국공채수입 결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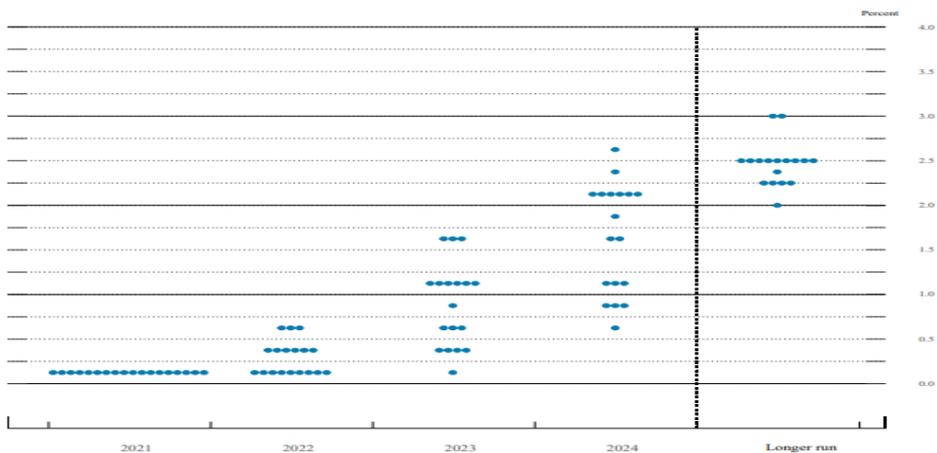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불납 결손액	집행률	
	당초	수정(A)					(D/A)	(D/C)
2018	1,130,000	1,130,000	1,130,000	1,123,000	1,123,000	-	99.4	100.0
2019	1,650,000	1,650,000	1,650,000	1,777,500	1,777,500	-	107.7	100.0
2020	1,785,000	1,785,000	1,785,000	1,716,917	1,716,917	-	96.2	100.0
2021	1,825,500	1,825,500	1,825,500	1,558,883	1,558,883	-	85.4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외평채 발행 비용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 국채 금리를 살펴볼 수 있다. 당시에 국채 금리 상승 등 외평채 발행 비용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장기간 유지되어 온 확장적 통화정책의 기조 변경이 예상되었던 만큼 2021년 9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통화정책운영 기조가 완료되고 점차 금융완화 기조를 축소하는 중앙은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 연준의 2021년 9월 FOMC 회의록에서 제시된 점도표에 따르면 이미 향후 통화정책 금리의 중장기적 상승기조가 예상되었다. 이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와 한국 외평채의 지표금리인 미 국채 금리간 연관성을 생각하면 당시 외평채 발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향후 높아질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2021년 9월 미 연준의 향후 정책금리 전망 점도표]



주: 각 점은 FOMC 회의에 참여한 연준 의원들의 개별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 전망을 나타냄.

자료: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FOMC(2021.09.22)

외평채 발행 비용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외평채 가산금리는 당시 역대 최저 수준(달러화 외평채의 경우 50bp('20년) → 25bp('21년), 유로화 외평채의 경우 35bp('20년) → 13bp('21년))을 경신하여 발행금리(지표금리+가산금리)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¹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아시아 정부 최초로 유로화 녹색채권 발행 등의 이유로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당시 외평채 발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분을 포함하여 외평채 발행액은 국가채무 중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무로 집계¹¹⁾되며, 외평기금의 경우 환율 및 금리 차이 등에 의한 수지적자가 확대되어 왔으므로 외평채 발행의 경우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면밀히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외평기금 운용에 대한 입장으로 외평기금 운용상의 손실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 비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외평채 발행규모를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2021년에는 당초 계획 대비 줄이는 동시에, 향후 금리 및 환율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가능했던 2023년 이후에 늘리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효율적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021년은 한국 정부가 외평채 발행 계획을 전년 대비 축소하였던 것과 달리, 전세계적으로 금리 추가 상승에 앞선 선조달 형태의 차입이 두드러진 해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의 외평채 발행 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홍콩의 경우 2021년 초 총 25억달러의 홍콩정부 그린본드를 발행했다.¹²⁾ 한국의 경우 달러화 10년물 5억불과 유로화 5년물 7억유로의 2가지 채권이 발행(dual tranche)된 것에 비해 홍콩은 5년물 10억불, 10년물 10억불, 30년물 5억불을 발행했다. 특히 홍콩의 경우 채권발행 규모를 늘릴 뿐만 아니라 홍콩정부가 지금까지 발행한 채권 중 가장 장기의 채권인 30년물을 발행하면서 외국환표시 채권의 만기를 늘리는 등 시장의 우호

10) 당시 달러화 외평채 가산금리는 통상적으로 채권 신규 발행시 투자자들이 추가금리(new issue premium)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 잔존만기 외평채의 유통가산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행되었다.

11)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국가 채무는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이기 때문에 적자성 채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 홍콩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외평채 발행액이 홍콩달러 기준으로 2020년 3조 3,926억 8,900만 홍콩 달러에서 2021년 3조 4,038억 7,400만 홍콩달러로 1억 1,185만 홍콩달러 증가했다.

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2021년 말 기준 은행·비은행권을 포함한 민간 기업의 대외 채무는 외화채권 발행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219억달러 증가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외평채 발행의 경우 외평채 발행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발행규모 확대(10억달러 →15억달러) 및 채권금리 축소 등 우호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2021회계연도 외평채 발행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 대비 4배 이상의 시장 수요가 존재함에도 발행규모를 유지하는 등 시장 상황 파악 및 반영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는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한 외평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가채무 및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여건이 되는 한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고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이 낮은 시점에 외평채 발행액을 늘려 외평채 발행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동성이 큰 금융 시장을 감안하여 외평채 발행 시 시장의 상황을 최대한 시의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자 설명회 및 국제금융센터의 외평채 발행 자문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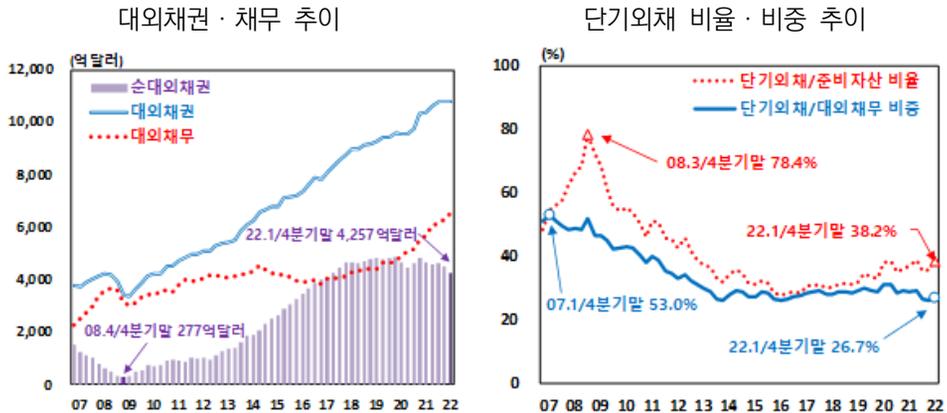
12-2. 중장기적으로 외환평형 기금 규모 적정 수준 유지 필요

가. 현 황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2년 7월말 기준 4,386.1억 달러로 6위 대만(5,490억 달러)과 7위 사우디 아라비아(4,664억달러), 8위 홍콩(4,472억달러)에 이어 세계 9위(2022년 6월말 기준, 4,383억달러¹³⁾)를 기록하고 있다.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대외채무 비율은 2022년 1/4 분기기준 38.2%로, 전분기 대비 2.6%p 상승했다.

[외환보유액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대외채무 비율]

(단위: 억달러, %)



자료: 한국은행(2022.5.)

13) 2022년 6월 대비 2022년 7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3억달러 증가하였고, 이는 기타 통화 외화자산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나. 분석의견

중장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 및 외평채 발행과 외환보유액 유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평행기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평채 발행 등의 재원으로 마련되는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편익 외에 외평채 발행시 지불하는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에 장기적으로는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외평기금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평채 발행 비용과 관련된 금리와 시장 환경은 향후 외평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금리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기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미 국채 10년물 금리(기말 기준)는 2020년 0.91%에서 2022년 5월 10일 기준 2.99%로 상승하였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도 최근 11년만에 처음으로 2022년 7월부터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9월에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의 대외 외화차입여건을 살펴보면 외평채의 미 국채 금리 대비 추가되는 금리인 CDS 프리미엄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2021년 외평채의 성공 발행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녹색채권 발행의 경우 최근 금리 상승 기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SG 관련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고 ESG 관련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액이 감소하는 등 이전보다 ESG 관련 채권 발행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외평채 발행 시 같은 금액의 발행액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대외 외화차입여건]

(단위: 기간 중 평균, bp)

		2020	2021	2022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외평채 CDS 프리미엄 ¹⁾		27	20	35	24	27	30	33	44	48
국내 은행 대외 차입 가산금리 ^{2),3)}	단기 ⁴⁾	21	2	5	6	3	8	3	7	-4
	중장기 ⁵⁾	71	23	33	30	16	73	40	37	33

주: 1) 5년물 기준

2)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산업·수출입 등 8개 국내은행 기준

3)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4) Libor 대비, 만기 1년 이하 차입금액 가중평균

5) Libor 대비, 만기 1년 초과 차입금액 가중평균

자료: Bloomberg, CMA Datavision 등을 인용한 한국은행 자료를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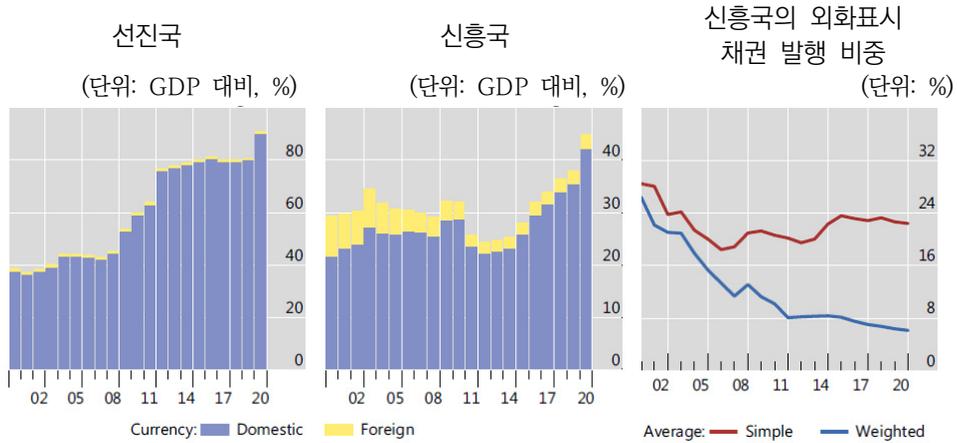
또한 외평채의 기준 금리 역할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 등 준정부채권이 외평채의 벤치마크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외평채의 벤치마크 금리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6월 기준 대외 외화차입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은행의 단기 및 중장기 차입 가산금리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서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였다.¹⁴⁾

전세계적으로도 신흥국의 각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상대적인 외화 채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현지 통화 채권 시장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전세계 신흥국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BIS의 2021년 BIS Quarterly Review(2021.6.)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020년 말 기준 정부 부채 발행액이 급증하였는데, 신흥국 외화표시 채권 발행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¹⁵⁾ 선진국의 경우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발행이 전체 국채 발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흥국의 경우 외화표시 채권 발행 비중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4)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외평채의 성공적인 발행 시 준정부채권 및 민간 차입금리의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21년 외평채 발행 이후 산은채의 가산금리가 감소(10년물 달러화 기준 외평채 발행 전 40bp(2021년 10월 6일)에서 37bp(외평채 발행 익일인 2021년 10월 7일), 36bp(2021년 10월 8일)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외평채 발행의 효과만이 아니라 당시 외화채권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수요 증대에 의한 효과일 수 있다.

15) 해당 BIS 보고서의 경우 한국을 신흥국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다.

[GDP대비 국채발행 규모와 외화표시 채권 발행 비중]



자료: BIS Quarterly Review, 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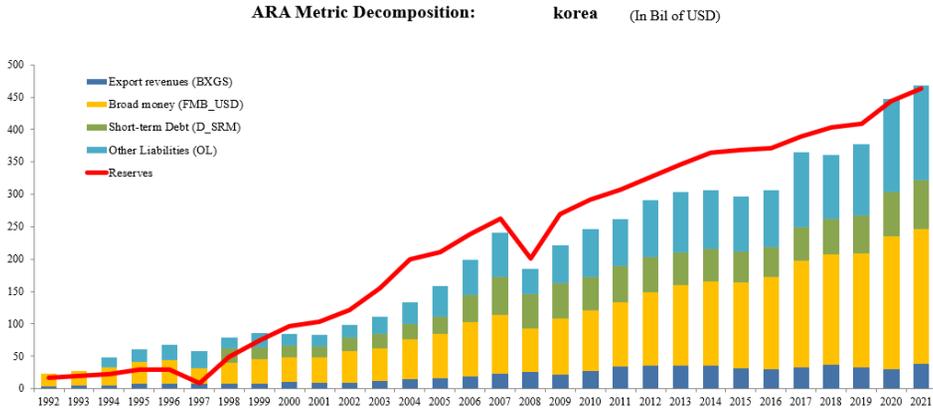
외환보유액 운용으로 인한 외평기금의 수지 현황 또한 국채발행을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이유다. 외평기금 수지는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환율과 금리 차이로 인한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외평기금의 손실은 주로 금리와 환율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금리의 경우 외평기금이 고금리 원화로 조달하여 저금리 달러 자산으로 운용하는 구조이기에 구조적인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과의 금리 차 축소 및 한국투자공사 위탁금 수익률 상승 등으로 외평기금의 재정운용결과 손실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외평기금의 수지악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누적손실금은 발생주의 기준 23조 4,850억 1,287만원에 이른다(2020년 기준 누적 손실액 41조 4,850억 1,287만 5,203원).

이러한 외환보유액 운용 비용 및 외평채 발행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감안하여 외평기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적정 외환보유액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언급되는 IMF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대비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안정 범위를 유지하다가 최근 권고 수준 범위를 하회하는 99%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대비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의 비율 감소는 2021년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상승에 따른 것으로,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지표 구성 요소 중 주로 한국의 통화유동성(Broad money) 증가에 기인한다.¹⁶⁾

16)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IMF 기준은 수출과 통화량, 단기외채, 기타 채무 등이 증가하면 외환

[한국의 IMF 적정 외환보유액 지표 및 구성 요소 비율 현황]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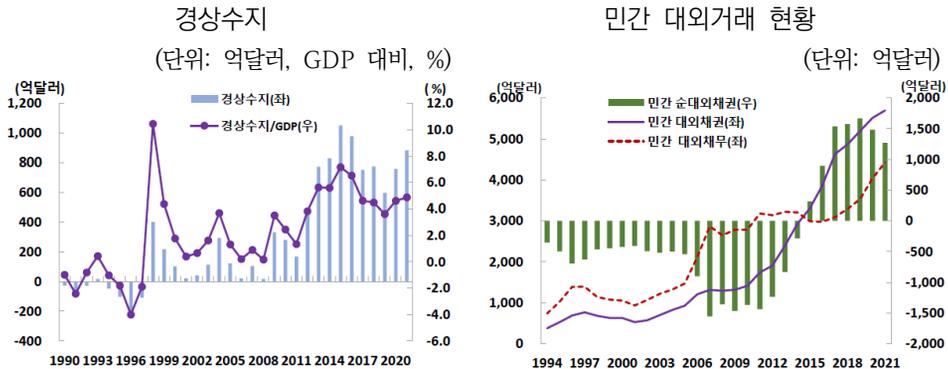


자료: IMF, Assessing Reserve Adequacy, 2022. 4월 25일 업데이트

그러나 대규모 외환보유액 운용을 바탕으로 정책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추구의 정책은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거시경제 변화를 감안하면 일정부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외환보유액 운용은 이를 바탕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대외채무 수준이 높고 채무기간이 단기인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외화유동성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의 외채의존도가 감소하여 2015년 이후 외환부족국가에서 자본을 수출하는 순대외채권국이 되었다. 한국의 대외채무 중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비중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2.4%였던 것에서 현재 2022년 1/4분기 기준 38.2%로 감소하였다.

보유액 필요수준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수출과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과 외환보유액 필요 수준 증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산정 지표 계산식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유동적인 국내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킬 위험을 감안하여 통화량 증가 시 적정 외환보유액 필요 수준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 기준에 따르면 적정 외환보유액 대비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 비율의 경우 최근 저금리 정책에 따른 환율 절하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로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급증한 터키(91.2%)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중국(68.7%)이 더 낮게 나타나서 해당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경상수지 및 민간 대외거래 현황]



자료: 한국은행

대규모 외환보유액 운용에 기반한 외환시장 개입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에 비해 달성 가능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IMF¹⁷⁾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규모 외환보유액 보유에 따른 외환위기 위험 감소 등의 효과는 보유액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적인 외환보유액 보유에 대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 감소의 효과가 감소한다(한계 효과의 감소). 이에 비해 외환보유액 보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 조치의 경우 한국 경제 규모 및 외환 시장 개방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절하 방향의 경우 미국의 환율정책 감시, 절상의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 등의 이유로 그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¹⁸⁾

또한 최근의 원화 평가 절하 및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등을 감안하면 외화유입액 감소 등으로 향후 대규모 외환보유액 운용 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 운용이 필요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무역결제 확대 등 원화 국제화 노력, 외화 자산 및 부채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7) IMF, “Assessing Reserve Adequacy – Specific Proposals”(2015.4).

18)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정책당국의 외환보유액 활용에 따른 인위적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민간의 대외금융자산을 활용한 자동안정화 효과를 통한 외환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대외금융자산 증대는 이자 및 배당수입 등 투자수익을 통한 자본수지 흑자의 형태로 외화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원화환율절하 등 유사시에는 원화 환율 절하에 따른 해외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 증대로 대외 투자 자산 회수가 발생하여 국내 외화자금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원화 국제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정비 등을 통해 한국의 외환시장 국제화를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통화체계에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금융안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흥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신흥국의 리더 역할 수립 등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신흥국의 환율변동성 확대로 개도국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극복 경험 및 경제 수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며,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한 국제화를 추구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외환시장 안정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은 외평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외환보유액 운용이라는 방어적인 정책 외에 원화 국제화 및 신흥국의 리더로서 국제통화질서 내 신흥국의 금융시장 안정 도모 노력 등을 통해 보다 시장친화적이며 근본적인 외환 시장 안정 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외평기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2021년 OECD 잠정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ODA 총 집행액 규모는 2020년 대비 6.1억불 증가한 28.6억불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작년 대비 0.02%p 증가한 0.16%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회원국 중 호주(13위), 덴마크(14위)에 이어 15위에 해당한다.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되고,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증여)와 유상원조(양허성 차관)로 나누어진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는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및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받는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에 따르면 2021년 확정액 기준 총 ODA 규모는 3조 7,543억원으로 양자간 원조는 이중 77.9%인 2조 9,260억원이며, 다자간 원조는 전체 ODA 규모의 22.1%인 8,282억원 규모이다. 무상원조는 양자간 원조 중 57%인 1조 6,678억원, 유상원조는 양자간 원조 중 43%인 1억 2,582억원 규모이다.

ODA의 총괄 및 조정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이다.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기관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의 대개도국 차관¹⁾ 사업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1-301~309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1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예산은 1조 2,581억 9,600만원 중 집행률 97.5%에 해당되는 1조 2,266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다.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지역별로 5개 세부사업(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태평양)으로 구분²⁾되며, 그 외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으로 구분된다.

[2021년 대개도국차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대개도국차관	1,258,196	1,258,196	-	1,258,196	1,226,658	-	31,538	97.5
아시아차관	438,680	230,070	-	230,070	217,682	-	12,388	94.6
아프리카차관	301,583	283,767	-	283,767	275,586	-	8,181	97.1
중동-CIS차관	77,884	18,154	-	18,154	16,111	-	2,043	88.7
중남미차관	47,042	18,067	-	18,067	15,161	-	2,906	83.9
태평양차관	149,271	176,656	-	176,656	173,428	-	3,228	98.2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243,736	531,482	-	531,482	528,690	-	2,792	99.5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대개도국차관 중 아시아차관사업에는 정부의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점협력국 중심 ODA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60~70%의 재원을 아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EDCF 지역별 배분 전략에 따라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아시아차관의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 및 대개도국차관 사업내 집행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당초 예산 책정 시 반영한 정책 목표와 크게 차이나는바, 집행 가능성 및 정부 ODA 사업전략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개도국 차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액

2) 태평양차관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부터 아시아차관(3331-301)으로 통합된다.

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특히 아시아 차관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지속적으로 차관계약 지연, 컨설턴트 및 구매 지연 등에 따른 집행 부진에 시달려왔다. 2020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원국 정부의 섣다운 등 행정절차 및 예산 배정, 컨설턴트 고용 지연 등 기존의 집행부진 상황이 심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서에서 대개도국차관 사업을 포함한 EDCF 사업의 집행률 제고 등 원만한 추진을 위해 EDCF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에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³⁾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신규 사업 승인율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역대 최고집행 실적(97.5%)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021회계연도에 역대 최고 집행실적을 달성하였다고 밝힌 부분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의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수준(97.5%)은 양호하나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의 경우 세부 사업별로 차이가 커서 아시아 차관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49.6%, 중동 - CIS 차관의 경우 20.7%, 중남미 차관의 경우 32.2%에 그친다.

또한 아시아 차관('19년 79.9% → '20년 78.0% → '21년 49.6%), 중동 - CIS 차관('19년 118.2% → '20년 66.6% → '21년 20.7%) 및 중남미 차관('19년 62.6% → '20년 48.9% → '21년 32.2%)의 세부사업에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배정과 집행률 간 괴리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세부사업에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관련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차관 추진, 비대면 업무절차 수립, 현지사무소 권한 확대 및 현지 출장 등을 통한 수원국 밀착 지원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였다고 밝혔다.

[2019~2021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결산 집행률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대개도국 차관	아시아 차관	아프리카 차관	중동-CIS 차관	중남미 차관	태평양 차관	민간· 국제기구 협력차관	
'19 년	당초 (A)	1,141,231	354,532	283,382	76,476	64,573	129,740	232,528	
	계획 현액(B)	1,141,231	289,705	244,290	110,307	46,581	104,359	345,989	
	집행액 (C)	1,051,778	283,299	233,778	90,404	40,420	81,127	322,750	
	집행 률	(C/ A)	92.2	79.9	82.5	118.2	62.6	62.5	138.8
		(C/ B)	92.2	97.8	95.7	82.0	86.8	77.7	93.3
'20 년	당초 (A)	1,184,879	416,394	229,367	76,872	41,244	142,887	278,115	
	계획 현액(B)	984,879	328,632	99,485	56,473	22,138	185,310	292,841	
	집행액 (C)	902,423	324,954	74,279	51,210	20,178	175,349	256,453	
	집행 률	(C/ A)	76.2	78.0	32.4	66.6	48.9	122.7	92.2
		(C/ B)	91.6	98.9	74.7	90.7	91.1	94.6	87.6
'21 년	당초 (A)	1,258,196	438,680	301,583	77,884	47,042	149,271	243,736	
	계획 현액(B)	1,258,196	230,070	283,767	18,154	18,067	176,656	531,482	
	집행액 (C)	1,226,658	217,682	275,586	16,111	15,161	173,428	528,690	
	집행 률	(C/ A)	97.5	49.6	91.4	20.7	32.2	116.2	216.9
		(C/ B)	97.5	94.6	97.1	88.7	83.9	98.2	99.5

주. 1.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액,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액에서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을 의미

2. 2020회계연도 대개도국 차관의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제 2회 추경시 2,000억원 감액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을 통해 아시아지역에 집행한 금액(1,410억 6,500만원)⁴⁾을 포함할 경우 아시아지역에 투입된 재원은 총 3,587억 5천만원으로, 이는 아시아차관의 당초 예산액 대비 81.8%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차관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이 각각 다른 예산을 배정받는 별개의 단위사업이며, 양자원조 대 다자원조 등 지역적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성격의 원조 방식에 따른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차관의 집행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 ODA 사업 전략 및 EDCF의 지역별 배분전략에 따른 지역별 집행률 간 우선순위가 역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양자유상원조 프로그램인 대개도국차관을 포함한 전체 ODA는 핵심 대외정책 전략인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 중심 지원을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⁵⁾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EDCF의 지역별 자원배분전략에 따르면 EDCF측은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집중 투입(60~70% 자원 배분)하되 경험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20~30%), K-디지털, 보건 수요가 많은 중남미(10~20%)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⁶⁾

이에 따라 아시아차관 사업의 경우 2019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간 대개도국 차관 사업 당초 예산액 중 가장 큰 비중(2019년 31.1%, 2020년 35.1%, 2021년 34.9%)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차관의 경우 2019년 26.9%, 2020년 36%, 2021년 17.7%로 집행과정에서 당초 목표 대비 실적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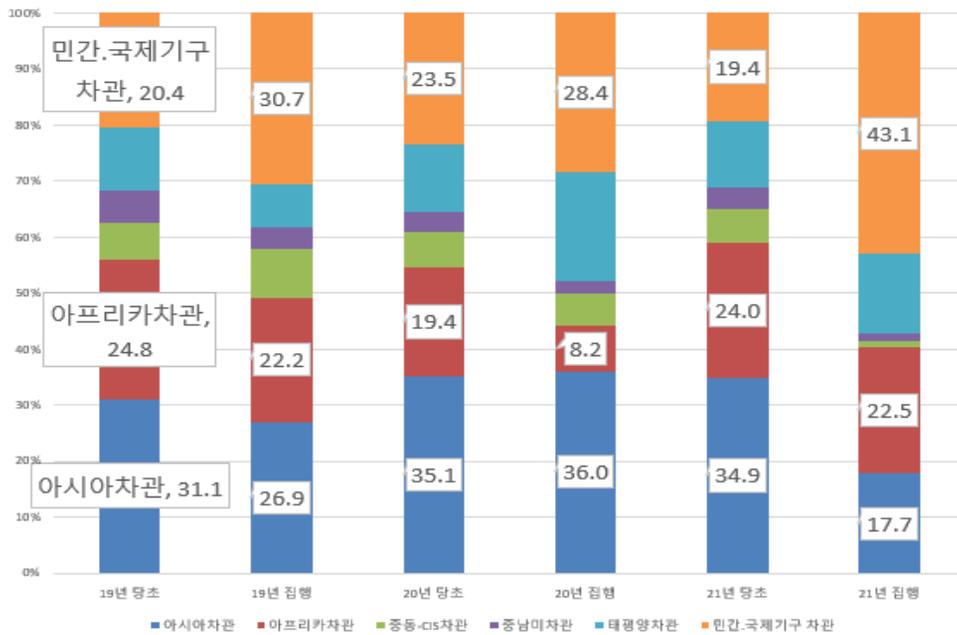
4)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감염병 대응 조직체계 구축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차관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글로벌 공조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당초 계획보다 1,410억 6,500만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5) 정부는 2021년 1월 총 27개국의 3기 ODA 중점협력국(아시아 12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 7개국(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앙아시아 4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 4개국(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양자 ODA 재원의 70%를 중점협력국에 지원하며, 중점협력국별 지원 예산의 70%를 교통, 수자원, 의료 등 우리나라 기업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중점협력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6) 기획재정부, 「Post - 코로나 EDCF 운용 전략 '21~'23 EDCF 중기운용전략」, 2021.1.11.

[2019~2021년도 대개도국차관 세부 사업별 당초 예산 및 집행액 내 비중]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설정되는 계획 현액의 경우에도 대개도국 차관 세부사업 중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남미차관의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3년 연속 당초 예산 대비 감액⁸⁾하여 계획현액이 조정되었다. 대개도국 차관 사업의 경우 수원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구조 상 당초 예산과 계획 현액 및 집행액 간 금액의 차이가 크다.⁹⁾ 그러나 아시아차관의 경우 지역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당초 예산 대비 감액하여 계획 현액이 조정되

7) 이와 관련하여 EDCF 측은 특히 아시아 차관 사업 중 비중이 높은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17년 베트남 정부의 공공부채 관리 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유상 원조시 베트남 정부 자금 투입에 제한을 받게 되어 유상 원조의 신규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 위기, 몽골의 국가채무관리 강화방침 등 수원국의 거버넌스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8) 이에 비해 2021회계연도 ODA 전체 예산은 예비비 및 사업전용 등을 통해 당초 3조 7,101억원에서 442억원이 증액되었다.

9) 지난 3년간 당초 예산 대비 계획 현액에 대한 증감비율(=(계획 현액 - 당초 예산)/당초예산)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아시아차관 29%, 아프리카차관 25.4%, 중동 - CIS 차관 49.2%, 중남미차관 45.3%, 태평양차관 22.5%, 민간 국제기구 협력차관 57.4%에 해당되는 액수가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변경되었다.

었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배정 시 반영되었던 정부 ODA 사업 전략이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원국이 사업추진을 주도하는 차관사업의 특성상 공여국이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요소 산재로 인해 신축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2020~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산 편성 당시에 집행 상황에 대한 예측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아시아차관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회계연도에도 648억 2,700만원이 당초 예산대비 감액되었다는 점, 팬데믹 시기인 2020 및 2021 회계연도에 다른 단위사업 중 태평양 및 민간·국제기구협력 차관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아시아차관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9~2021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결산 당초 예산 대비 계획 현액 증감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대개도국 차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태평양	민간·	
		차관	차관	차관	차관	차관	국제기구 협력차관	
'19 년	당초(A)	1,141,231	354,532	283,382	76,476	64,573	129,740	232,528
	계획현액 (B)	1,141,231	289,705	244,290	110,307	46,581	104,359	345,989
	증감 (B-A)	0	△64,827	△39,092	33,831	△17,992	△25,381	113,461
	증감률 (B-A)/A	0	△18.3	△13.8	44.2	△27.9	△19.6	48.8
'20 년	당초(A)	1,184,879	416,394	229,367	76,872	41,244	142,887	278,115
	계획현액 (B)	984,879	328,632	99,485	56,473	22,138	185,310	292,841
	증감 (B-A)	△200,000	△87,762	△129,882	△20,399	△19,106	42,423	14,726
	증감률 (B-A)/A	△16.9	△21.1	△56.6	△26.5	△46.3	29.7	5.3

구분	대개도국 차관	아시아 차관	아프리카 차관	중동-CIS 차관	중남미 차관	태평양 차관	민간· 국제기구 협력차관	
'21 년	당초(A)	1,258,196	438,680	301,583	77,884	47,042	149,271	243,736
	계획현액 (B)	1,258,196	230,070	283,767	18,154	18,067	176,656	531,482
	증감 (B-A)	0	△208,610	△17,816	△59,730	△28,975	27,385	287,746
	증감률 (B-A)/A	0	△47.6	△5.9	△76.7	△61.6	18.3	118.1
3년 평균 증감 비율	5.6	29.0	25.4	49.2	45.3	22.5	57.4	

- 주. 1. 증감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계획 현액의 크기를 계산한 것이며, 증감 비율의 경우는 증감액을 당초 예산의 크기로 나눈 것
 2. 2020회계연도 대개도국 차관의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제 2회 추경시 2,000억원 감액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기획재정부와 EDCF는 대개도국차관 사업 운영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현지사무소 등을 통해 수원국 정부에 협조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 EDCF의 해외 사무소는 주재원을 포함하여 15개로, 권역별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CIS 국가 순으로 사무소 개설 수가 많음에도 아시아지역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회계연도 기준 EDCF 현지 사무소 및 주재원 현황]

구분	국가	사무소 및 주재원 여부
아시아 (10개국)	베트남	사무소
	필리핀	사무소
	인도네시아	사무소
	미얀마	사무소
	캄보디아	사무소
	스리랑카	사무소
	방글라데시	사무소
	인도	사무소
	몽골	주재원
	라오스	주재원
CIS (1개국)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아프리카 (3개국)	탄자니아	사무소
	가나	사무소
	에티오피아	사무소
중남미 (1개국)	콜롬비아	사무소

자료: 수출입은행

따라서 향후 기획재정부는 탄력적으로 사업이 운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되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액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및 정부 ODA 전략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차관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유류 행정재산 조사 관련 정기감사 실시 등 검토 필요

가. 현 황

국유재산관리 사업¹⁾은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국유재산 관련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공무원 교육, 책자 발간 등 국유재산 정책·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와 국유재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이 사업의 예산현액 8억 5,100만원 중 1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²⁾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유재산관리	807	807	44	-	851	188	50	613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234-302

2)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지급건수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국외여비 미집행 등에 따라 2021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21조제2항3)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⁴⁾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5)에 따라 해당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3) 「국유재산법」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 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제8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무

이에 조달청장은 매년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e-나라재산)을 통해 제출받고 이를 취합·정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제도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 활용도 및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보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현황 및 세부 재산명세 ○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사유 ○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법·절차	<p>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전년도말 기준 유휴행정재산을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e나라재산)에 직접 입력(매년 1월 31일까지)</p> <p>→ 조달청이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에 보고</p>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일부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보고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이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최근 5년(2017~2021) 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2017년에 토지 1,224필지, 건물 12동, 전체 재산가액 2,972억원 규모였고, 2018년에 토지 596필지, 건물 9동, 전체 재산가액 1,794억원, 2019년에 토지 3,570필지, 건물 42동, 전체 재산가액 3,882억원, 2020년에 토지 1,105필지, 건물 39동, 전체 재산가액 3,229억원, 2021년에 토지 492필지, 건물 17동, 전체 재산가액 2,308억원 규모의 유휴 행정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5년(2017~2021) 간 유휴 행정재산 현황]

(단위: 필지, 동, 억원)

구 분	대상	유휴 행정재산 조치 계획							재산가 액
		용도 폐지	활용 계획수 립	관리 전환	상호 점유 해소	소관청 변경	기타 ¹⁾	합 계	
2017	토지	912	223	46	32	-	11	1,224	2,915
	건물	8	2	-	-	-	2	12	57
	소계	920	225	46	32	-	13	1,236	2,972
2018	토지	346	75	112	25	4	34	596	1,778
	건물	4	5	-	-	-	-	9	16
	소계	350	80	112	25	4	34	605	1,794
2019	토지	698	1,819	209	65	733	46	3,570	3,804
	건물	37	3	1	-	-	1	42	78
	소계	735	1,822	210	65	733	47	3,612	3,882
2020	토지	721	29	68	92	190	5	1,105	3,175
	건물	39	-	-	-	-	-	39	54
	소계	760	29	68	92	190	5	1,144	3,229
2021	토지	229	76	4	153	7	23	492	2,301
	건물	15	2	-	-	-	-	17	7
	소계	244	78	4	153	7	23	509	2,308

주: 1) 사용허가, 장부정리, 제한구역 등 포함
자료: 조달청

다만, 이러한 유휴 행정재산 현황은 각 부처에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이 입력한 데이터를 단순 취합한 것이므로, 각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충실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유휴 행정재산 현황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겠으나, 매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미제출한 부처가 상당수 있을 뿐 아니라, 현황을 제출한 부처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충실하게 파악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유휴 행정재산 현황 통계의 신뢰성·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앙관서의 유휴행정재산 자체보고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 21개 부처, 2020년에 30개 부처, 2021년에 48개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하였으며,⁶⁾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해당 미제출

6) 조달청은 각 부처별로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회계·기금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전부 미제출한 기관도 있고 일부 회계·기금 소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미제출한 기관도 있는

기관이 유휴 행정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유휴 행정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인지, 유휴 행정재산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인지 등 부처별 유휴 행정재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해당 미제출기관을 제외하고 제출기관의 유휴 행정재산 현황만을 바탕으로 전체 통계를 작성하였다.

[유휴 행정재산 현황 제출 및 미제출기관]

연도	제출기관	미제출기관
2019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조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산림청,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통계청,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1개 기관
2020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조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대법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용노동부, 통일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특허청, 통계청,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0개 기관
20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통령경호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대법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특허청, 통계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8개 기관

주: 동일한 부처라도 회계·기금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 제출여부가 상이한 경우 제출기관과 미제출기관에 각각 포함될 수 있음

자료: 조달청, 각 연도 「중앙관서의 유휴행정재산 자체보고 결과 보고」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일부 부처들의 유휴 행정재산 현황 제출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에 유휴 행정재산 자체보고 누락 등에 관한 합동감사 실시를 건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인력부족 등으로 합동감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의 유휴 행정재산 보고제도 운영 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 주요내용]

연도	문제점	건의사항
2019	<p>(보고사항 미흡)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가 법적 의무사항이나, 미보고(28개 기관)·기한 미준수·보고내용 부실 등으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재산으로 보고될 경우 중앙관서 및 지자체등은 관리재산을 총괄청에 빼앗긴다는 인식이 있어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경향 <p>(국유재산업무 해태) 국유재산업무에 대한 조직의 무관심 등으로 일선 재산관리관(특히, 지자체)이 국유재산업무를 경시하는 풍토</p>	<p>(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강화) 자체보고 누락 등 국유재산업무 해태 기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 실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관리관들의 소극적인 업무형태로는 효율적인 행정재산의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총괄기관의 적극적인 감사 등을 통해 인식변화 도모 필요
2020 / 2021	<p>(외부감사 부담) 보고된 유휴행정재산은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관서는 재산 관리전환(전용사용권 상실)의 적정성 감사, 지적에 부담을 가져 유휴행정재산 보고 꺼려</p> <p>(보고 미흡) 유휴행정재산 보고는 법령상 의무이나, 여러 차례 독촉에도 다수기관이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보고 내용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대상기관은 유휴행정재산임에도 단순히 보유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 유휴행정재산 보고에 소극적인 경향 <p>(국유재산 관리 소홀) 재산관리관은 업무과다 및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국유재산 관리를 현행 유지(무단점유 방지 등)하는 경향</p>	<p>(감사 정례화) 총괄청, 조달청, 캠프 합동 3년 주기 감사 정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등 처리기준, 기관경고 등 세부 제재조항 제정 필요 - 국유재산 면적·필지 상위, 10년간 유휴행정재산 적은 기관 우선

자료: 조달청, 각 연도 「중앙관서의 유휴행정재산 자체보고 결과 보고」

유휴 행정재산 현황보고는 「국유재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임에도 조달청에 따르면 일부 부처가 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유재산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 현황 감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유휴 행정재산 현황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유휴 행정재산 현황보고 제도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의 현황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 제9조7)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계가 부정확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용도폐지 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및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수립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보고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하 생략)

가. 현 황

재정사업 심층평가¹⁾ 사업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9억 7,500만원 중 7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1,609	1,609	143	0	1,752	1,223	183	346
재정사업 심층평가	861	861	114	0	975	784	78	113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i)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712-301의 내역사업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ii)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iii)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iv)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법령에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정의, 유형, 대상사업 범위 및 선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심층평가는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로 유형이 구분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유형]

심층평가 유형	평가 목적
개별사업 심층평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도출
사업군 심층평가	정책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부처간 역할분담 등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
핵심사업평가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대상으로 중기 시계 하에 집행현황 점검·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 주기적인 과정관리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제도보완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도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나. 분석의견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보고서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 향상 및 국회 예·결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 및 국회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포함한 각종 재정사업평가의 결과 공개 및 국회 제출여부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기금운용·존치평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결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만 공개하고 있고³⁾ 국회 제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제3항6)에 따라 기획재

3)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28건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중 4건만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머지 24건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4) 다만, 국회에서 평가결과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고 있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장관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는 평가결과의 국회 제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달리 심층평가는 평가결과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개여부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각종 재정사업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제출여부]

평가제도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제출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체로 미공개(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 국회 미제출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공개, 국회 미제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 국회 제출
기금운용·존치평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 국회 제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서 각각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회가 예산안 및 결산심의 등에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강화하고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열린재정'에 공개하는 것은 재정사업의 성과 및 운영실태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0조7)에 심층평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심층평가 결과의 주요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되, 공개 시 원활한 재정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심층평가 결과가 관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일부만 공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반

7)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0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심층평가 관리기관은 심층평가 결과의 주요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한다.

② 심층평가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을 대외에 공개할 경우 향후 원활한 재정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이 심층평가 관리기관 또는 수행기관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관리기관이나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하기 어렵다.

특히, 2021년 12월에 「국가재정법」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⁸⁾가 신설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나,⁹⁾ 2022년 7월 현재에도 심층평가 결과보고서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¹⁰⁾

따라서 국회에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심층평가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층평가 결과를 ‘열린재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선정 및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는 심층평가 과제선정 및 착수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현황을 보면, 2017년 8건, 2018년 6건, 2019년 6건, 2020년 8건, 2021년 6건으로 매년 6~8건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제별로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4~7개월이 소요된다.

8) 「국가재정법」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9) 2022년 3월 25일부터 해당 개정(신설)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10)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한 공개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 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현황]

연도	평가대상(사업/정책/회계 등)	평가 수행기관	평가기간
2017	저출산극복지원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1.~'17.6.
	국가공간정보정책사업군	한국정보화진흥원	'17.5.~'17.12.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12.~'18.6.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군	명지대	'17.12.~'18.6.
	농업인력 양성 사업군	농정연구센터	'17.12.~'18.6.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군	한국재정학회	'17.12.~'18.6.
	고용장려금체계개편(청년일자리중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12.~'18.6.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12.~'18.6.
2018	미세먼지 저감대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8.~'18.12.
	BK21플러스	한국재정학회	'18.9.~'18.12.
	모태펀드	금융연구원	'18.9.~'18.12.
	재직자 교육훈련	숙명여대	'18.9.~'18.12.
	R&D출연연운영효율화	한국정책학회	'18.9.~'18.12.
	창업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8.9.~'18.12.
2019	외국인 체류관리사업군	한국노동연구원	'19.6.~'19.11.
	산학연협력사업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6.~'19.11.
	다자개발협력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6.~'19.11.
	실업자재취업 사업군	서울대	'19.6.~'19.11.
	아동돌봄사업군	보건사회연구원	'19.6.~'19.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한국재정학회	'19.6.~'19.11.
2020	국립대재정지원사업군	충북대	'20.3.~'20.9.
	노인의료지원사업군	한림대	'20.3.~'20.10.
	전자정부 지원체계	서울대	'20.3.~'20.12.
	스마트시티	국토연	'20.3.~'20.8.
	고용보험기금 사업군	건국대	'20.12.~'21.6.
	농어업정책보험 사업군	KDI	'20.12.~'21.5.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군	서울대	'20.12.~'21.5.
	정책펀드 사업군	자본시장연구원	'20.12.~'21.6.
2021	어촌뉴딜300	한국정책학회	'21.11.~'22.4.
	창업지원사업군	경상대	'21.11.~'22.4.
	직접일자리 사업군	건국대	'21.11.~'22.4.
	ICT기금 사업군	건국대	'21.11.~'22.4.
	국가연구시설장비 사업군	카이스트	'21.11.~'22.4.
	군간부주거지원 사업군	국토연구원	'21.11.~'22.4.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매년 8월 전에는 평가가 완료되어야 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이전에 평가가 종료되어야 한다.¹¹⁾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심층평가 신규 과제의 절반 이상을 6월 이후 개시하여 연도 말이나 다음연도까지 진행하고 있어 심층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과제 8건 중 1건이 같은 해 12월, 6건이 2018년 6월에 종료되었고, 2018년 과제 6건 모두 같은 해 12월에 완료되었으며, 2019년 과제 6건이 전부 같은 해 11월에 종료되고, 2020년 과제 8건 중 1건이 2020년 12월에, 4건은 2021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2021년 과제 6건은 모두 2021년 12월에 개시하여 2022년 4월에 종료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년도 과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연도 신규 과제를 선정 및 착수함에 따라 연말이나 다음연도에 평가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규과제를 매년 6월 이후 착수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수행기관에 교부한 출연금의 이월이 반복되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제2항¹²⁾에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대체로 하반기 선정과제수가 많은 상황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다른 재정사업 평가는 매년 특정 시기에 평가가 완료되어 평가결과를 예산안 요구 시 반영하거나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신규과제의 착수 및 완료시기가 매

11)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심층평가의 목적을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등으로 규정하였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3조(심층평가의 목적)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대상사업 선정)

② 기획재정부장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경우 선정 시기에 관계없이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년 불규칙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다른 재정사업 평가제도와 비교할 때 평가결과 환류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종 재정사업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환류절차]

평가제도	평가기관	평가완료시기 및 평가결과 환류
재정사업 자율평가	각 부처 (자체평가 위원회)	- 소관 부처는 매년 3월까지 평가를 완료 -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시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평가단)	- 매년 연장평가 결과보고서를 예산안 제출 시(매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안 심의에 활용
기금평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 평가단)	- 기금존치·운용평가 결과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결산 및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활용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수행기관 공모선정)	- 평가완료시기가 매년 상이 - 평가결과가 도출되면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 송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는 심층평가 과제선정 및 착수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상생소비지원금 사업¹⁾은 만 19세 이상 2021년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과 11월, 월간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2021년에 한시적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액 7,000억원 중 6,97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상생소비지원금	-	700,000	-	-	700,000	697,131	2,868	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캐시백 지원금 산정 시 해외 사용액, 백화점·대형마트·복합 쇼핑몰·대형 종합 온라인몰·홈쇼핑·면세점·대형 전자전문 판매점·유흥업종·사행업종 사용액, 신규 차량구입비와 비소비성지출(연회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등은 제외되며, 이에 따라 카드의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같은 해 10월과 11월 월간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비교할 때, 각각 해외 사용액, 백화점·대형마트·복합 쇼핑몰·대형 종합 온라인몰·홈쇼핑·면세점·대형 전자전문 판매점·유흥업종·사행업종 사용액 등이 제외된 카드사용액만을 비교한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6-301

[카드 캐시백 환급 사례]

구 분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기준점(A)	2021년 10월 카드사용액(B)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액
소비자	백화점·대형마트·복합 쇼핑몰·대형 종합 온라 인몰·홈쇼핑·면세점·대 형 전자전문 판매점·유 형업종·사행업종 사용액 과 신규차량구입비, 비소 비성지출(연회비, 제세· 공과금, 보험료 등) 등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 100 만원	백화점·대형마트·복합 쇼핑몰·대형 종합 온라 인몰·홈쇼핑·면세점·대 형 전자전문 판매점·유 형업종·사행업종 사용액 과 신규차량구입비, 비소 비성지출(연회비, 제세· 공과금, 보험료 등) 등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 153 만원	$\{(B)-1.03(A)\} * 10\%$ $=(153-103) * 10\%$ $=5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인당 캐시백 지원한도는 월 10만원이며,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²⁾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고 캐시백의 사용처는 제한이 없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급한 캐시백은 총 8,054억 1,100만원이며, 이 중 0.99%에 해당하는 79억 3,000만원은 과지급 또는 오지급에 따라 반환되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캐시백 지급 실적]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10월분(11월 15일 지급)	11월분(12월 15일 지급)	합계
지급액	406,700	398,711	805,411
지급인원	8,537,559	8,569,100	17,106,659

주: 월별 지급인원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총 9개 카드사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캐시백 반환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반환금액	지급액 대비 비율
캐시백 반환	7,930	0.99

주: 월별 지급인원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향후 유사한 소비 활성화 사업을 설계할 때 이 사업의 사례 및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21년 2분기 개인 카드사용액 대비 2021년 10월과 11월의 개인 카드사용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신용카드사용액을 보면, 20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55조 7,989억원이고 2021년 10월과 11월의 월평균 사용액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조 7,954억원(6.8%) 증가한 59조 5,943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2분기 월평균 및 10월·11월 개인신용카드 지출액 비교]

(단위: 억원, %)

연도	2분기 월평균(A)	10월	11월	10·11월 평균(B)	증감(B-A)	증감률 {(B-A)/A}
2018	484,924	517,394	503,413	510,404	25,480	5.3
2019	515,314	539,977	537,946	538,962	23,648	4.6
2020	506,963	527,436	530,670	529,053	22,090	4.4
2021	557,989	592,831	599,054	595,943	37,954	6.8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4년 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같은 해 10월·11월 평균 카드사용액 증가율은 2018년 5.3%, 2019년 4.6%, 2020년 4.4%, 2021년 6.8%로 2021년의 증가율이 다른 해보다 높았으며, 이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3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증가율을 보면, 2018년 2.5%, 2019년 1.6%, 2020년 3.4%, 2021년 1.8%로, 2021년에는 상대적으로 2분기 대비 3분기 카드사용액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과 비교할 때 2021년 2분기 카드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반면, 2021년 3분기 카드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에 그쳐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캐시백 지급과 관계없는 3분기 카드사용을 일부 구축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4년 2분기 월평균 및 3분기 월평균 개인신용카드 지출액 비교]

(단위: 억원, %)

연 도	2분기 월평균(A)	7월	8월	9월	3분기 월평균(B)	증감(B-A)	증감률 {(B-A)/A}
2018	484,924	514,393	493,005	484,375	497,258	12,334	2.5
2019	515,314	537,082	524,656	508,741	523,493	8,179	1.6
2020	506,963	531,242	517,852	523,550	524,215	17,252	3.4
2021	557,989	581,673	558,913	563,442	568,009	10,020	1.8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과 2021년 개인신용카드 지출액 비교]

(단위: 억원, %)

연 도	2분기 월평균	3분기 월평균	10·11월 평균	7~11월 평균
2020(A)	506,963	524,215	529,053	526,150
2021(B)	557,989	568,009	595,943	579,183
증감(B-A)	51,026	43,794	66,890	53,033
증감률{(B-A)/A}	10.1	8.4	12.6	10.1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1년 2분기와 10월·11월 개인신용카드 지출액을 소비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인 '음식점'의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10월·11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4,477억원(10.3%) 증가하였으나, '슈퍼마켓' 카드사용액 증가율은 0.3%에 머물렀으며,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백화점'과 '공과금' 카드사용액도 각각 3,344억원(23.6%), 1,402억원(2.5%) 증가하여 2021년 2분기 대비 10월·11월 전체 개인신용카드 사용증가액에는 백화점과 공과금 등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에서의 증가금액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2분기 월평균 및 10월·11월 개인신용카드 지출액 소비유형별 증감 비교]
(단위: 억원, %)

소비유형	2분기 월평균(A)	10월	11월	10·11월 평균(B)	증감(B-A)	증감률 {(B-A)/A}
백화점	14,164	17,208	17,808	17,508	3,344	23.6
슈퍼마켓	17,586	17,636	17,628	17,632	46	0.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113,795	124,987	129,890	127,439	13,644	12.0
음식점	43,651	47,665	48,591	48,128	4,477	10.3
연료	25,853	29,280	30,075	29,678	3,825	14.8
공과금	55,244	57,885	55,406	56,646	1,402	2.5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이와 같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캐시백 지급대상기간인 2021년 10월과 11월에 개인카드사용액이 2분기보다 증가하였고 증가율도 최근 4년과 비교할 때 높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개인카드사용 촉진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21년 2분기 대비 10월과 11월 개인카드사용 증가액에 백화점 등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이 아닌 소비영역이 포함되어 있고, 캐시백 지급과 관계없는 3분기 개인카드사용 증가율이 예년보다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생소비지원금 사업효과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2022년 8월까지 용역을 수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1년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효과 분석 연구용역 추진현황]

연구용역 과제명	예산	연구용역기간	수행기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효과 분석	5,000만원	2021.12.~2022.8.	한국개발연구원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약 8,000억원의 예산³⁾을 투입하였고 카드 캐시백 지급을 통한 카드사용 촉진이라는 사업방식도 새롭게 추진한 것인 만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하여 사업 효과에 관한 다각적·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향후 유사한 소비 활성화 사업을 설계할 때 이 사업의 사례 및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초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은 7천억원이었으나, 민간 신용카드사의 캐시백 지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정부는 2022년도 예비비를 1천억원 이상 투입하여 캐시백 지급액을 보전할 계획이므로,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약 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가. 현 황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1항1)은 그 성격상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²⁾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³⁾,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은 인건비(110목) 중 현역병사보급 및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목) 중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용역비 제외), 여비(220목), 특수활동비(230목), 업무추진비(240목) 중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직무수행경비(250목), 보전금(310목), 민간이전(320목) 중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목)으로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등으로 제한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과목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격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지출결의를 하면 국고금이 이체되는 절차

3)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키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목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관의 지출결의 등 일반적인 국고금 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도
인건비(110)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시험연구비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여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기타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자료: 기획재정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인쇄물 발간시기가 비슷하고 목적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건으로 보아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고,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하는 한편, 인쇄물 납품 후에는 대금청구를 독려하여 납품 시기와 대금지급일 간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서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으로 인쇄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건명으로 여러 건을 같은 날짜에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였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관서운영경비로 2021년 9월 13일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등'을 건명으로 하는 인쇄대금 지급 건을 13건으로 나눠 총 5,926만원을 특정 인쇄업체에 집행하였고, 2021년 11월 10일에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등'이라는 건명으로 인쇄대금 지급을 19건으로 분할하여 총 8,595만원을 같은 인쇄업체에 지급하는 등 전체 18건의 인쇄대금 지급 건에서 같은 날 특정업체에 인쇄대금을 분할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021년도 관서운영경비(인쇄비) 동일 건 분할집행 사례]

(단위: 천원)

관서	건명	총 집행액	지급일	업체명
예산실 (일반 수용비)	인쇄대금 지급(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등 13건)	59,258	'21.9.13	OO기획
	인쇄대금 지급(2022년 선심 및 1차 심의자료 등 15건)	66,193	'21.9.14	OO기획
	인쇄대금 지급(2022년 2차 심의자료 등 7건)	27,641	'21.9.15	OO기획
	인쇄대금 지급(C2B포럼 및 총사업비 첨부서류 등 3건)	9,458	'21.9.15	OO기획
	인쇄대금 지급(2022년 예산안 첨부서류 등 4건)	15,955	'21.9.15	△△일지사
	인쇄대금 지급(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외 18건)	85,953	'21.11.10	OO기획
	인쇄대금 지급(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8건)	39,235	'21.11.10	OO기획
	인쇄대금 지급(22년 성인지 예산서 외 3건)	18,839	'21.11.10	OO기획
	인쇄대금 지급(22년 예산심의자료 외 14건)	64,902	'21.11.11	OO기획
	인쇄대금 지급(2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외 11건)	54,190	'21.11.12	OO기획
	인쇄대금 지급(전시예산 외 2건)	13,002	'21.12.15	OO기획
	인쇄대금 지급(나라살림 개요 외 2건)	11,831	'21.12.16	OO기획
	인쇄대금 지급(국회 예결위 대응 등 외 12건)	56,583	'21.12.17	OO기획
	인쇄대금 지급(정부안 설명자료 등 외 14건)	62,314	'21.12.20	OO기획
	인쇄대금 지급(재정통계 등 2건)	5,841	'21.12.30	OO기획
	인쇄대금 지급(예결위 참고자료 외 3건)	14,275	'21.12.30	OO기획
	인쇄대금 지급(예산 인포그래피 등 4건)	17,292	'21.12.30	OO기획
	인쇄대금 지급(예산안 주요내용 등 6건)	27,246	'21.12.30	OO기획

자료: 2021년도 기획재정부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일 건명으로 묶인 18건(세부 계약 건 포함 시 151건)의 인쇄대금 지급 건 중 17건(세부 계약 건 포함 시 147건)이 OO기획이라는 특정 인쇄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이었으며, 인쇄대금 지급일을 보면, 인쇄물을 납품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등 13건의 인쇄물 납품시기가 2021년 7월이었으나 대금 지급일은 2021년 9월 13일이었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책자의 납품시기가 2021년 11월이었음에도 인쇄대금은 2021년 11월 또는 12월에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인쇄물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고 각각 다른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같은 업체에 인쇄대금 결제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인쇄 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금 지급일과 관련해서는 인쇄업체에서 납품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대금청구를 함에 따라 납품일자와 대금지급일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등 일부 건의 세부 인쇄내역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예산안 제출에 직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인쇄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발간하는 인쇄물은 여러 종류의 세부내역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하나의 인쇄 건으로 보아 경쟁입찰 및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또한 2021년에 예산실의 모든 인쇄물 계약 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소수의 건을 제외한 인쇄물 계약을 모두 특정업체와 계약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⁵⁾에 명시된 일반경쟁입찰 원칙⁶⁾에 비추어 바람

4)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2021년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OO기획에 지급한 인쇄대금이 6억 3,000 만원을 넘는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6)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국가의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집행될 수 있고 정부와 특정 업체 간 유착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직하지 않다. 아울러, 인쇄업체의 대금청구가 늦었다고 해도 인쇄물 납품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에 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관행화되는 경우에는 민간업체의 자금유통이 경색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민간업체의 신뢰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인쇄물 계약 및 대금 집행과 관련하여, 인쇄물 발간시기가 비슷하고 발간목적이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건으로 보아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고,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하는 한편,⁷⁾ 인쇄물 납품 후에는 대금청구를 독려하여 납품시기와 대금지급일 간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관한 법률」은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7) 예를 들어 연 초에 인쇄비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인쇄업체를 선정할 후 해당 업체에 수시로 인쇄용역을 의뢰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939억 5,700만원이며, 5조 4,430억 9,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3.6%인 7,379억 8,700만원을 수납하고 4조 1,570억 6,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5,480억 4,8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93,957	693,957	693,957	5,443,098	737,987	4,157,064	5,480	13.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2021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8,905억 2,200만원이며, 이 중 95.2%인 1조 8,006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898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867,962	1,867,962	1,890,522	1,800,663	-	89,859	95.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한편, 국세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국세청의 자산은 29조 314억 9,000만원, 부채는 24조 4,342억 2,000만원으로 순자산은 4조 5,972억 7,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1조 7,049억 8,9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165억 1,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조 2,092억 7,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조 1,620억 9,800만원(12.2%)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국세 2조 2,005억 93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증가 및 장기미수국세 8,240억 2,300만원 증가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2조 9,367억 3,300만원, 장기차입부채 603억 9,400만원, 장기충당부채 1조 4,370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조 656억 4,300만원(14.3%)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 선수수익 2조 3,466억 8,100만원 증가, 미지급국세 4,688억 5,5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증가, 소송충당부채 2,414억 8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9,031,490	25,869,392	3,162,098	12.2
Ⅰ. 유동자산	21,704,989	19,613,465	2,091,524	10.7
Ⅱ. 일반유형자산	3,016,513	2,792,875	223,638	8.0
Ⅲ. 무형자산	100,719	77,373	23,346	30.2
Ⅳ. 기타비유동자산	4,209,270	3,385,678	823,592	24.3
부 채	24,434,220	21,368,577	3,065,643	14.3
Ⅰ. 유동부채	22,936,733	20,123,962	2,812,771	14.0
Ⅱ. 장기차입부채	60,394	48,929	11,465	23.4
Ⅲ. 장기충당부채	1,437,093	1,195,685	241,408	20.2
순 자 산	4,597,270	4,500,815	96,455	2.1
Ⅰ. 기본순자산	1,843,246	1,843,247	△1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301,710	1,570,158	△268,448	△17.1
Ⅲ. 순자산 조정	1,452,313	1,087,409	364,904	33.6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6,518억 1,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567억 9,7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9,864억 9,600만원, 비배분비용 4,881억 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2억 7,600만원, 비배분수익 783억 1,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18억 2,800만원(1.2%) 증가한 2조 6,518억 1,000만원이며, 이는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2,097억 3,800만원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2,533억 5,700만원 증가와 대손상각비 2,106억 1,400만원 감소에 따른 비배분비용 2,131억 4,900만원 감소 및 기타수익 475억 6,000만원 증가에 따른 비배분수익 476억 6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탈세대응강화(1,109억 2,000만원), 과세기반확충(567억 1,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2,798억 2,300만원과 복리후생비 2,249억 5,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4,872억 6,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55,521	216,295	39,226	18.1
가. 프로그램 총원가	256,797	217,441	39,356	18.1
나. 프로그램 수익	1,276	1,146	130	11.3
II. 관리운영비	1,986,496	1,733,139	253,357	14.6
III. 비배분비용	488,104	701,253	△213,149	△30.4
IV. 비배분수익	78,311	30,705	47,606	155.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651,810	2,619,982	31,828	1.2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651,810	2,619,982	31,828	1.2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4조 5,008억 1,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조 5,972억 7,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64억 5,500만원(2.1%)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318억 2,8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970억 7,400만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544억 1,5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3조 1,300억 1,7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7,466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 재평가이익 3,649억 2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국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4,500,815	4,429,874	70,941	1.6
II. 재정운영결과	2,651,810	2,619,982	31,828	1.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383,361	2,480,435	△97,074	△3.9
IV. 조정항목	364,903	210,488	154,415	73.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597,270	4,500,815	96,455	2.1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②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③역외탈세대응활동, ④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등이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세 관련 비주거용 건물(꼬마빌딩)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 20%를 감액하였음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증액하여 5억원(51억원→46억원)이 감액되었고,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이 20개 기관에 불과하여 2억원(17억원→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 및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외 출장소요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2억원(67억원→65억원)과 1억원(21억원→20억원)이 감액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소송수행비용, ②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등이 있다.

소송수행비용 사업은 고액중요소송 승소율 제고 방안으로 대리인 선임건수를 확대하고 우수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5억원(64억원→69억원) 증액되었고,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사업**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원(998억원→1,003억원)이 증액되었다.

국세청은 ①성실신고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 ②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③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와 선전납세문화 조성, ④공정·효율적 세정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⑤책임운영을 통한 편하고 전문적인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세청은 담세자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대상 기준 또는 대상 선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등 일부 포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포상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위탁을 통한 체납액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 방식 및 위탁수수료 체계 개선 등 징수위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일원화 방안 마련 필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관련 가격공시제도는 기초연금대상자 등의 판단,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액 산정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재산세·취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조세 부과기준 등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 (시·군·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역시 과거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방식, 국세청의 기준 시가 방식 등 가격산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과표의 정확성·형평성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표준부동산가격 공시 -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및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무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였다.¹⁾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집합부동산가격을 평가·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복하여 평가·고시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산정의 주무부처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1-1.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일원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를 위해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바닥면적의 합이 3,000㎡이거나 100호 이상)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동산 전문기관을 통한 거래시세 조사를 통해 시세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 부과 전 저평가된 소규모 상가건물 등의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 사업³⁾은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 거래시세 조사를 통해 시세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 24억 6,900만원 중 2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⁴⁾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형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 46억 2,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산정 관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형집단 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2,469	2,469	-	-	2,469	2,429	-	40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4,622	4,622	-	-	4,622	4,622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3) 코드: 일반회계 1133-301

4) 코드: 일반회계 1133-303

한편, 행정안전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복지급여 등 17개 법령상 국가사무에 대해 전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는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과표양성 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1,296	1,296	-	-	1,296	1,155	-	14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기준인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의 과세기준인 건물 시가표준액은 적용세목 및 계산방식·기준 등에 차이가 있다. 기준시가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에 적용되며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수도권·5대 광역시 등의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로 하고,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곱하여 ㎡당 금액을 계산한 후 계산된 금액에 평가대상건물의 면적을 곱해서 계산한다.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산정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표준가격기준액을 산정하고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 및 가감산율을 감안하여 정하며, 오피스텔 외 건축물은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코드: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1337-300

[오피스텔 외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비교]

구 분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외 건축물)
주관부서	국세청	행정안전부
적용세목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본산식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m ² 당 금액 * m ²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 특성에 따른 조정률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 가율 × 개면적 × 가감산율
건물신축가격기 준액	m ² 당 780,000원	m ² 당 780,000원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 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 시하는 금액
구조지수	- 적용지수: 55~135 - 구조개수: 11개	- 적용지수: 0.30~1.35 - 구조개수: 13개
용도지수	- 적용지수: 50~140(원자력발전 시설은 300) - 용도번호: 대분류 4개, 총 61개	- 적용지수: 0.30~1.35(원자력 발전시설은 3.30) - 용도번호: 대분류 3개, 총 57개
위치지수	- 건물부속토지가격 범위: 2만원 미만~8,000만원 이상 - 적용지수: 45단계, 75~182	- 건물부속토지가격 범위: 1만원 이하~8,000만원 초과 - 적용지수: 0.80~1.69

주: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상 지수 100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기준상 1과 동일

자료: 이태리·이윤상·오민중·고영화,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II: 비주거용 부동산
부문 시행방안을 중심으로」(국토연구원) p.41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국세청 건물 기준시
가 계산방법 고시」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 및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한 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형성하여 가격수준을 안정화하고 부동산에 기반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과세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담금 등의 부과, 과세 등 행정업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보상 등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며 부동산의 실제가격과도 연계되므로 부동산 보유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 역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토지·공동주택 등과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거와 비주거 혼합 빌딩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형성요인도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거래가 공동주택 등에 비해 저조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고시하기가 어렵다. 이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행정적 필요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을 각각 투입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행정 비효율성과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일원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 이후 추가로 진행되지 않았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경과]

기간	추진 내용			
'05.5월	국민경제자문회의('05.5.4. 대책회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 결정			
'06.1월	부동산실무기획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과거 건교부) 도입 결정			
'12.12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안홍준 의원)			
'16.1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16.9.1. 발효)과 동시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근거 마련			
'16년 ~ 계속	용역	시기	연구기관	내용
	1차	'15.12.~'16. .9.	한국감정원· 조세연	17개 시군구 상업·업무용 가격공시모형 설계
	2차	'16.11.~'17. .9.	한국감정원· 지방세연	추가 50개 시군구 가격공시모형 설계
	3차	'17.11.~'18. .6.	한국감정원· 지방세연	산업용 건물 가격산정모형 설계

자료: 국세청

국토교통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시대상 및 방법을 결정하고 인력·예산 등도 확보해야 하므로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현행 국세와 지방세 과세기준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제도 시행을 확정하면 기준시가 고시업무 및 감정평가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회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업무가 국토교통부에 원활히 이관될 수 있도록 기관간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통합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방식이 급격하게 개편될 경우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과세체계 기반이 흔들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행정안전부, 한국부동산원⁶⁾ 등 유관기

관이 공동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 및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한 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가격공시 관련 조사·산정·검증 및 국세청의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업무)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5.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
6.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교육·연수·홍보 업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관련 연구용역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연구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방식	예산액	집행액
2017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조사산정 용역	'17.5.~ '18.2.	한국감정원 (現한국 부동산원)	경쟁후 수의	1,310	1,289
	기준시가 계산방법 산정용역	'17.6.~ '17.12.		경쟁후 수의	88	88
2018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조사산정 용역	'18.6.~ '19.2.		경쟁	1,329	1,309
	기준시가 계산방법 산정용역	'18.6.~ '18.12.		경쟁후 수의	89	89
2019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조사산정 용역	'19.6.~ '20.2.		경쟁	1,263	1,263
	기준시가 계산방법 산정용역	'19.7.~ '19.12.		경쟁후 수의	87	87
2020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조사산정 용역	'20.6.~ '21.2.	한국 부동산원	경쟁후 수의	1,343	1,333
	기준시가 계산방법 산정용역	'20.6.~ '20.12.		경쟁후 수의	87	86
2021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조사산정 용역	'21.5.~ '22.2.		경쟁후 수의	2,381	2,345
	기준시가 계산방법 산정용역	'21.5.~ '21.12.		경쟁후 수의	88	84

자료: 국세청

1-2.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의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으로, 부과대상인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후에 매매, 감정, 수용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또는 경매가액이 시가가 되고,⁷⁾ 매매 등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시가로 하며, 공시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시가가 된다.

아파트·오피스텔 및 대형 상가건물 등은 거래가 빈번하여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가액이 없더라도 개별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⁸⁾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전에는 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매매·감정·수용 등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⁹⁾ 개정을 통해 납세자가 신고한 이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8) 국세청장이 매년 1회 고시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기준 시가(건물+토지가격) 고시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납세자가 소규모 빌딩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신고하면 시가와와의 차이가 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둘 이상의 감정

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가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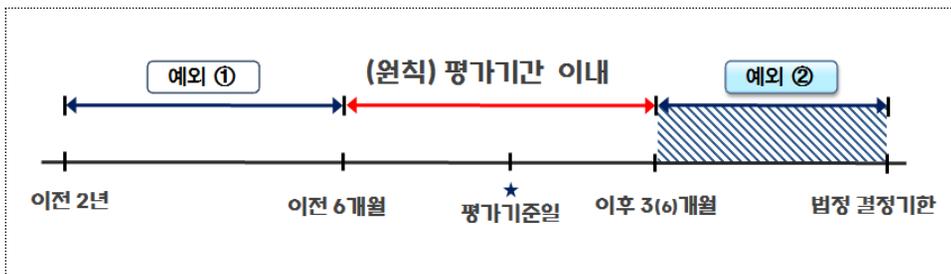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으로써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구분	원칙	보충적 평가방법		
		기준	평가방법	주무기관
토지	시가	개별공시지가	토지면적 × m ² 당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주택		개별주택가격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건물면적 × m ² 당 고시가액 ¹⁾ ① + ② ① 토지면적 × m ² 당 개별 공시지가 ② 건물면적 × m ² 당 금액 ²⁾	국세청

주: 1) 수도권, 5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일정규모 이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고시

2) 신축가격·구조·용도 등을 참작하여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자료: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수행 절차]



자료: 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2020년도 예산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248건에 대해 평가하여 총 45억 9,600만원의 평가비용을 지불하였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집행내역]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평가건수	감정평가수수료 (A)	부가가치세 (B)	총 평가비용 (A+B)	집행액
2020	113	1,751	175	1,926	1,938
2021	248	4,178	418	4,596	4,621
2022.5월말	36	1,562	156	1,718	1,718

주: 총 평가비용과 예산집행액 차이는 조달청 수수료(2020년 12백만원, 2021년 25백만원)임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일원화 전 비주거용 건물 감정평가 사업의 효과와 조세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담세자가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대상 기준 또는 대상 선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실시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이 2020년 5,249억원(68.1%), 2021년 1조 793억원(73.9%) 증가하였는바,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자·비보유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볼 수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현황 및 감정평가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전 체		감정평가 대상				
	신고건수 (A)	신고가액 합	건수(B)		신고가액 합 (C)	감정가액 합(D)	
				B/A			D-C
2020	22,960	5,845,364	113	0.49	771,000	1,295,900	524,900
2021	27,175	7,802,071	248	0.91	1,460,100	2,539,400	1,079,300
2022.5월말	10,733	4,021,697	36	0.33	262,900	426,800	163,900

자료: 국세청

한편, 동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20년 및 2021년 모두 예산액이 99% 이상 집행되었는데, 이는 국세청이 신고기한(상속개시일 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마감 후 법정 결정기한인 9개월(증여세의 경우 6개월)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예산 제약으로 인해 미진행된 경우 차년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평가건수	총 평가비용	평균 단가	예산액	집행액
2020	113	1,926	17.04	1,939	1,938
2021	248	4,596	18.53	4,622	4,621
2022.5월말	36	1,718	47.72	4,622	1,718

주: 총 평가비용과 예산집행액 차이는 조달청 수수료(2020년 12백만원, 2021년 25백만원)임
 자료: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국세청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비주거용부동산등으로 명시되어있으며, 국세청장이 재산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¹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규모 건물 대상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래빈도 및 건물 간 유사성이 낮아 실거래가를 찾기 어렵고 조사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예산 대비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 상속·증여된 소규모 건물에 한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감정평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그러나 담세자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예상보다 더 큰 과세부담을 지게 되는바 감정평가 대상 여부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동 기준으로는 어떤 부동산이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다. 비록 비주거용 부동산 대상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동산의 현실 가치에 기반한 과세가 가능하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조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담세자 입장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대상 기준 또는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세청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취약분야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¹⁾ 제보자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과세 당국에 제공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에 활용되면 그에 기반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관련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의 유형]

포상금명	신고 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조세탈루부당환급 제보 포상금 (「국세기본법」 §84의2① 제1호)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5억원: 20% - 5억원~20억원: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 - 20억원~30억원: 3억 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 - 30억원 초과: 4억 2,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	40억원

김윤성 예산분석관(kim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포상금명	신고 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84의2① 제2호)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 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한 징수액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5억원: 20% - 5억원~20억원: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 - 20억원~30억원: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 -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	30억원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84의2① 제3호)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발급거부금액/미발급금액 × 20%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동일인 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84의2① 제4호 · 제4호의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 또는 미발급하는 행위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84의2① 제5호)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건당 200만원	건별 200만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84의2① 제6호)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과태료금액 - 2천만원~2억원: 15% - 2억원~5억원: 3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 초과액의 5%	

포상금명	신고 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84의2① 제7호)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신고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건당 100만원 지급	건별 100만원 연 5천만원 (동일인 한도)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회계연도 포상금 유형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포상금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조세탈루부당 환급 제보 포상금	조사활동지원	16,621	-	16,621	14,040	2,581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압류재산공매	818	684	1,502	1,423	79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	1,535	1,307	2,842	2,842	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포상금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20	6	26	21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국세조세 관리관실 기본경비	29	-	29	0	29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조사활동지원	1,781	-	1,781	1,434	347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등 일부 포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포상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이·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각 포상금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이용 및 전용 규모가 증가(2019년 13억 6,000만원 → 2020년 14억 6,800만원 → 2021년 19억 9,700만원)하고 있는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3년 연속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국세 관련 포상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포상금명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집행액
탈세제보 포상금·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2019	15,385	이용	1,360	16,745
	2020	17,680	전용	224	17,904
	2021	18,402	-	-	15,474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2019	1,251	-	-	802
	2020	835	전용	377	1,206
	2021	818	이용	684	1,42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2019	1,478	-	-	1,478
	2020	1,533	이용	836	2,369
	2021	1,535	이용	1,307	2,842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포상금	2019	20	-	-	20
	2020	20	이용	31	48
	2021	20	이용	6	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019	29	-	-	0
	2020	29	-	-	0
	2021	29	-	-	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포상금은 지급건수 및 지급규모에 따라 집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포상금은 요건이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지출이다. 또한,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기한의 종료일(탈세제보 포상금·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및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포상금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경우 2021년 포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예산이 배정되어야 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는 등 포상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전용은 국회에서 정한 사업 예산집행 한도의 예외이므로 이·전용 자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포상금 신고 대상 등을 바탕으로 포상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소요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포상금의 경우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동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²⁾는 역외탈세 및 불법적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해외 자산·소득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OECD 다자간 금융정보교환 및 제보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습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최근 해외 주식투자, 가상자산 투자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계좌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자 증가에 따른 당해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2019년 86억 8,300만원, 2020년 286억 3,400만원에 이어 2021년 391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단위: 명, 개, 백만원)

구 분	신고인원	신고계좌수	신고금액
2017	1,287	12,503	66,361,807
2018	2,165	16,153	61,507,290
2019	2,685	18,566	59,898,626
2020	3,130	20,077	59,034,753

주: 1. 귀속년도 기준

2. 2021년 현황은 2022. 8. 3. 현재 집계중

자료: 국세통계포털(<http://tasis.nts.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7	11,935	9,493	79.5	2,399	43
2018	22,253	13,766	61.9	6,345	2,142
2019	15,656	8,683	55.5	6,204	769
2020	56,626	28,634	50.6	27,884	108
2021 ¹⁾	61,414	39,136	63.7	13,074	9,205

주: 1) 국세청은 2021년의 경우 특정인의 고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관련 과태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부과되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하였다는 입장임

자료: 국세청

한편,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은닉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³⁾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총 285건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1건에 대해 2,700만원만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신고건수	지급건수	예산액	지급액
2017	39	-	43	-
2018	54	1	43	27
2019	53	-	29	-
2020	64	-	29	-
2021	75	-	29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중요정보는 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잔액 등으로, 타인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구조적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는 많지 않으나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동 제도의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고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고, 동 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면 잠재적 제보자들이 신고의지를 상실하게 되어 포상금제도가 성실신고 유도장치로서의 역할도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포상금제도를 통해 신고내용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제보자의 노력이 추가되는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의 요건 및 절차,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국세조세조정법」에 관한 법률

제6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셋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한도액 수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자 대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은 소비자 상대업종의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이 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세원양성화가 미흡한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탈세 전에 포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5년간 신고건수 및 지급건수, 지급액은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미발급으로 적발된 건수 역시 증가하였다. 2021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총 38,039건 중 13,025건에 대하여 28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다.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2017	18,261	6,876	1,427	10,081	2,709	208	8,180	4,167	1,219
2018	24,250	7,170	1,498	12,081	2,800	230	12,169	4,370	1,268
2019	28,126	7,662	1,478	13,195	2,742	222	14,931	4,920	1,256
2020	37,147	11,931	2,369	16,111	4,244	338	21,036	7,687	2,031
2021	38,039	13,025	2,842	13,887	3,215	263	24,152	9,810	2,579

자료: 국세청

[신고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적발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합계		발급거부		미발급	
	적발사업자	적발금액	적발사업자	적발금액	적발사업자	적발금액
2017	5,300	119	2,874	22	2,426	97
2018	5,278	158	2,528	38	2,750	120
2019	5,559	157	2,481	29	3,078	128
2020	8,225	204	3,420	34	4,805	170
2021	10,623	299	3,999	31	6,624	268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⁴⁾ 포상금 총 수령자 중 한도액 200만원을 수령하는 인원 비중이 2019년 1.5%에서 2020년 3.04% 및 2021년 4.89%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2021년 전체 지급액 중 28.57%를 차지하고 있는바, 신고포상금 한도액 수령자 증가로 전체 신고포상금 지급액 중 한도액 수령자의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수령자 중 한도액 수령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전 체		한도액 수령			
	수령인원(A)	지급액(B)	수령인원(C)	C/A	지급액(D)	D/B
2017	4,415	1,427	82	1.86	164	11.49
2018	5,407	1,498	105	1.94	210	14.02
2019	5,676	1,478	85	1.5	170	11.5
2020	8,060	2,369	245	3.04	490	20.68
2021	8,302	2,842	406	4.89	812	28.57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결제·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자영업자 등 대상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은 있으나 신고 포상금 한도액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어 성실납세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재 신고 포상금 한도액 수령자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자 대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세 체납액 징수위탁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징수위탁수수료 사업¹⁾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그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에는 16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15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징수위탁 수수료	1,669	1,669	-	-	1,669	1,523	-	14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체납액의 징수위탁은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위탁하였다.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2)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①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2232-303

2) 「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상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공사³⁾에 위탁하여 주소·거소 확인 및 재산 조사,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수수료는 납부된 체납액 또는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 금액 중 징수액에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된다.⁴⁾

2021년 징수위탁된 체납액은 2020년 말 이월된 체납액 6조 1,471억원과 신규 위탁된 2조 4,688억원을 포함한 6조 3,267억원(총 52만 7,081건)이다. 이 중 3만 1,384건에 대한 체납액 43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15억 2,300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보전·추심의 수입 및 인수정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배분과 같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징수위탁 현황 및 징수실적]

(단위: 억원, 건, %)

연 도	전년말 위탁 금액 (A)	당년 위탁 금액 (B)	당년 해지 금액 (C)	연도말 위탁 금액 (A+B-C)	연도말 위탁 건수	징수 금액 (당년)	징수 건수 (당년)	수수료 지급액	평균 수수료율
2017	46,230	22,569	10,506	58,293	560,840	378	28,397	20	5.3
2018	58,293	23,852	20,870	61,275	529,918	390	31,034	19	5.0
2019	61,275	25,390	23,257	63,408	504,484	429	32,330	20	4.7
2020	63,408	25,058	26,995	61,471	423,603	397	30,871	17	4.4
2021	61,471	24,688	22,892	63,267	527,081	435	31,384	15	3.5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공사의 징수위탁을 통한 체납액의 징수율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체납 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징수 관련 사실행위 방식 및 위탁수수료 체계 개선 등 징수위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징수위탁사업은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수실적을 개선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실자산 정리 및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사에 고액체납 및 징수가 어려운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탁한 것이다. 그러나 징수율은 최근 5년간 0.64~0.69%에 불과하였다.

징수율 저조 문제에 대해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당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체납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체납 건은 직접 징수하고, 공사에 정정보류한 체납 건만을 위탁하는 등 징수위탁 체계 개편 및 국세청 체납분야 조직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세청은 2021년 체납분야 정원 증원, 세무서 내 신설된 체납전담조직 역량 강화, 공사 내 전담인력 5명 증원을 통해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위탁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2020년보다 향상되어 징수율이 0.65%에서 0.69%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징수가 저조한 상황이며, 위탁건수 기준 2020년보다 2021년 위탁건수가 24.4%(42만 3,603건 → 52만 7,081건) 증가함에 따라 징수율은 7.3%에서 6.0%로 하락하였다.

[징수위탁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건, %)

연 도	연도말 위탁금액	연도말 위탁건수	징수금액 (당년)	징수건수 (당년)	징수율 (연도말기준)	
					금액기준	건수기준
2017	58,293	560,840	378	28,397	0.65	5.1
2018	61,275	529,918	390	31,034	0.64	5.9
2019	63,408	504,484	429	32,330	0.68	6.4
2020	61,471	423,603	397	30,871	0.65	7.3
2021	63,267	527,081	435	31,384	0.69	6.0

자료: 국세청

체납금액별 징수위탁 실적을 보면 매년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 건에 대한 징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체납 건의 경우 징수율이 금액 기준 1.0%, 건수 기준 6.0%로 전년대비 낮아졌다. 이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을 보유한 체납자는 의도적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행위만으로는 징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체납금액별 징수위탁 실적]

(단위: 억원, 건, %)

구분	연도말 위탁금액	연도말 위탁건수	징수금액 (당년)	징수건수 (당년)	징수율 (연도말기준)		
					금액	건수	
2017	1천만원 미만	2,231	87,041	67	6,154	3.0	7.1
	1천만원~1억원	37,141	419,809	297	21,880	0.8	5.2
	1억원~5억원	18,802	53,906	14	363	0.1	0.7
	5억원 초과	119	84	-	-	0.0	0.0
	계	58,293	560,840	378	28,397	0.6	5.1
2018	1천만원 미만	2,092	82,205	60	6,186	2.9	7.5
	1천만원~1억원	32,359	365,185	312	24,184	1.0	6.6
	1억원~5억원	26,816	82,526	18	664	0.1	0.8
	5억원 초과	8	2	-	-	0.0	0.0
	계	61,275	529,918	390	31,034	0.6	5.9
2019	1천만원 미만	1,802	71,249	64	6,810	3.6	9.6
	1천만원~1억원	29,418	331,553	329	24,452	1.1	7.4
	1억원~5억원	32,180	101,680	35	1,068	0.1	1.1
	5억원 초과	8	2	-	-	0.0	0.0
	계	63,408	504,484	429	32,330	0.7	6.4
2020	1천만원 미만	1,239	48,980	58	7,008	4.7	14.3
	1천만원~1억원	23,037	251,133	283	22,304	1.2	8.9
	1억원~5억원	37,195	123,490	56	1,559	0.2	1.3
	5억원 초과	-	-	-	-	0.0	0.0
	계	61,471	423,603	397	30,871	0.6	7.3
2021	1천만원 미만	1,404	57,972	72	9,045	5.1	15.6
	1천만원~1억원	29,662	348,285	305	20,979	1.0	6.0
	1억원~5억원	32,201	120,824	59	1,360	0.2	1.1
	5억원 초과	-	-	-	-	0.0	0.0
	계	63,267	527,081	435	31,384	0.7	6.0

자료: 국세청

또한, 공사의 위탁수수료는 징수금액 기준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고액의 체납건에 대한 징수 유인이 높지 않은 구조이다. 특히 5억원을 초과하여 징수하더라도 위탁수수료 상한이 1,332만원에 불과하여 징수위탁업무에 노력을 기할 유인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수수료 기준]

징수금액	위탁수수료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청구금액	제외금액	수수료 지급액
2017	3,160	1,160	2,000
2018	3,175	1,229	1,946
2019	3,484	1,484	2,000
2020	3,460	1,728	1,732
2021	3,444	1,921	1,523

자료: 국세청

즉, 공사의 위탁업무에 따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1천만원 미만의 낮은 금액의 체납 건에 대한 징수효과만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 및 공사는 징수 관련 사실행위 및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 등 징수위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¹⁾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홍보·신청안내·결정통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 125억 9,600만원 중 12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근로·장려세제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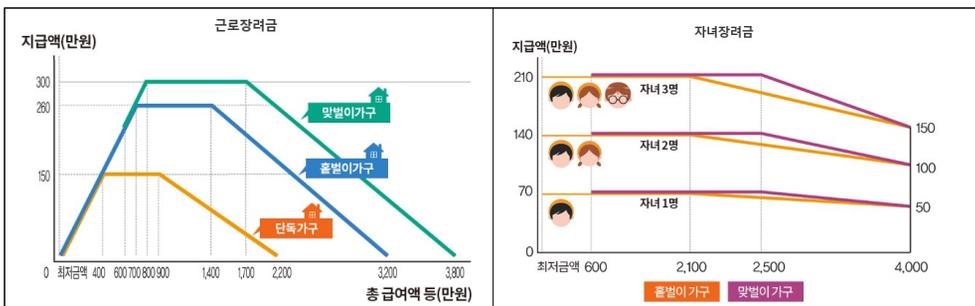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근로·자녀 장려세제 운영	12,596	12,596	-	-	12,596	12,240	-	35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근로장려금)과,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3135-300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는 모바일(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ARS(자동응답) 및 상담센터 전화 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방식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 등에게 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동 사업 예산에는 신청안내문·지급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신청안내 등 도우미 인건비, 대중매체 영상송출 및 홍보물 제작비용,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용역비 등이 편성되었다.

[2021회계연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	예산액	집행액
신청안내문·지급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7,349	7,128
신청안내 등 도우미 인건비	1,400	1,396
대중매체 영상송출 및 홍보물 제작비	1,216	1,215
신청안내문 및 업무매뉴얼 등 제작	694	562
우편봉투 제작	224	211
장려금 신청안내 창구 개설비	311	339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용역비	1,350	1,339
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설문조사	30	28
제도안내 간담회	14	14
장려금 수기공모전 포상금	8	8
계	12,596	12,24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모바일을 통한 신청안내 및 결정통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모바일 송달 계약도 다른 납세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과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사업 내 우편요금 및 모바일 송달 요금 등 예산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세부사업과 통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및 결정통지는 우편과 모바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2020년 모바일(카카오페이 및 KT)을 통한 신청안내가 가능해지면서 2021년 신청안내 건수가 544만건(우편 378만건, 모바일 166만건)에서 719만건(우편 218만건, 모바일 501만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집행액은 15억 9,400만원(우편 13억 6,600만원, 모바일 2억 2,800만원)에서 15억 500만원(우편 7억 8,600만원, 모바일 7억 1,9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및 결정통지 발송 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구 분	우 편						모 바 일	
	신청안내		결정통지 (계좌이체 등)		결정통지 (현금수령)		신청안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3,239	983	2,752	836	278	528	-	-
2018	3,300	1,002	2,823	857	260	537	-	-
2019	6,837	2,226	6,425	2,166	460	1,053	-	-
2020 ¹⁾	3,780	1,366	9,040	3,264	670	1,598	1,662	228
2021 ²⁾	2,181	786	8,360	3,018	610	1,471	5,010	719

주: 1) 2020년 신청안내: 50세이상 우편안내문으로 발송하고, 50세미만은 모바일안내문 발송

2) 2021년 신청안내: 60세이상 우편안내문으로 발송하고, 60세미만은 모바일안내문 발송

자료: 국세청

이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안내문 발송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²⁾에서 국세 관련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을 카카오페이·KT

2) 2021회계연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비목)	예산액	집행액
납세고지서 등 발송	55,959	47,178
우편봉투 구입비용(일반수용비)	554	457
우편요금(공공요금 및 제세)	55,405	46,721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우편물센터)	41,311	32,287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5,955	6,191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우편물센터)	7,755	7,910
- 우편발송	2,685	6,081
- 모바일발송	5,070	1,829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384	333

자료: 국세청

와 계약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도 위 계약에 포함하여 동일 단가로 발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9~2021년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단가]

(단위: 원)

구 분	등기우편	일반우편(규격 내)	일반우편(규격 외)
2019.5.	2,180	380	590
2020.7.	2,480	380	590
2021.9.	2,530	430	640

자료: 국세청

[모바일 발송업체별 단가]

(단위: 원)

구 분			발송단가	
			2020년	2021년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발송		22
		열람	110	88
	알림톡(문자)			11
KT	전자문서(MMS)	발송	165	165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국세청

한편, 2022년 8월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통지 방식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을 경우 또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³⁾해짐에 따라 우편요금은 감소하고 모바일 발송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 모바일 발송계약 및 발송의뢰가 현실적으로 타 국세 안내문의 모바일 발송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내문 및 결정통지 제공방식에 있어 우편발송 방식은 감소하고 모바일 발송방식이 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편요금 및 모바일 발송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을 동 사업에 별도로 편성하기 보다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안내문·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관련 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에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12억 9,300만원이며, 5,424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1%인 386억 200만원을 수납하고 4,989억 4,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9억 2,7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1,293	81,293	81,293	542,471	38,602	498,942	4,927	7.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2021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975억 1,800만원이며, 이 중 94.2%인 5,630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0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69,201	569,201	597,518	563,073	1,363	33,082	94.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한편, 관세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관세청의 자산은 6조 7,372억 8,800만원, 부채는 5조 5,532억 7,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1,840억 1,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5조 3,756억 3,300만원, 투자자산 2억 700만원, 일반유형자산 1조 3,118억 2,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8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9,505억 5,400만원(77.9%)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채권 2조 8,386억 3,900만원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2조 8,336억 9,988만원 증가, 선급금 54억 5,400만원 감소 등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49억 3,9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조 3,807억 2,200만원, 장기차입부채 322억 7,300만원, 장기충당부채 1,402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9,191억 1,700만원 (110.8%) 증가하였다. 이는 미지급국세 및 미지급금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2조 8,367억 500만원 증가 및 기타장기충당부채 증가 따른 장기충당부채 853억 4,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6,737,288	3,786,734	2,950,554	77.9
Ⅰ. 유동자산	5,375,633	2,541,933	2,833,700	111.5
Ⅱ. 투자자산	207	202	5	2.5
Ⅲ. 일반유형자산	1,311,821	1,199,489	112,332	9.4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41,807	36,594	5,213	14.2
Ⅵ. 기타비유동자산	7,820	8,516	△696	△8.2
부 채	5,553,272	2,634,155	2,919,117	110.8
Ⅰ. 유동부채	5,380,722	2,544,017	2,836,705	111.5
Ⅱ. 장기차입부채	32,273	35,207	△2,934	△8.3
Ⅲ. 장기충당부채	140,277	54,931	85,346	155.4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184,016	1,152,579	31,437	2.7
Ⅰ. 기본순자산	691,124	691,124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64,465	△42,738	△121,727	284.8
Ⅲ. 순자산 조정	657,357	504,193	153,164	30.4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636억 4,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659억 300만원, 관리운영비 4,970억 5,500만원, 비배분비용 1,434억 9,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28억 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308억 8,300만원(43.3%) 증가한 7,636억 4,9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증가 등 비배분비용 1,241억 3,700만원 증가, 비배분수익 847억 3,800만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정보화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830억 500만원)과 밀수감시단속 프로그램(429억 9,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188억 500만원과 경비 1,782억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581억 3,200만원과 기타비용 853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65,903	171,842	△5,939	△3.5
가. 프로그램 총원가	165,903	171,842	△5,939	△3.5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497,055	469,108	27,947	6.0
III. 비배분비용	143,494	19,357	124,137	641.3
IV. 비배분수익	42,803	127,541	△84,738	△66.4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763,649	532,766	230,883	43.3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VI)	763,649	532,766	230,883	43.3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 1,525억 7,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1,840억 1,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14억 3,700만원(2.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308억 8,3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385억 7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893억 5,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6,925억 9,2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06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531억 6,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관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152,579	941,103	211,476	22.5
II. 재정운영결과	763,649	532,766	230,883	43.3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41,922	552,571	89,351	16.2
IV. 조정항목	153,164	191,671	△38,507	△20.1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184,016	1,152,579	31,437	2.7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21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 ②수출입화물검사지원 사업, ③조사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 등이 있다.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은 모바일 전자신고 확대운영 관련 코로나 19로 인한 여행자 수 감소 등을 감안하여 5억 7,200만원이 감액(104억 3,600만원 → 98억 6,400만원)되었고, 수출입화물검사지원 사업은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60억원이 감액(151억 2,800만원 → 91억 2,800만원)되었다. 조사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스티커셀 등 잔존 재고량을 감안하여 9,000만원이 감액(219억 4,800만원 → 218억 5,800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청사시설관리 사업이 있다.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용당세관 부지 내 노후된 6호 창고 활용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5억원이 증액(113억 6,800만원 → 118억 6,800만원)되었다.

관세청은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입기업 총력 지원**, ②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③ 일 잘하는 세관 구현을 위한 **통관관리체계 혁신**, ④ 관세 행정 소분야에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 ⑤ **불법부정 무역행위 엄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건물 형태의 대규모 컨테이너검색기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검사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청은 컨테이너검색기 교체 방식을 재검토하는 한편,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기간 중 검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AEO 공인 신청, 심사, 인증 등의 실적이 전년 대비 부진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이 공인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소수출입기업의 AEO 공인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

컨테이너검색기 교체 방식 재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사업은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하고 지능화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 자체를 검색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감시장비 현대화¹⁾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관세청은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사업의 2021년도 예산 86억 4,000만원 중 8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사감시 장비 현대화	21,767	21,767	55	-	21,822	18,404	1,034	2,384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8,585	8,585	55	-	8,640	8,475	-	16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컨테이너검색기란 선형가속기를 통해 고에너지 X-선을 컨테이너에 직접 투시하여 물체의 밀도 차를 구분함으로써 정밀한 판독영상을 구현하는 장비이다. 현재 관세청은 총 13대의 컨테이너검색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332-302

[관세청 컨테이너검색기 보유 및 운영 현황]

소속	인천	부산	파주	울산	군산	광양	평택
컨테이너 검색기 운영	남항CT 선광 인천신항	신항(북) 신항(남) 신선대 감만	도라산	온산항	6부두	광양항	PNCT 동부두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건물 형태의 대규모 컨테이너검색기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검사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청은 컨테이너검색기 교체 방식을 재검토하는 한편,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기간 중 검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 개폐를 통한 내부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컨테이너 자체에 직접 X-선을 투과함으로써 효율적인 밀수단속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장비로 내구연한은 약 13년이다. 그런데 2021년말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13대의 컨테이너검색기 중 6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연도 및 내구연한 도과 여부]

소속	구분	운영연도	내구연한 도과
인천	남항CT	'05.07.30.	○
	선광	'06.11.27.	○
	인천신항	'18.05.03.	-
부산	신항 북측	'06.09.12.	○
	신항 남측	'13.10.30.	-
	신선대	'18.05.03.	-
	감만	'21.05.05.	-
파주	도라산	'08.10.21.	○
울산	온산항	'05.05.30.	○
군산	6부두	'06.11.03.	○
광양	광양항	'21.12.30.	-
평택	PNCT	'12.06.29.	-
	동부두	'20.03.17.	-

자료: 관세청

이에 관세청은 노후화로 인한 고장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부산 신항 북측 컨테이너검색기²⁾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장비 교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검색기의 경우 건물 형태의 대규모 장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폐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 세관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건물을 폐기하고 신축하는 경우 약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3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리모델링 방식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약 70억원의 예산과 10개월 정도의 교체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짧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는 입장이다.³⁾

2) 부산 신항 북측 컨테이너검색기는 2019년 4회, 2020년 8회, 2021년 7회 고장이 발생하였다.

3) 2022년 8월 현재 기준 컨테이너검색기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부산 세관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교체 계획별 비교]

구분	기존건물 폐기 후 신축	기존건물 리모델링
소요예산	약 150억원	약 70억원
사업기간	약 37개월	약 10개월
업무공백 대비	업무공백 없음	남측 컨테이너검색기 집중 운영

자료: 관세청

다만, 관세청이 잠정 결정한 것과 같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규 컨테이너검색기 건물을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에도 기존 건물에 설치된 검색기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색기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청은 리모델링 기간 중에 검사 물량을 부산 신항 남측 컨테이너검색기로 집중시킬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도 북측 부두가 남측 부두보다 처리 물동량 자체가 많아 북측 컨테이너검색기가 남측 컨테이너검색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검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가동 중단에 따른 추가 물량에 대한 검사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색기 가동시간과 운용인력 등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⁴⁾ 또한 북측 부두로 들어오는 물량을 남측 컨테이너검색기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⁵⁾

[부산항 부두별 컨테이너검색기 검사실적]

구분	2019		2020		2021	
	검사	적발	검사	적발	검사	적발
신항 북측 부두	6,843	3	4,812	2	5,946	2
신항 남측 부두	4,231	4	1,176	1	1,621	-
신선대 부두	7,635	4	5,514	1	2,784	3
감만 부두	-	-	-	-	5,946	-

주: 감만부두 컨테이너검색기는 2021년부터 운영

자료: 관세청

4) 현재 북측과 남측 컨테이너검색기의 운용 인력은 각 4인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용하고 있다.

5) 관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북측 부두의 물량을 남측 컨테이너검색기까지 이동시키는 데 약 3km 정도의 이동 거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관세청은 비용과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추진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리모델링 방식으로 확정하여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측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시간 확대 및 인력 재편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사기간 중 검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실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과태료¹⁾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의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 414억 6,900만원 중 52억 7,900만원이 수납(수납률 12.7%)되었고, 349억 9,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11억 9,800만원이 발생하였다.

[2021회계연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태료	9,247	9,247	9,247	41,469	5,279	34,992	1,198	12.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과징금²⁾은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 59억 3,300만원 중 27억 2,000만원이 수납(수납률 45.8%)되었고, 29억 3,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2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2-56-563

2) 코드: 일반회계 12-56-565

[2021 회계연도 과징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징금	2,541	2,541	2,541	5,933	2,720	2,939	274	45.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과태료 및 과징금의 미수납액이 급증하여 수납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수납실적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므로, 관세청은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강화, 미수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내실화 및 확대 등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의 과태료와 과징금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두 세입항목 모두 2021년 미수납액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의 경우 2021년 미수납액은 349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 4,800만원 증가(228.7%)하여 수납률은 12.7%로 급감하였고, 과징금의 경우 2021년 미수납액은 29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700만원 증가(90.6%)하여 수납률은 45.8%로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B/A)
2017	13,325	6,089	7,152	45.7
2018	16,369	7,211	8,977	44.1
2019	17,532	8,573	8,897	48.9
2020	16,061	5,280	10,644	32.9
2021	41,469	5,279	34,992	12.7

자료: 관세청

[최근 5년간 과징금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B/A)
2017	6,041	4,287	1,680	71.0
2018	3,165	1,555	1,560	49.1
2019	4,598	3,364	1,229	73.2
2020	3,198	1,641	1,542	51.3
2021	5,933	2,720	2,939	45.8

자료: 관세청

2021년 신규 징수결정분에 대한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과태료의 경우 308억 6,500만원 중 259억 7,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신규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률이 84.2%로 급증하였고, 과징금 역시 45억 3,500만원 중 19억 4,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신규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률이 42.9%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신규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해연도 신규 징수결정액 (A)	신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B)	신규 미수납률 (B/A)
2017	7,698	1,912	24.8
2018	8,522	750	8.8
2019	7,889	1,352	17.1
2020	7,964	2,960	37.2
2021	30,865	25,974	84.2

자료: 관세청

[최근 5년간 과징금 신규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해연도 신규 징수결정액 (A)	신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B)	신규 미수납률 (B/A)
2017	4,588	611	13.3
2018	1,811	296	16.3
2019	3,585	575	16.0
2020	2,028	448	22.1
2021	4,535	1,945	42.9

자료: 관세청

또한, 미수납액을 미수납 사유별로 구분해보면, 징수유예 결정이 있었거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미 납기가 지났음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비롯한 징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체납정리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2021년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 사유별 금액]

(단위: 백만원, %)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별 금액				
		징수유예	납기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등	체납정리중
과태료	34,992	6	653	2	1,011	33,320
과징금	2,939	466	154	26	40	2,252

자료: 관세청

이처럼 수납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축소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정리³⁾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관세청은 2019년 9월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시행과 함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바 있으나 그 결과 2019년 수납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후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미수납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을 통해 한차례 더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음에도 2021년 수납실적이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단순히 정부의 세입 재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세 행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수납부진이 반복될 경우 정부의 관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 법령 및 그에 따른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납부의 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강화, 미수납액 정리기간 운영 내실화 및 확대 등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세입항목 체납액 정리에 집중하는 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과 2021년에 시행한바 있다.

가. 현황

관세청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유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종합시스템,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정 외에 폭발물탐지기, 드론, X-Ray 검색기 등의 첨단과학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중 X-Ray 검색기 관련 예산은 ‘조사감시장비 현대화’¹⁾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기타조사감시장비 도입’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관세청은 기타조사감시장비 도입 사업의 2021년도 예산 123억 200만원 중 90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타조사감시장비 도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사감시 장비 현대화	21,767	21,767	55	-	21,822	18,404	1,034	2,384
기타 조사감시 장비 도입	12,302	12,302	-	-	12,302	9,052	1,034	2,21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기타조사감시장비 중 X-Ray 검색기는 차량형, 소형, 중형, 3D 검색기 등으로 구분된다. 2021년의 경우 X-Ray 검색기 도입을 위한 예산 6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관세청은 40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332-302

[2021회계연도 X-Ray 검색기 도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차량형	1,022	1,022	-	-	100.0
소형	1,045	1,043	-	2	99.8
중형	589	-	-	589	-
3D	3,804	2,014	1,034	756	52.9
합 계	6,460	4,079	1,034	1,347	63.1

자료: 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불법·유해 물품 반입 증가 및 X-Ray 판독 인력 증원상의 한계 등에 대응하고자 AI X-Ray 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AI X-Ray 판독시스템은 2017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특송화물 검색에 대해 시범도입²⁾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3단계의 성능개선을 진행하였다.

[AI X-Ray 구축 사업 단계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용역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2017~2019	2019	2020	2021
예산액	150	4,930	1,886	700
집행액	146	4,461	1,640	595
주요내용	AI 개발과 현장 도입 가능성 확인	AI모델 개발 및 학습, H/W구축 후 시범 적용	영상수집 및 학습 성능 개선 식별품목 확대	AI모델 성능개선 사용자 편의개선 운영프로세스 구축

자료: 관세청

2021년의 경우 '정보관리(정보화)³⁾ 세부사업의 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에 AI X-ray 판독시스템 구축 예산이 7억원 반영되었는데, 관세청은 7억원 중 5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 현재 인천세관, 인천항, 평택세관 3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1441-500

[2021회계연도 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관리 (정보화)	59,936	59,936	1,146	-	61,082	60,030	133	919
시스템 구축	13,711	13,711	1,146	-	14,857	14,376	133	34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2021회계연도 AI X-Ray 판독시스템 구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AI X-Ray 판독시스템 구축	700	538	133	29	76.9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X-Ray 검색기 도입 취소 및 지연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현장에서의 X-Ray 검색기를 통한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청은 신규 장비 도입 필요성 및 사업 환경 점검을 위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제조사 방문을 통한 사전 현장검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021년 도입 계획이었던 중형 X-Ray 검색기 도입을 취소하여 관련 예산 5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고, 3D X-Ray 검색기 도입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 10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1회계연도 X-Ray 도입 사업 추진 현황]

구분	당초 계획	사업 현황	결산 현황
중형 X-Ray 검색기	연내 도입	도입 취소	5억 8,900만원 불용
3D X-Ray 검색기	연내 도입	도입 지연	10억 3,400만원 아일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장비별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중형 X-Ray 검색기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주)OO해운이 속초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화객선 운항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속초 중형 X-Ray 검색기 도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속초국제여객터미널 소유주인 (주)OO크루즈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2021년 3월 속초국제여객터미널을 폐쇄하였고, (주)OO해운이 2021년 10월 해상여객운송면허를 반납하면서 중형 X-Ray 검색기 도입을 취소한 것이다.

[중형 X-Ray 도입 사업 추진 경위]

일자	내용
2019.8.	(주)한창해운 조건부 면허 취득
2019.9.	(주)한창해운 화객선 '한창강원'호 도입
2020.1.	'한창강원'호 수입통관
2020.4.	(주)한창해운 선박 수리비용 과다로 대체 선박 도입 추진
2020.10.	(주)한창해운 면허기간 연장('20.10→'21.10, 1년)
2021.3.	속초국제여객터미널 소유주(주)코리아크루즈, 중국)가 경영난으로 폐쇄
2021.4.	국제여객터미널 휴업 관련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국정원, CIQ기관 등) 간담회 실시 - (주)한창해운 화객선 취항시 신부두에 접안하여 現 CY부지를 통해 화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부지 임대차 계약, 보안구역 설정 등 지원 결정
2021.1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한창해운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자진 반납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인천세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3D X-Ray 검색기의 경우 2021년 6월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11월에 제품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였는데, 검수 결과 제조업체가 핵심 부품에 대해 2019년 생산품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여 검색기를 신규 제작하면서 도입이 지연되었다.

[3D X-Ray 도입 사업 추진 경위]

일자	추진경위
2021.3.9.~14.	사전규격공개 공고
4.3.~4.29.	조달공고 및 입찰마감
5.11.~5.1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15.	계약체결
8.4.~8.30.	선금 1, 2, 3차 지급
9.13.	전기·통신 등 관련 공사 착수
11.1.~11.4.	사전검수 중 부적합 사항 확인 (고전압발생장치, 오일쿨러 등을 2019년 생산품으로 사용)
11.4.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후 향후 추진계획 제출 요청
12.31.	2021년 부품으로 검색기 신규 제작
2022.1.22.	신규 검색기 교체 및 설치
2.8.~2.9.	검사·검수 및 인천공항 수하물운영시스템 연동테스트 완료
3.2.	잔금 지급(예산 이월)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속초국제여객터미널 폐쇄 및 해운업체의 면허 반납 등은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며, 3D X-Ray 검색기는 완제품 형태로 국내로 조달하기 때문에 부적합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다만, 이처럼 장비 도입이 취소되거나 지연됨으로써 해당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장비가 적시에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X-Ray 검색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신규 장비 도입 필요성 및 사업 환경 점검을 위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장비 제조 단계에서의 현장검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개편이라는 내부사정과 과업 범위 추가 등에 따라 AI X-Ray 판독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계약 절차가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관세청은 내부사정에 따른 공고 취소 등의 사업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과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특송화물 검사에 사용되는 AI X-Ray 판독시스템의 3단계 성능개선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2월에 사업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3월에 공고를 취소하고 5월에 재공고 의뢰를 하면서 계약 절차가 순연되어 성능개선을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1억 3,300만원의 계약 잔금이 이월되었다.

[2021회계연도 AI X-Ray 판독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추진 현황]

구분	당초 계획	사업 현황	결산 현황
AI X-Ray 판독시스템	연내 성능개선 완료	계약 절차 순연에 따른 성능개선 지연	1억 3,300만원 이월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공고 취소와 재공고가 필요했던 사유에 대해 관세청은 사업 추진 중 관세청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X-Ray 장비관리 담당자가 변경되는 등의 환경 변화가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공고 이후에 과업 범위 조정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AI X-Ray 판독시스템 성능개선 관련 계약 추진 현황]

시기	계약 추진 현황
2021.2.	최초 공고
3.4.	공고 취소
3.30.	조직 개편 (X-Ray 장비관리 담당자 변경)
5.12.	재공고 의뢰 (과업 범위 추가)
5.18. ~ 5.25.	사전규격 공개
6.8. ~ 7.6.	입찰 공고
7.9.	제안서 평가
7.16. ~ 7.19.	기술 협상
8.3.	계약 체결
2022.1.10.	사업 완료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은 내부사정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당초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세청은 AI 영상 사후검색 기능과 대형 장비에 대한 AI 적용방안 등의 연구를 과업 범위에 추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수정하였는데, 새로운 사정변경 등에 따라 시급하게 추가된 과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비대면 의견수렴과 사전검토 등을 통해 최초 공고의 과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지연되어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렵고, 관세청이 운용하는 장비의 성능개선 지연으로 이어져 검사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향후 담당자 변경 등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과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AEO 공인심사 위탁’ 사업은 ‘관세탈루 심사’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AEO 공인심사 단계 중 서류심사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관세청은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사업의 2021년도 예산 9억 9,900만원 중 9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관세탈루 심사	3,489	3,489	-	-	3,489	3,138	-	351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990	990	-	-	990	948	-	4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뜻하는 것으로, AEO 제도는 관세당국이 「관세법」 제255조의2 및 같은 법 제255조의3²⁾에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231-300

2)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근거하여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³⁾한 기업에 대해서는 검사비율 축소 등의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1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AEO 인증 유효 업체는 873개이다.

[2021회계연도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사업 결산 현황]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효업체 수(개)	815	822	826	851	873
중소기업 수(개)	513	514	521	519	523

자료: 관세청

한편, AEO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AEO 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AEO 제도는 2021년말 기준 미국·중국·EU 등 97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21년말 기준 22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AEO 공인 절차]

AEO 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AEO 공인	갱신심사
수출입 기업	민간위탁	관세청	심의위원회	

자료: 관세청

3)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나. 분석의견

AEO 공인 신청, 심사, 인증 등의 실적이 전년 대비 부진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이 공인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AEO 공인 신청 기업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AEO 공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공인 신청건수는 총 152건, 공인 심사건수는 155건, 공인 인증건수는 159건 등으로,⁴⁾ AEO 제도의 실적 전반에서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AEO 공인 신청건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공인	71	56	49	77	60
재공인	53	157	195	116	92
합 계	124	213	244	193	152

자료: 관세청

[최근 5년간 AEO 공인 위탁 심사건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공인	71 (14)	56 (8)	40 (28)	55 (23)	70 (46)
재공인	54 (34)	152 (130)	194 (133)	109 (74)	85 (50)
합 계	125 (48)	208 (138)	234 (161)	164 (97)	155 (96)

주: 괄호안의 숫자는 중소기업임

자료: 관세청

4) 관세청에 따르면 신청건수에 비해 심사건수와 인증건수가 많은 것은 전년도 접수건에 대한 심사 또는 전년도 심사건에 대한 인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AEO 공인 인증건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공인	99 (77)	52 (40)	38 (26)	53 (28)	58 (36)
재공인	8 (4)	43 (24)	183 (88)	145 (99)	101 (60)
합 계	107 (81)	95 (64)	221 (114)	198 (127)	159 (96)

주: 괄호안의 숫자는 중소기업임
자료: 관세청

또한, 공인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18건, 공인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가 18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각각 5건 증가하였다.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은 18개 기업 모두 중소기업이었으며, 자진하여 반납한 기업은 18개 기업 중 14개 기업이 중소기업이었다.

이와 같이 공인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유지하는 것에 더욱 소극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AEO 공인만료, 반납 및 취소 건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인만료	3 (2)	10 (7)	8 (5)	13 (12)	18 (18)
반납	18 (17)	30 (27)	21 (18)	13 (10)	18 (14)
취소	-	5 (5)	5 (2)	2 (2)	-
합 계	21 (19)	45 (39)	34 (25)	28 (24)	36 (32)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중소기업임
2. 공인만료는 기간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반납은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취소는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취소된 경우이다.
자료: 관세청

한편, 공인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2017년 99일에서 2021년 129일로 최근 5년 사이 약 한달 정도 길어진 상황이다. 공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새롭게 인력, 시스템 등을 확충하고 유지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AEO 공인 심사 평균 소요기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서류심사(일)	46	50	55	65	77
현장심사(일)	53	47	49	40	52
총 심사기간(일)	99	97	104	105	129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기업들의 수출입사업 축소, 사업전환 및 폐업 또는 공인유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공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인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중소기업부의 수출바우처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공인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사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소요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

그러나 2018년 수출바우처를 통한 인증 지원이 시작된 후에도 AEO 공인 신청, 심사, 인증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만료와 반납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인 획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하여 공인 심사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과거 동 사업에는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는 취지로 폐지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세한 수출입기업의 AEO 공인 획득과 유지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5) 그러나 현장심사 외 서류심사 단계의 소요기간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는 점에서 공인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조달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642억 7,100만원이며, 5,710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6%인 5,119억 5,500만원을 수납하고 591억 1,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조달특별회계	464,271	464,271	464,271	571,070	511,955	59,115	0	89.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665억 9,000만원이며, 이 중 87.2%인 4,07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3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조달특별회계	464,271	464,271	466,590	407,120	6,148	53,322	87.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56억 1,200만원 (18.1%)이 증가한 3,62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008억 7,700만원(38.6%)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261,578	306,843	306,843	362,455	55,612	100,87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2021회계연도 조달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37억 4,700만원(△13.5%) 이 감소한 2,79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041억 1,000만원 (59.5%)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175,020	322,877	322,877	279,130	△43,747	104,11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다.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조달청의 자산은 2조 4,075억 1,200만원, 부채는 92억 8,1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3,982억 3,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조 5,937억 3,900만원, 투자자산 38억 8,800만원, 일반유형자산 7,876억 7,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619억 8,200만원 (12.2%) 증가하였다. 이는 비축물자 판매차익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982억 7,600만원 증가, 국유재산 재평가주기(5년)에 따른 토지 재평가 및 취득, 처분거래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554억 1,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2억 4,500만원, 장기차입부채 50억 3,3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0억 2,300만원(△43.1%) 감소하였다. 이는 선수금 감소 등에 따른 유동부채 57억 5,3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407,512	2,145,530	261,982	12.2
Ⅰ. 유동자산	1,593,739	1,495,463	98,276	6.6
Ⅱ. 투자자산	3,888	3,848	40	1.0
Ⅲ. 일반유형자산	787,675	632,265	155,410	24.6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17,912	9,863	8,049	81.6
Ⅵ. 기타비유동자산	4,298	4,091	207	5.1
부 채	9,281	16,304	△7,023	△43.1
Ⅰ. 유동부채	4,245	9,998	△5,753	△57.5
Ⅱ. 장기차입부채	5,033	6,303	△1,270	△20.1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4	4	0	0
순 자 산	2,398,230	2,129,226	269,004	12.6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수입(수익)이 재정지출(비용)을 초과하여 순수익이 1,115억 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295억 1,300만원, 관리운영비 383억 7,400만원, 비배분비용 113억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955억 4,800만원, 비배분수익 637억 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685억 6,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80억 7,400만원(△76.5%) 감소한 △1,800억 6,700만원이며, 이는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증가로 비배분수익이 전년 대비 412억 2,0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66,035	△118,521	△47,514	△40.1
가. 프로그램 총원가	129,513	111,714	17,799	15.9
나. 프로그램 수익	295,548	230,235	65,313	28.3
II. 관리운영비	38,374	38,204	170	0.4
III. 비배분비용	11,302	812	10,490	1,291.9
IV. 비배분수익	63,708	22,488	41,220	183.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80,067	△101,993	△78,074	△76.5
VI. 비교환수익 등	△68,560	△6,911	△61,649	△892.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11,508	△95,082	△16,426	△17.3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조 1,292억 2,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조 3,982억 3,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690억 400만원(12.6%)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1,526억 3,9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1 회계연도 조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129,226	2,003,217	126,009	6.3
II. 재정운영결과	△111,508	△95,082	△16,426	△17.3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26,070	△26,070	△100.0
IV. 조정항목	157,496	4,857	152,639	3,142.7
V. 기말순자산(I-III+IV)	2,398,230	2,129,226	269,004	12.6

자료: 조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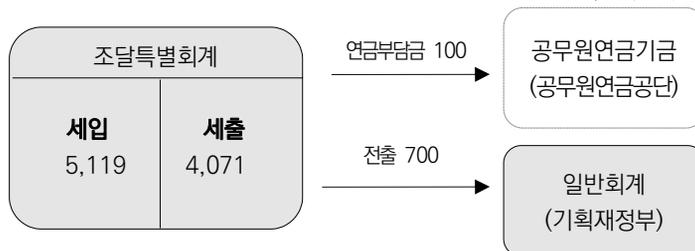
라. 재정 구조

2021 회계연도 조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700억원이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연금부담금 100억원을 전출하였다.

[2021 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이 있다.**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은 내역사업인 ‘공공혁신 조달사업’에서 Net-Zero 혁신제품 구매예산 증액을 목적으로 30억원이 증액(417억 5,800만원 → 447억 5,800만원) 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 **비축물자사업수입(세입), ②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③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이 있다.** 비축물자사업수입의 경우 회소금속 방출 증지에 따라 회소금속 사업 수입이 38억 4,000만원 감액(80억 4,000만원 → 42억원)되었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홍보 기념품비 예산 약 1,000만원이 감액(230억 5,400만원 → 230억 4,400만원)되었다.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의 경우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비의 2차년도 계약금액 중 낙찰차액 약 1,500만원이 감액(33억 6,200만원 → 33억 4,700만원)되었다.

조달청은 ① 혁신조달 구매규모 확대 및 참여 활성화, 혁신조달의 공공부문 확산 등을 통한 **혁신성장·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 ②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및 공공수요 맞춤형 전용몰 활성화 등을 통한 **수요자 지향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추진**, ③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회복 뒷받침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실현**, ④ 입·낙찰제도 개선,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감시 강화 등을 통한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 ⑤ 국민 보건·안전 물자, 국가자산 및 국유재산의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안전 우선과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⑥ 민·관·연 협업 조달혁신 추진, 공공조달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역량·문화 혁신**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조달청은 보유 회소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신속히 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비축공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특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나라장터로의 통합 여부를 판단하고, 나라장터로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희소금속은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과 달리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으로, 합금강(크롬, 몰리브덴, 니오븀, 망간, 바나듐 등), 반도체(텅스텐, 희토류, 갈륨, 인듐 등), 2차전지(망간, 코발트, 바나듐, 리튬 등)와 같은 핵심 산업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금속자원의 비축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광물자원공사, 이하 '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국제유동성과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아 가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목적이 강한 비철금속 6종¹⁾은 조달청이 비축을 담당 중이며, 국제유동성이 낮고 안정적 수급과 산업육성·자원안보 등의 목적이 강한 희소금속 19종은 공단이 조달청 비축창고를 활용하여 비축을 담당 중이다. 그런데 공단이 비축을 담당하는 희소금속 19종 중 10종(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은 공단이 보유 중이나, 나머지 9종(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비스무스, 스트론튬, 탄탈럼)은 여전히 조달청이 보유 중이다. 이들 9종의 희소금속 또한 기존 10종의 희소금속과 마찬가지로 공단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단이 마련한 비축기준을 고려하여 조달청이 희소금속을 대여·방출하는 등 양 기관이 공동 관리 중이다.

이와 같이 희소금속과 그 비축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이유는 비축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담당 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희소금속 비축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핵심광물의 비축목표가 부재하거나 비축량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2013~2018), 감사원(2017) 등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 금속자원 비축관리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니켈, 주석

이원화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공단은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조직하는 한편 공동 연구용역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의 수행을 KDI에 의뢰한 바 있다(2018, KDI).

이후 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하여, 국제유동성과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아 가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목적이 강한 비철금속 6종 등의 비축관리업무는 조달청이 수행하고,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던 희소금속 9종은 공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후, 2020년 6월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공동기준’(이하 ‘관리공동기준’)을 제정하여 이관 원칙을 정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협조하기로 결정하였다.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공동기준’(2020. 6.)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2조(범위)	본 기준은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9종(이하 “희소금속 9종”)의 이관 및 이관 전 신규 비축, 방출 및 대여, 보관관리, 향후 비축계획 및 비축 관련 대내외 협조업무에 적용됨을 명시
제3조(이관대상)	광물공사로 이관할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9종의 비축량은 이관 당시(계약 체결일)의 재고물량으로 함
제4조(이관방법과 이관조건)	희소금속 9종의 이관 시 적용 기준가격은 이관 당시의 국제가격(단, 국제가격이 없는 광종은 유통시장가격)으로 하며, 이관 방법과 인도 후 검수 검사, 대가 지급 등 중요사항은 조달청과 광물공사의 협의 결과를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
제5조(이관시기)	조달청과 광물공사는 심의·확정된 이관방법에 따라 희소금속 9종의 인도, 검수검사, 대가지급을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
제6조(관리원칙)	조달청은 희소금속 9종의 충분한 공급 위기 대응을 위해 상시 방출을 중지하고 현재의 비축량을 유지하며, 방출 및 대여는 예외적으로 실시
제7조(신규비축)	희소금속 9종 중 비축목표량에 미달하거나 신규로 비축이 필요한 품목은 광물공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비축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리공동기준 제5조에 따르면, 조달청과 광물공사(現 공단)는 심의·확정된 이관 방식에 따라 회소금속 9종의 인도, 검수검사, 대가지급을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관을 위하여 실시된 관계기관 간 주요 업무협약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회소금속 이관을 위하여 실시된 관계기관 간 주요 업무협약의 현황]

협약기관	협약 내용	협약 시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한국광물자원공사	정부비축기능 조정 및 조달청 회소금속 이관 결정,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9.6.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한국광물자원공사	‘회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 마련 및 시행	2020.6.
조달청, 한국광물자원공사	이관 대상인 회소금속 9종에 대해 합동 현장실사	2021.2.
조달청, 한국광물자원공사	합동 현장실사 후, 재고관리 및 이관 방법 등 후속조치 관련 회의	2021.6.
조달청, 한국광해광업공단 ²⁾	회소금속 이관 관리 공동기준 개정(안) 협의 및 이관 세부조건(안) 회의(1차)	2021.11.
조달청, 한국광해광업공단	회소금속 이관 관리 공동기준 개정(안) 협의 및 이관 세부조건(안) 회의(2차)	2022.1.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달청과 공단은 관리공동기준 마련 이후 이관 세부조건 확정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며, 특히 2021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조달청과 공단 중심으로 협의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세부조건을 둘러싸고 이관 방식, 인도·인수가격, 이관 순서 등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으나,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조정안을

2)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설립되었음(21.9.10.).

논의하는 등 최근까지 협의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2022년 현재까지도 이관에 필요한 예산과 비축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조달청과 공단이 다양한 이관 방식을 마련하였으나 대부분의 이관 방식은 각각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므로, 조달청과 공단은 각자의 금속자원 비축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오지 않으면서도 이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회소금속 유상 이관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과 공단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양측의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이관 방식을 강구하였다. 이들 방식은 크게 ① 공단 차원에서 국고보조예산, 구입대금 차입에 필요한 이자비용, 자본금 등을 마련하여 조달청이 보유한 회소금속을 구입하는 방식과 ② 조달청 차원에서 공단에 무상양여, 현물출자, 외상매매(先인도 後정산 방식)³⁾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 차원에서 회소금속을 구입하는 방식의 경우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조달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식은 조달청의 회전자금⁴⁾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공단 차원에서 회소금속을 구입하는 방식의 추진 내용 및 반영 결과]

연월	공단 및 국회의 추진 내용	예산 과정에서의 반영 결과
'19.7	'20년도 국고보조 예산 신청(1,104억원)	보조사업 적격성 부적합(기획재정부 의견)
'20.2	광산물비축자산구입보조 추경예산 요구(267억원)	미반영
'20.10	이관대금 차입이자 충당을 위한 국회 증액(18억원) 신청	미반영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해당 방식들은 공단에서 조달청에 요구한 방식으로, 조달청의 회전자금 감소 문제 및 「물품관리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4)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조달특별회계 내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되는 자금이다.

특히 조달청의 회전자금 감소 문제는 조달청의 금속자원 비축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달청은 약 1조 4,082억원 규모의 회전자금을 운용하여 수요물자를 관리하거나 비철금속, 마스크 등의 물자들을 비축 중인데, 희소금속을 유상으로 이관하지 못하면 희소금속의 원가만큼 회전자금 규모가 감소하고 조달청이 비축 가능한 물자의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

[조달청 회전자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금액	
수요물자		1,051	
비축물자	재고금액	비철금속	8,327
		희소금속	722
		활성탄	5
		마스크	20
		재고금액 소계	9,074
	기타	외상매출금	153
		선물자금	310
		기타미수금 등	214
		시재금	3,280
		(실 시재금)	(1,558)
비축물자 소계		13,031	
합 계		14,082	

주: 2022년 6월 말 기준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달청에 따르면 희소금속 매매로 발생하는 금액은 금속자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핵심품목 등의 비축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⁵⁾인데, 희소금속을 유상으로 이관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 회전자금의 총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금속자원 및 경제안보핵심품목 비축 계획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5) 조달청에 따르면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비철금속의 평균 목표재고일수를 60일로 확대하는 등 비축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희소금속 재고원가 약 723억원에 추가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단의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1조 2,639억원만큼 초과하고 공단의 순자산은 △2조 2,18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공단 자체 재원으로 회소금속 구입대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조달청과 공단이 마련한 대부분의 이관 방식은 각각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2013년 국회 지적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이관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금속 자원의 안정적 비축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조달청 보유 회소금속의 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 회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공동기준에 따라 회소금속 비축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되, 유상이관 예산 확보 등 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조달청, 기재부,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간 적극적인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조달청 보유 회소금속 이관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과 공단 모두 회소금속을 포함한 비철금속 보관에 필요한 비축공간 확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정적 금속자원 비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비축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비축공간의 확보는 회소금속 이관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공단이 보유한 비축공간 또는 공단이 임차 등의 방식으로 사용 중인 비축공간에 이관 대상 회소금속을 모두 비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관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공단은 회소금속 이관에 필요한 자체 기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 간 합의에 따라 2011년부터 조달청 군산비축기지 내 창고 일부를 임차 사용하여 이관 대상이 아닌 회소금속 10개 광종을 비축 중이다. 한편 이관 대상 회소금속 9종은 조달청 비축기지 중 군산비축기지를 제외한 비축기지(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대구 소재)에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회소금속의 이관 완료를 위해서는 ① 공단이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조달청 군산비축기지 내 창고에 회소금속을 모두 이관하거나, ② 공단이 조달청의 비축

기지를 추가 임차하거나, ③ 공단이 새로운 자체 비축기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① 공단이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조달청 군산비축기지 내 창고에 희소금속 9종을 모두 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공단이 임차 사용 중인 창고의 잔여 비축가능량은 약 2,905톤인바, 이관 대상 물량(23,507톤)이 잔여 비축 가능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② 공단이 조달청의 비축기지를 추가 임차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조달청의 비축 가능 면적과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신축 중인 창고가 완성되는 경우 야적장을 제외한 비축창고의 비축 가능 면적은 약 22,967㎡인데, 국회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약 72,886㎡의 면적이 필요하므로 45,353㎡만큼의 면적이 부족하다. 오히려 추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창고에 보관 중인 희소금속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단이 조달청의 비축기지를 추가 임차하려면, 조달청이 먼저 추가 비축공간을 확보하거나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문제의 해결 시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비축창고(야적장 제외)의 비축공간 현황]

(단위: ㎡)

총 면적 (A)	신축 예정 (B)	비축 불가 (C)	희소금속 보관		비철 금속 보관(F)	비축 가능 면적 (G=A+B-C-D-E-F)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부족분 (J=G-H-I)
			공단 임대 (D)	이관 대상 희소금속 보관 (E)			비철금속 추가비축 (H)	야적 알루미늄 보관 (I)	
90,526	14,929	13,321	30,346	11,288	22,967	27,533	31,102	41,784	△45,353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조달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2020회계연도 결산)의 후속 조치 이행(비철금속 비축규모 확대, 현재 야적장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을 창고에 보관)을 위해서는 각각 31,102㎡, 41,784㎡의 창고 면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③ 공단이 새로운 자체 비축기지를 확보하여 조달청 비축기지의 희소금속을 공단의 비축기지로 모두 이동시키는 방안의 경우 공단의 자체 비축역량을 확보하면서도 조달청이 이관에 따른 여유 비축공간을 확보하여 비철금속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단이 자체 비축기지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기지 구축에 필요한 부지매입 예산의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나, 확보 여부 및 완료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용비축기지 신축 사업 수행 계획]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부지 189,000㎡, 창고 113,341㎡ • 적재 가능 물량: 190,000톤 • 총사업비: 2,782억원(부지매입비 408억원, 건축공사 등 2,158억원, 예비비 216억원) • 사업기간: 2024~2026년 |
|---|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와 같이 조달청과 공단이 비축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조달청은 희소금속 이관에 따른 여유 비축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비철금속의 비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단의 효과적인 희소금속 관리 및 희소금속 추가 비축 계획(약 167,000톤)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확대되고 있으며, 비축공간 부족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정적 금속자원 비축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희소금속 이관 문제는 전략자원 비축이라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바,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비축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희소금속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글로벌 수급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 관리 강화 등

가. 현 황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¹⁾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토지·건물 등을 조사 및 발굴하는 한편, 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조달청은 2021년도 예산현액 18억 600만원 중 96.3%인 17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856	1,856	-	△50	1,806	1,738	96.3	-	6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동 사업의 대상인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2)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132-331

2)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로 구분된다. 국유재산 관리 업무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함께 수행 중인데,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총괄청의 총괄업무 중 일부를 「국유재산법」 제25조3)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 중이다.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업무 분담 현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편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4)에 따르면, 조달청이 기획재정부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업무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은닉재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5)에 따른 귀속재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및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도 포함된다.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업무를 6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3) 「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5.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 5)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현황(2021. 12. 31. 기준)]

(단위: 필지, 권)

재산유형	총 조사대상	조사 완료				진행 중인 소송 건수
		국유화 조치중	국유화 완료	국유화 제외	소계	
귀속재산 (소송 건수)	85,900 (10)	1,265 (1)	6,234 (5)	54,768 (0)	62,267 (6)	4
은닉재산 (소송 건수)	11,485 (162)	6 (6)	196 (102)	9,899 (34)	10,101 (142)	20
합 계 (소송 건수)	97,385 (172)	1,271 (7)	6,430 (107)	64,667 (34)	72,368 (148)	24

- 주: 1. 국유화 조치 중인 재산은 무주부동산공고, 중앙관서지정, 등기촉탁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인 재산을 의미함
 2. 국유화 제외 재산은 사유재산, 토지 말소, 조사대상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해 국유화 재산이 아닌 재산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조달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국유화 조치 중’인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권리보전 절차를 밟고 있는 재산으로 무주부동산 공고,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과정을 거쳐 국유화를 진행한다. 둘째, ‘국유화 완료’된 재산은 상기 국유화 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완료된 재산으로 향후 소관 중앙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 한편 ‘국유화 제외’된 재산은 조사 결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당초 귀속재산이 아니었거나, 매각·농지분배 등으로 사유재산임이 확인된 재산이다.

최근 5년간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와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 건수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관련 소송 결과]

(단위: 건, %)

재산유형	소송 건수	소송 결과			진행 중
		조달청 승소(A)	조달청 패소(B)	승소율 {C=A/(A+B)}	
귀속재산	10	6	0	100.0	4
은닉재산	162	108	34	76.1	20
합 계	172	114	34	77.0	24

주: 2021. 12. 31. 기준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업무의 장기 미처리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조달청은 해당 건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업무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업무 처리 현황(각 연도 말 기준)]

(단위: 건)

연도	조사 중	신규 편입	조사 완료	장기 미처리 (5년 이상 경과)
2017	8,575	10,770	10,675	0
2018	8,786	11,044	10,833	1
2019	8,851	7,529	7,464	72
2020	8,844	6,630	6,637	262
2021	3,479	2,278	7,643	1,000

주: n년도 조사 중 건수 = n-1년도 조사 중 건수 + n년도 신규 편입 건수 - n년도 조사 완료 건수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말 기준 조사 중인 건수는 8,844건이었는데 2021년에 2,278건만큼 신규 편입되고 7,643건만큼 조사 완료되면서 2021년 말 기준 조사 중인 건수는 3,479건(=8,844+2,278-7,643)이 되었다.

각 연도 말 기준, 당해연도에 신규 편입된 건수는 2017년 10,770건에서 2021년 2,278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각 연도 말 시점에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조사 중' 상태로 남아 있는 건수는 2017년 8,575건에서 2020년 8,844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신규 편입 건수가 전년 대비 65% 가량 감소함에 따라 2021년 조사 중 건수도 3,479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 조사 중 건수와 신규 편입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신규 편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처리 건수'는 2020년 말 기준 262건에서 2021년 말 기준 1,0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82%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조사 건마다 상이한 처리 난이도, 계약직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 미비 문제, 만성적인 조사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장기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장기 미처리 건수(1,000건)는 2021년에 조사 완료한 건수(7,643건)의 약 13.1%에 불과하므로, 신규 편입 건수보다 장기 미처리 건수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건수별 장기 미처리 사유를 파악하여 관리하지 않은 등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인 명의 국유재산 환수 업무가 조달청 선정 6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임에도, 정작 과제 수행의 관리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명의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는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청은 향후에도 해당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함으로써 국유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국유재산 조사 목적으로 보유한 지방청 드론에 대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조사 목적으로 무인항공비행장치(이하 '드론') 5기를 보유 중이며, 본청에 1기, 지방청(대구, 광주, 강원, 충북)에 각각 1기가 배치되어 있다. 본청 드론은 2016년 7월 약 6,718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지방청 드론은 2017년 9월 각각 약 3,950만원에 구입하였다.

조달청이 구입한 지방청 드론 4기의 구입 이후 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방청 드론 구입 및 운용 현황]

(단위: 개, %)

구분	구입일자 및 가격	운용 당시 목적	운용 시기 및 비행횟수
대구청	2017.9.13. 대당 3,950만원	국유재산의 현장 실태조사	2018년(3회)
광주청			2018년(3회), 2019년(17회)
강원청			2018년(2회)
충북청			2018년(18회), 2019년(2회)

주: 2021.12.31. 기준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드론을 활용하여 적은 인력으로 각 지방청의 넓은 토지에 대해 효율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청에서 2020~2021년에 드론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대구청과 강원청은 3년 이상 드론을 운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총괄청의 요청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실태조사 대상이 기존 토지에서 청관사 등 건물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드론의 활용도가 낮아지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드론을 운용하지 않은 회계연도에도 해마다 수백만원⁶⁾에 달하는 드론 유지비를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 각 드론마다 1명씩 할당된 조종자는 인사 이동이 거의 없고 실태조사가 전담 업무인 공무원이므로 드론을 운용하지 않게 되면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용 중인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드론을 운용하는 4개 지방청이 아닌 나머지 7개 지방청은 여전히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여 실태조사를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11개 지방청 간 드론 및 조종 인력 등의 공동 활용과 같은 드론 운용의 효율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드론 비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2018~2019년에도 연 운용 횟수가 20회를 초과한 지방청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드론 및 조종 인력을 공유하여도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조달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드론 통신요금 및 보험료로 13,79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드론 부품교체 및 소모품 구입 목적으로 10,865,000원을 지출하였다.

가. 현 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은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2021년 기준 6.4만개 기관과 50만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는 120조원(공공조달의 65%)에 달한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¹⁾은 장기운영으로 인해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자체 운영 중인 조달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조달청은 2021년도 예산현액 230억 4,400만원 중 168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8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차세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정보화)	23,044	23,044	23,044	16,824	73.0	3,889	2,33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4단계에 걸쳐 2024년 6월까지 총 1,049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초기 분석·설계(ISMP) 수행 후 2021년 6월부터 시스템 구축 1단계를 추진하였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131-505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시기
1단계(분석·설계)	의견 수렴,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등 상세 설계	'21.6.~'22.7.
2단계(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 모듈별 단위 테스트, 인프라 도입 등	'22.6.~'23.4.
3단계(테스트)	이관·연계 테스트, 시험운영, 성능시험 등	'23.5.~'23.12.
4단계(시범운영 및 안정화)	시스템 테스트 및 보완, 개통 준비 등	'24.1.~'24.6.

자료: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구축 이후 19년 간 운영된 나라장터의 장애·오류 등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데이터 경제 등의 정부정책에 발맞춰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셋째, 별도 운영 중인 28개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이 나라장터로 통합될 경우 자체조달시스템 운영비(연 300억원 추산)를 절감할 수 있고, 조달업체가 각 조달시스템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며, 조달업무를 관장하는 조달청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므로 조달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각 기관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입찰 비리가 감소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자체조달시스템 통합을 위해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9년 7월 통합의 법적 근거²⁾를 마련 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관과 통합을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2018.12.31. 일부개정, 2019.7.1. 시행)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6.25. 일부개정, 2019.7.1. 시행)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28개 공공기관 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법령에 자체조달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두었다는 이유로 통합을 거부한 기관은 4개(방위사업청,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환경공단)이며, 그 밖의 사유만을 이유로 통합에 부정적인 기관은 2개(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로 확인되었다.

[나라장터 통합을 거부한 6개 기관의 거부 사유]

거부기관명	거부 사유
한국전력공사	- 기 투자비용 매몰, 새로운 이용수수료 발생 등 비용상 문제
국가철도공단	- 계약에 적용되는 고유한 계약기준이 많고, 이들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 수정과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한국환경공단	- 법령에 따른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있음
방위사업청	- 국가보안 유지 목적으로 자체 시스템 운영 필요 - 법령에 따른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있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자체, 교육부, 농림부, 식약처 등 광범위한 주체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 수행 중에 있어 통합 곤란 - 법령에 따른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있음
한국교직원공제회	- 통합될 경우 자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문제, 동 시스템 운영의 수탁기관인 ‘더케이교직원나라’의 인력 승계 문제 등이 발생하여 통합 곤란 - 법령에 따른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있음

자료: 각 기관의 조달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 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라장터 통합 거부기관이 제시한 개별 법령상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거부기관명	개별 법령상 구축·운영 근거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조달 (「방위사업법」 제25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전자거래 관련 업무 수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장치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한국교직원공제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장치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한국환경공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장치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자료: 각 기관의 조달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에 따르면 구축 2단계에 진입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합 대상 기관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달청은 신속히 통합 대상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되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통합에 따른 득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후, 나라장터로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통합여부를 논의하고 통합에 따른 문제 최소화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통합을 추진할 것을 조

달청에 시정요구하였다. 이후 조달청은 통합 시기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맞춤형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견 수렴 및 분석, 시스템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1단계 과정이 2022.7.31. 종료되고,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 2단계 과정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조달청은 아직까지 통합 대상 기관, 통합 시기 및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달청은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근거가 있다고 밝힌 4개 기관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들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법무적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통합을 거부한 기관이 거부 사유로 개별 법령에 자체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구축·운영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³⁾만을 제시한 경우, 해당 규정만으로 개별 법령에 해당 기관 자체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통합에 따른 득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나라장터 통합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전자조달법 제14조제3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규정이 수요기관의 장에 의한 자발적 이용전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을 설득하여 통합에 이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통합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통합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에 이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둘째, 조달청은 통합을 거부한 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근거가 있다’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한 경우, 해당 기관들이 제시한 사유의 내용과 사유에 따른 통합의 득실을 검토 후 신속히 통합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합을 거부한 6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근거는 없으나 그 밖의 사유로 통합을 거부하였으며, 방위사업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근거가 있다는 사유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사유를 제시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① 2016년 이후 보안성 강화 등 시스템을 전면 재개발한 상태임에도 이용전환할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이용전환 시 이용수수료 등의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전력공사 자체 시스템은 15개 전력그룹이 공동 이용 중이므로 이미 중복투자의 최소화를 도모하였고 운영 인력(14명) 또한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어 효율성을 확보한 점 등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물품, 공사 및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고유한 계약기준이 많은데 나라장터 통합으로 이러한 계약기준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 수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시스템 수정과 관련된 오류 등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개별 법령상 운영 근거 유무와 별개로 국가보안 유지 목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추가로 제시하였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광범위한 주체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어 통합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통합에 따른 투자금 회수 문제, 자체 시스템 운영의 수탁기관인 ‘더케이교직원나라’의 인력 승계 문제 등으로 통합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한편 나라장터 통합을 거부한 6개 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라장터 통합을 거부한 6개 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건)

거부기관명	시스템 운영·유지비용 및 인력		시스템 이용 현황	
	비용	인력	계약 건수	계약 금액
한국전력공사	1,206	14	42,808	12,931,210
국가철도공단	220	2	2,451	4,370,743
한국환경공단	171	10	0	0
방위사업청	631	12	50,492	18,093,1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907	70	308,718	1,875,361
한국교직원공제회	11,007	53	809,899	961,612
28개 기관 합계	32,047	240	1,129,393	59,054,551

주: 운영·유지비용 및 인력은 2019년 기준, 시스템 이용 현황은 2021년 기준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달청은 자체조달운영시스템 통합의 득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자체조달시스템에 지출하는 비용 및 인력의 규모, 자체조달시스템의 이용 현황, 각 기관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통합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비축물자사업수입 과목은 비축물자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과 외상 및 대여 판매분에 대한 이자수입 등의 세입이다. 조달청은 약 1조 4,563억원 규모의 회전자금²⁾을 운용하여 비축물자를 구매 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판매방출하거나 외상 또는 대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이자수입 등의 수익은 회전자금이 아닌 조달특별회계 계정의 비축물자사업수입 과목에 계상된다.

조달청은 2021년도 징수결정액 451억 1,700만원 중 88.6%인 399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1억 2,3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비축물자사업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비축물자사업 수입	4,200	4,200	4,200	45,117	39,994	5,123	0	88.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비축물자사업의 관리대상인 비축물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른 물자로서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이다. 비축대상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데, 현재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6호, 2014. 4. 15. 시행)에는 비철금속(6종³⁾, 희소금속⁴⁾, 방산물자용 원자재⁵⁾, 재활용원자재⁶⁾, 긴급수급조절물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45-456

2)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조달특별회계 내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되는 자금이다.

자) 등이 지정되었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2022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제3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비축물자를 안전재고와 운영재고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 제24조제1항⁹⁾에 따라 비축물자의 방출상황을 긴급시, 수급불안시, 평상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규정 [별표 1]에 따른 방출상황 구분요건, 총방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
- 3)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니켈, 주석
 - 4) 금속자원 비축계획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 추진 중인 9종의 금속(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튬, 비스무스)
 - 5)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중 동법 제13조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무기체계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 6) 금속스크랩 등 원자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자
 - 7)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로, 마스크 및 요소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8)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2021. 12. 22.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제16조(재고구분) ① 비축물자는 안전재고와 운영재고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11. “안전재고”란 전쟁, 대규모 재난, 국내 경제위기와 국제 자원파동 등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시 이외에는 시중가격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를 말한다.
 12. “운영재고”란 원자재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고를 말한다.
 13. “일반재고”란, 선물과 연계하지 않고 구매한 원자재로 일반방출에 사용되는 재고를 말한다.
 - 9) 제24조(방출시기 및 방출 수량) ① 비축물자 방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시
 2. 수급불안시
 3. 평상시② 제1항의 방출상황에 대한 구분요건, 방출상황별 총방출한도, 방출가격조건 등에 대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른 방출상황 구분요건 · 총방출한도]

방출상황	구분요건	총방출한도
긴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와 같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주요 생산국의 파업 등에 따른 국제 자원파동으로 심각한 공급장애가 발생한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안전재고 포함 비축재고 전량
수급불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외 수급상황 및 전망에 대한 계량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 수급불안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또는 특이 징후 발생 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방출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수급불안 단계에 따라 운영재고의 일부 또는 전부
평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시 및 수급불안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황 	상시 방출,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의 경감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

자료: 조달청

규정 제3조제11호에 따르면, “안전재고”란 전쟁, 대규모 재난, 국내 경제위기와 국제 자원파동 등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시” 이외에는 시중가격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를 의미한다. 규정 [별표 1]에 따르면, “긴급시”란 ①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와 같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주요 생산국의 파업 등에 따른 국제 자원파동 등으로 심각한 공급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 수급 파동 발생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축목표 수준을 충분한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안전재고 목표량”¹⁰⁾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3년 주기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정한 “안전재고 목표재고일수”와, 최근 3년간 수입수요량을 가중 평균한 “평균 수입수요량” 등이 반영된다.

[예시: 2022년 알루미늄의 안전재고 목표량 설정 방식]

(단위: 일, 톤)

2022년 안전재고 목표재고일수(A)	평균 수입수요량 (B='21년 수입량×0.6 + '20년 수입량×0.3 + '19년 수입량×0.1)	안전재고 목표량(C) (C=A×1.03×B÷365)
60	1,104,480	187,005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긴급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제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비축물자의 재고량을 안전재고 목표량 이하로 관리하였는데, 이는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과 과거 감사원 시정조치 요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안전재고의 의미 및 취지와 수급 상황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긴급시가 아닌 한 비축물자의 재고량이 안전재고 목표량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비축물자 중 알루미늄과 니켈의 경우 2021회계연도는 긴급시에 해당하는 방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재고량이 안전재고 목표량보다 적었던 달이 있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실제 재고량이 안전재고 목표량보다 적었으며, 7월의 경우 안전재고 목표량 대비 실제 재고량이 88.0% 수준으로 연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1월과 2월의 경우 방출상황이 “평상시”였으므로 안전재고 목표량만큼은 물론 그와 별개로 운영재고 목표량만큼 추가로 비축할 것이

10) 안전재고 목표량 = 평균 수입수요량 ÷ 365 × 안전재고 목표재고일수 × 1.03(경제성장률 3%반영)

요구되었으나, 실제 재고량이 안전재고 목표량에 미달하였으므로 안전재고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운영재고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은 0톤이었다.

니켈의 경우 1월, 2월 및 1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실제 재고량이 안전재고 목표량보다 적었으며, 8월의 경우 안전재고 목표량 대비 실제 재고량이 93.2% 수준으로 연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21년 알루미늄 및 니켈의 안전재고 목표량 및 실제 재고량]

구분	안전재고 목표량 대비 실제 재고량 비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루미늄	98.2	98.7	94.3	95.4	96.0	93.6	88.8	98.8	98.0	96.3	97.0	102.3
니켈	101.3	100.4	98.6	96.5	96.0	94.7	93.5	93.2	95.1	94.4	93.4	100.8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알루미늄 및 니켈의 월별 방출상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알루미늄	정상시	정상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니켈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루미늄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니켈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조달청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안전재고에 해당하는 비축물자를 방출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전재고는 전쟁, 대규모 재난, 국제 경제위기 및 국제 자원파동 등의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인바, 조달청이 2021년 알루미늄과 니켈의 방출상황을 긴급시가 아닌 수급불안시로 판단한 것은 곧 제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같은 상황을 전쟁, 대규모 재난, 국내 경제위기 및 국제 자원파동이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로 보아 반드시 안전재고를 방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처럼 조달청이 긴급시가 아닌 방출상황에서도 안전재고에 해당하는 비축물자를 방출한 것은 과거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의 취지와도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감사 결과, 조달청이 2012~2016년 중 구리의 경우 23개월 동안, 아연의 경우 27개월 동안, 주석의 경우 9개월 동안 실제 재고량을 안전재고 목표량 보다 적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이 조달청에 안전재고 목표량 미만까지 비철금속을 방출하는 일이 없도록 재고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급 상황은 조달청의 상황판단 시점 이후에도 급변할 수 있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표는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대비뿐만 아니라 그 외 상황에서의 국내 수급 안정도 포함되는바, 긴급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조업체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재고 일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조달청이 방출상황에 대해 판단한 이후 운영재고와 일반재고만으로는 수급 불안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한하여 안전재고의 일정 비율을 방출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안전재고의 의미 및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갑작스러운 수급 상황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I 결산 개요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6억 3,700만원이며, 49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7%인 49억 800만원을 수납하고 6,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37	3,637	3,637	4,974	4,908	66	0	98.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2021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170억 1,800만원이며, 이 중 94.6%인 3,943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226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15,297	415,297	417,018	394,358	0	22,661	94.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한편, 통계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통계청의 자산은 2,702억 5,600만원, 부채는 8억 5,700만원으로 순자산은 약 2,694억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63억 5,900만원, 일반유형자산 2,032억 300만원, 무형자산 456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04억 4,500만원(8.2%) 증가하였다. 이는 선급금 및 임차보증금의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자산 74억 700만원 증가, 자본적 지출, 가격평가 및 자산 인수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67억 7,800만원 증가, 내부개발 및 외부구입S/W 등으로 인한 무형자산 63억 9,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억 2,000만원, 장기차입부채 4억 3,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000만원(10.3%) 증가하였다. 이는 나라통계시스템 등 유동성 대체로 인한 장기차입부채 6,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70,256	249,811	20,445	8.2
Ⅰ. 유동자산	16,359	8,952	7,407	82.7
Ⅱ. 투자자산	914	599	315	52.6
Ⅲ. 일반유형자산	203,203	196,425	6,778	3.5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45,600	39,204	6,396	16.3
Ⅵ. 기타비유동자산	4,180	4,631	△451	△9.7
부 채	857	777	80	10.3
Ⅰ. 유동부채	420	404	16	4.0
Ⅱ. 장기차입부채	437	373	64	17.2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269,400	249,034	20,366	8.2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242억 5,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307억 8,900만원, 관리운영비 1,010억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9억 8,200만원, 비배분수익 45억 4,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57억 7,000만원(△7.8%) 감소한 4,242억 5,900만원이며, 이는 외주용역비, 인건비 및 소모품비 등의 감소로 프로그램 총원가가 588억 8,2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총 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1,564억 4,71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35억 7,944만원과 경비 474억 2,209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27,806	386,992	△59,186	△15.3
가. 프로그램 총원가	330,789	389,671	△58,882	△15.1
나. 프로그램 수익	2,982	2,678	304	11.4
II. 관리운영비	101,002	75,299	25,703	34.1
III. 비배분비용	0	1	△1	△100.0
IV. 비배분수익	4,549	2,264	2,285	100.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24,259	460,029	△35,770	△7.8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24,259	460,029	△35,770	△7.8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490억 3,4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694억원으로 기초 대비 203억 6,600만원(8.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결과 항목의 감소, 조정항목의 증가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및 전년재평가이익 상계분 159억 1,5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통계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49,034	226,806	22,228	9.8
II. 재정운영결과	424,259	460,029	△35,770	△7.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12,698	466,244	△53,546	△11.5
IV. 조정항목	31,926	16,011	15,915	99.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69,400	249,034	20,366	8.2

자료: 통계청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사업**, ②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 사업** 등이 있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사업은 마이크로데이터센터 운영비 조정 과정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 사업은 차세대 통계청 정보화전략 계획(ISP)수립 예산 규모 조정을 이유로 8억원이 감액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통계청 소관 사업**은 없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통계청은 열린 통계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통계 선도 및 국민미래 설계 등을 목표로 ① **국가통계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 ② **국가통계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정적 국가통계생산체제 유지**, ④ **국가통계 관리시스템 개선 및 국내의 통계발전 선도를**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 도급조사원의 중도 포기과 이로 인한 추가모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통계조사 인력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조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통계청은 향후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이용자 편의 제고 노력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의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1

통계조사 인력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비대면조사 활용 증대 필요

가. 현 황

통계청은 경제정책·고용정책·복지정책 등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이 작성 중인 통계 현황]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계명
조사통계(39종)		
전수조사 (8종)	5년(1종)	농림어업총조사
	2년(1종)	통계인력및예산조사
	매년(4종)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활동조사
	반기(1종)	어류양식동향조사
	매월(1종)	인구동향조사
표본조사 (30종)	5년(1종)	생활시간조사
	매년(16종)	사회조사, 운수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어가경제조사, 농림어업조사,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작물생산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농업면적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북한비재배면적조사
	반기(1종)	지역별고용조사
	분기(3종)	가축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매월(8종)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순기(1종)	산지쌀값조사
기타(1종)	5년(1종)	경제총조사
가공통계(25종)	5년(3종)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가계생산위성계정
	매년(16종)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국민대차대조표, 지역소득, 생명표, 사망원인통계, 일자리행정통계, 귀농어·귀촌인통계, 기업생멸행정통계, 주택소유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신혼부부통계, 기업특성별무역통계, 국민이전계정, 일자리이동통계, 육아휴직통계
	반기(1종)	연금통계
	분기(1종)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매월(4종)	경기종합지수, 설비투자지수, 전산업생산지수, 제조업국내공급지수
보고통계(2종)	매월(2종)	국제인구이동통계,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국가통계의 작성을 위해서는 통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계조사원은 공무원 및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도급조사원 등으로 구분되며, ① 태블릿PC나 종이 등을 활용한 대면조사, ② 전화, Fax, E-mail 등을 활용한 비대면조사 등의 조사방식을 활용한다. 비대면조사는 대면조사에 비해 조사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사건사고, 조사원에 대한 불신 및 갈등, 조사원의 조사 중도포기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조사원의 종류]

구분	수행 업무
공무원 및 공무원직(무기계약)	매월 단위로 경상조사 수행
기간제근로자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에서 조사관리 및 입력 등 보조업무 수행
도급조사원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인력계획에 따라 임시로 선발되어 일정한 업무량을 조사기간 내에 완료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회계연도 기준 통계조사별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현황]

조사명	조사일정 (본조사 기간)	조사인원(명)	
		기간제	도급조사원
고령자조사	3.4.~3.15.	기간제	19
		도급조사원	318
투입구조조사(경인권)	3.18.~4.7.	기간제	32
		도급조사원	80
가계금융복지조사	3.31.~4.16.	기간제	70
		도급조사원	1,234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4.19.~5.4.	기간제	248
		도급조사원	3,208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	10.18.~11.2.	기간제	248
		도급조사원	3,208
사회조사	5.12.~5.27.	기간제	26
		도급조사원	579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5.18.~6.1.	기간제	28
		도급조사원	902
인구주택총조사 사후조사	6.4.~6.10.	기간제	22
		도급조사원	1498
경제통계통합조사	6.16.~7.30.	기간제	23
		도급조사원	824
농림어업조사	12.1.~12.16.	기간제	31
		도급조사원	481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 도급조사원의 중도 포기 및 이로 인한 추가모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통계조사 인력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조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통계청은 향후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기업활동조사, 운수업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등을 같은 시기에 방문조사(One-stop Survey)함으로써 조사 효율성 및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조사기간을 다르게 실시하여 국회·감사원 등으로부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 2009년부터 이들 조사를 같은 시기에 방문조사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과거에는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에는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2011년, 2016년의 경우 미실시), 2021년의 경우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였음에도 제11회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초로 경제총조사와 병행 실시하는 제11회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① 경제통계 통합조사 및 경제총조사의 통합명부 구축, ② 행정자료 활용의 확대를 통한 응답 부담의 경감 및 통계 정확성 제고, ③ 조사명칭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별도 홍보 없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홍보 활용, ④ 경제총조사와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일원화된 조사관리 시스템 운영, 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응답자 편의에 부합하는 다양한 비대면 조사방법 병행 실시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 후 추진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모집미달률, 중도포기율, 추가모집 인원 수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조사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도급조사원 모집 및 중도포기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모집예정 인원(A)	실제모집 인원(B)	모집미달률 {(A-B)/A}	중도포기 인원 수(C)	추가모집 인원 수(D)	중도포기율 {C/(B+D)}
2019	경제통계 통합조사	3,046	3,013	1.1	242	63	7.9
	전체 조사	11,497	11,415	0.7	553	280	4.7
2020	경제통계 통합조사	1,840	1,798	2.3	193	67	10.3
	전체 조사	8,806	8,707	1.1	390	226	4.4
2021	경제통계 통합조사	930	824	11.4	162	210	15.7
	전체 조사	11,001	10,866	1.2	366	295	3.3
3년 합계	경제통계 통합조사	5,816	5,635	3.1	597	340	10.0
	전체 조사	31,304	30,988	1.0	1,309	801	4.1

주: 전체 조사의 경우 도급조사원 모집 없는 조사, 시험조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을 주관한 조사는 제외되었음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3년간 실시된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전체 조사의 모집 및 중도포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모집미달률과 추가모집 인원 수, 중도포기율이 다른 조사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 경인지방통계청의 경우 109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모집 인원이 57명에 불과해 모집미달률이 47.7%에 육박하였다. 이에 3차에 걸쳐 도급조사원을 51명 추가 모집하였으나 37명이 중도 포기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방통계청은 당초 계획된 45일의 조사실시기간 내에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조사기간을 2주 연장하였는데, 인터넷조사 가능 기간만 연장한 2021년 경제총조사를 제외하면 2021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 중 기간을 연장한 조사는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가 유일하다.

이와 같이 도급조사원의 모집미달률 및 중도포기율이 증가하는 등 도급조사원이 충분히 채용되지 않을 경우, 통계조사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조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통계청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통계조사원이 조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추가모집한 통계조사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는 교육비를 비롯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향후 실시 예정인 통계조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경우 전체 도급조사원 중 조사업무 무경험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무경험자의 중도포기율이 유경험자보다 높음을 고려하여 인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경험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특정 조사의 무경험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및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조사업무 무경험자 및 유경험자와 각각의 중도포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채용인원 중 중도포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사업무 무경험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채용인원의 중도포기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및 2021년 경제통계통합조사의 도급조사원 경험 유무별 중도포기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채용인원 수(A)	중도포기자 수(B)	중도포기율(C=B/A)
2020	전체	1,865	193	10.3
	유경험자	1,018	20	2.0
	무경험자	847	173	20.4
2021	전체	1,034	162	15.7
	유경험자	458	12	2.6
	무경험자	576	150	26.0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경제총조사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채용기간(4.26.~5.14.)을 경제총조사 채용기간(3.15.~4.15.) 이후에 실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경제총조사 위주로 배치되면서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조사인력 상당수가 신규 인력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계청은 인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도포기율이 낮은 조사 유경험자를 적극 확보하는 한편, 특정 조사의 무경험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사별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청은 지방통계청 현장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결과 전년 대비 만족도가 하락한 점을 참고하여 향후 통계조사 인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지방통계청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2021년 현장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설문 결과]

만족도 조사명	2019	2020	2021
내부직원	3.90	3.89	3.83
기관운영 지원 분야	3.84	3.86	3.80
통계조사 지원 분야	4.05	4.02	3.94
표본설계	4.20	4.24	4.23
행정자료 이용	3.90	3.95	3.87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4.13	4.02	3.95
등록센서스 협력(본청)	4.18	4.14	3.92
현장조사지원	3.87	3.82	3.73
현장조사 협력 분야	3.79	3.76	3.67
현장조사 관리·협력	3.71	3.67	3.57
산업동향통계	3.82	3.52	3.42
서비스업동향통계	3.73	3.65	3.74
물가통계	3.95	3.95	3.75
사회조사	3.60	3.67	3.29
고용통계	3.63	3.69	3.37
가계동향통계	-	-	3.45
가계통계	3.60	3.69	3.73
농어업통계	3.76	3.66	3.78
농어업동향통계	3.69	3.54	3.61
통계조사대행 협력	3.87	3.85	3.77
통계정보 전산운영 분야	3.90	3.92	3.93

2021년의 설문 결과를 2019년~2020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특히 현장조사 지원, 현장조사 관리·협력, 통계조사대행 협력 등의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조사는 2020년에 비해 총 업무량과 총 보수가 증가하였으나 1일 평균 업무량 대비 1일 평균 보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2021년의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조사원 1인당 업무량 및 보수 현황]

(단위: 개, 천원)

구분	1인당 평균 업무량	1인당 1일 평균 업무량	1인당 평균 보수	1인당 1일 평균 보수
2020	176.2	4.4	2,872	71.8
2021	210.9	4.7	3,518	78.1
차이	34.7	0.3	64	6.3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조사 기간 연장(40일→45일)으로 1인당 평균 업무량은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 업무량을 조사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업무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1인당 평균 보수와 1인당 평균 보수를 조사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보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장조사 직원의 전년 대비 만족도 감소는 업무량이나 보수의 문제만으로는 보기 어려운바, 통계청은 2021년 지방통계청 현장조사 직원의 만족도가 감소한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향후 통계조사 인력계획의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통계조사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면조사의 경우 조사원에 대한 폭행,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불응 및 갈등, 태블릿PC 구입비 및 조사원의 물리적 이동에 따른 비용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계청은 성질상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상기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면조사의 실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면조사는 응답자와의 친밀감 형성으로 가구부문 조사 시 응답률 유지에 유리하다는 점, 난이도가 높은 조사의 수행에 적합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면조사만으로는 국가통계생산에 한계가 있으며, 비대면조사에 비해 응답자의 응답편의성과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낮고 조사비용은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의 장단점을 고려 후, 대면조사의 장점이 큰 통계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비대면조사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1년에 실시한 통계조사의 대면조사 및 비대면조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에 실시한 통계조사의 대면조사 및 비대면조사 현황]

(단위: 건)

통계명	전체 응답 수	대면조사 응답 수	비대면조사 응답 수
경제총조사	2,633,895	2,019,003	614,892
프랜차이즈조사	24,975	20,878	4,097
소상공인실태조사	35,129	22,518	12,611
기업활동조사	14,443	6,649	7,794
운수업조사	10,920	7,220	3,700
광업제조업동향조사	92,390	2,557	89,833
서비스업동향조사	205,890	13,364	192,526
온라인쇼핑동향조사	13,215	144	13,071
소비자물가조사	402,639	379,426	23,213
건설경기동향	10,873	72	10,801
기계수주동향	5,460	42	5,418
사회조사	36,423	33,455	2,968
이민자체류실태조사및 고용조사	23,737	20,224	3,513
지역별고용조사(상)	198,838	142,679	56,159
지역별고용조사(하)	198,363	115,450	82,913
경제활동인구조사	29,651	24,717	4,934
가계금융복지조사	18,187	14,983	3,204
초중고사교육비조사	72,760	651	72,109
가계동향조사	57,400	43,141	14,259

(단위: 건)

통계명	전체 응답 수	대면조사 응답 수	비대면조사 응답 수
농가경제조사	36,000	36,000	0
어가경제조사	12,000	12,000	0
가족동향조사	22,087	4,688	17,399
농축산물생산비조사	36,000	36,000	0
어업생산동향조사	56,395	48,025	8,370
농림어업조사	60,004	60,004	0
어류양식동향조사	13,358	12,716	642
양곡소비량조사	21,461	18,486	2,975
산지쌀값조사	4,408	4,408	0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2,532	2,532	0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별 조사마다 살펴보면,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림어업조사, 산지쌀값조사,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등의 경우 조사의 성질상 비대면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경제총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등과 같이 도급조사원이 사업체 사업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조사의 경우에도 대면조사가 갖는 장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가계동향조사와 같이 대면조사를 통해 응답 대상 가구와 조사원 간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조사의 경우, 조사의 성질상 대면조사가 갖는 장점이 크거나 비대면조사를 실시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면 응답자의 응답편의성과 조사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조사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조사(5.8%), 사회조사(8.1%)의 경우 비대면조사 실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통계청은 이들 조사를 비롯하여 비대면조사 응답 수의 비중이 낮은 조사에 대해 비대면조사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대면조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보완 필요

가. 현 황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¹⁾ 사업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의 지역에 통계데이터의 개방·활용 확산 플랫폼인 ‘통계데이터센터(SDC)’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한 통계자료를 대폭 개방하고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한편,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65억원 중 91.2%인 59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세출예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6,500	6,500	6,500	5,928	91.2	-	57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본청에서 10석의 규모로 시범 운영(2016.10.)하던 통계데이터센터를 확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2017.1.~6.) 후, 2018년 11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 정식서비스를 개시하고 대전, 부산, 서울에 센터를 설치하였다. 이후 2020년 3월에 광주센터를, 2021년 3월에 대구센터를 신설하고, 2021년 9월에 서울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센터를 확대하였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032-308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시설현황	설치시기	위치
대전	사무실1, 분석실1, 결합지원실1, 비식별화조치실1, 회의실1, 교육장1	'18.11	대전 서구 통계센터 13층
서울(중구)	사무공간1, 분석실1	'18.11	서울 중구 부영빌딩 7층 데이터 안심존
서울(상암)	사무공간1, 분석실1	'21.9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트움 15층
부산	사무공간1, 분석실1	'18.7	부산 연제구 부산통합청사 1층
광주	사무공간1, 분석실1	'20.3	광주 서구 광주통합청사 4층
대구	사무공간1, 분석실1	'21.3	대구 수성구 SW융합비즈센터 2층

자료: 통계청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행정통계등록부의 경우 12종(2019년)→14종(2020년)→16종(2021년)으로, 민간데이터의 경우 26종(2019년)→33종(2020년)→35종(2021년)으로 데이터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목록]

구분	이용 가능한 데이터 목록(2021. 12. 31. 기준)			
행정 자료 (16종)	· 기업통계등록부DB (사업등록번호 기준)	· 기업통계등록부DB (대표자 기준)	· 기업통계등록부DB분기 (사업등록번호 기준)	· 기업통계등록부DB분기 (대표자 기준)
	· 사업장 기초DB (법인)	· 사업장 기초DB (4대보험)	· 종사자·기업체 연계 DB	· 육아휴직 사용현황 DB
	· 등록센서스 인구DB	· 등록센서스 가구DB	· 등록센서스 주택DB	· 인구동태코호트DB
	· 아동가구 통계DB	· 농업DB	· 임업DB	· 어업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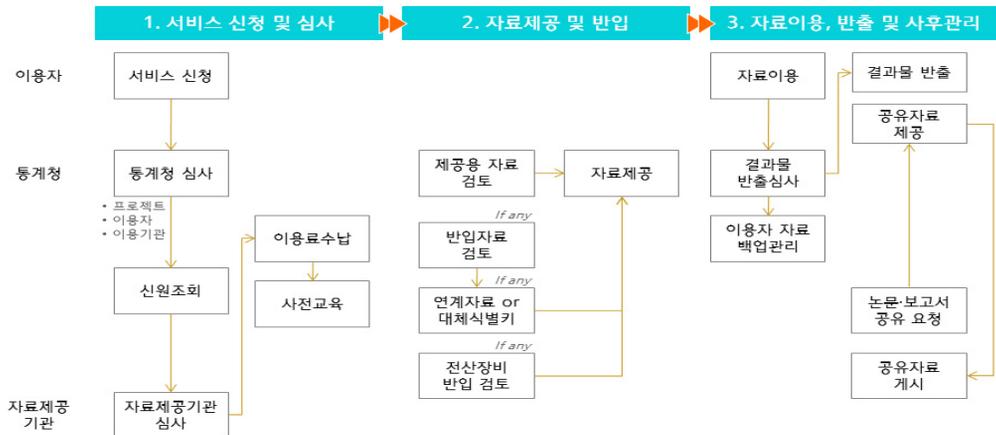
구분	이용 가능한 데이터 목록(2021. 12. 31. 기준)			
민간 자료 (35종)	·성·연령별 유동인구	·시간대별 유동인구	·요일별 유동인구	·성·연령별 유입인구
	·성·연령별 주거인구	·성·연령별 직장인구	·코로나19 방문인구정보	·코로나19 방문인구정보 (유입지null)
	·가구소득	·성·연령별 카드매출1	·업종별 카드매출	·성·연령별 카드매출2 (국내)
	·성·연령별 카드매출2 (해외)	·신용정보(대출)	·신용정보(소득)	·신용정보(카드소비)
	·인구이동정보(전입)	·인구이동정보(전출)	·인구이동정보(통근)	·1000대 상권정보
	·영업 중 업소	·온라인가격 정보	·모바일상품권 거래 정보	·구매상품 정보(오프라인)
	·표준공시지가	·주택 (단독/다세대/기타)	·공공주택정보	·건축물정보
	·기초정보 인구집중유발시설	·도로별 차량통행량	·시·군·구별 차량등록대수	·행정동코드
	·법정동코드	·소지역정보	·SNS 데이터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통계데이터센터의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분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데이터 융·복합 관리체계 구축 ISP를 수립(2020.1.~7.)하고, 가명정보 결합·활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 기반을 관리하는 체계 또한 구축 중이다.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통계청의 심사, 신원조회 및 자료제공기관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계청은 심사 절차를 거친 이용자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이용을 완료한 이용자의 결과물에 대해 반출심사를 거친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절차]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이용자 편의 제고 노력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의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2020.12.)하고 ① 통계데이터 지역센터 추가 신설, ② 통계데이터 등의 추가 확보, ③ 기존에 실시 중인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진행 확대 등의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활성화 방안과 별개로 2021년 말까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에게 보유데이터 및 분석플랫폼을 무료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통계청이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후 서울 상암센터와 대구센터가 신설되었는데, 이들 두 센터를 포함한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현황과 2021년 센터별 현장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현황 및 2021년 센터별 현장 이용 실적]

(단위: m², 명, 백만원, 건)

구분	좌석 수	면적	근무 인원	2021년 현장 이용 실적	
				연간	월평균
대전	34	966	18(공무원 4, 공무원 3, 기간제 11)	240	20
서울(중구)	10	183	2(기간제 2)	466	38.8
서울(상암)	5	16	1(기간제 1)	51	12.8
부산	12	18	2(기간제 2)	20	1.7
광주	12	66	2(기간제 2)	40	3.3
대구	15	118	1(기간제 1)	39	3.9

주: 1) 2021년 이용 실적의 경우 현장센터 방문자 기준이며, 온라인 이용 실적은 제외되었음

2) 서울 상암센터의 월평균 이용 실적의 경우 센터가 신설된 9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임

3) 대구센터의 월평균 이용 실적의 경우 센터가 신설된 3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계청 본청과 인접한 대전센터, 서울 중구센터 및 서울 상암센터는 센터별 2021년 현장 이용 실적이 각각 월평균 20건, 38.8건, 12.8건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센터, 광주센터, 대구센터는 각각 월평균 이용 건수가 약 1.7건, 3.3건, 3.9건에 불과하여 일부 지역의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계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통계청 본청은 지역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과 협업하는 한편, 각 지방센터의 위치적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본청에서 모든 지역의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센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지방청과 협업하여 지방 소재 공공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데이터센터의 인지도 강화 및 이용 독려 홍보 등을 추진하여 지역센터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데이터 대구센터가 위치한 SW융합테크비즈센터는 영남권의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데이터 수요층과 가까이 있고, 부산센터와 광주센터는 각 지방의 통합청사에 위치하고 있어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가까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치적 장점을 살려 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계데이터센터 신설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을 수반하므로, 통계청은 향후 지역센터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해당 센터에 대한 잠재적 수요의 크기를 고려하여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분석 전문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분석 전문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항목	지출액
데이터분석 전문가 인건비		상용임금, 일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	534,963
데이터센터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시설구축비 등	469,156
	운영 인건비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등	180,384
	시설유지	전용회선비, 전화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등	40,608
	경상경비	수용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	41,460
합 계			1,266,571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계데이터센터의 운영에는 데이터분석 전문가와 별도의 사무실을 비롯한 시설이 필수적이므로, 통계데이터센터를 신설할 때마다 데이터분석 전문가 인건비 및 데이터센터 운영비는 계속 증가한다.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 규모에 비해 신설 지방센터의 이용 실적이 낮은 경우 소수의 이용자를 위하여 유지비를 연례적으로 과다 지출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통계데이터센터 추가 신설을 제시한 후 2022년 6월에도 서울 강남센터와 세종 KDI센터를 신설하고 2022년 내에 2개소를 추가 신설 예정인바, 향후 지역센터를 신설함에 있어 해당 센터에 대한 잠재적 수요의 크기를 고려하여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63-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71-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